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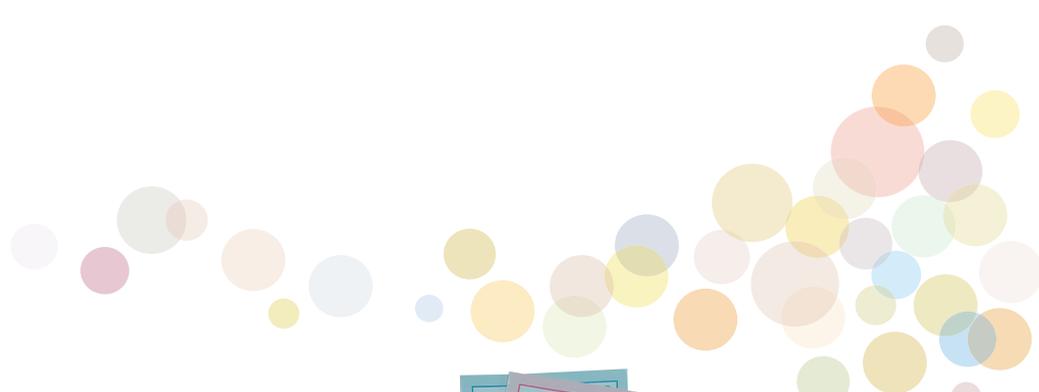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8 9·10·Vol7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2008년 9·10월호 통권 제78호
 발행일 2008년 9월 30일
 발행인 백승헌
 편집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편집위원
 김도형·김진·송호창·정은경·좌세준·채영호·황희석
 발행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522-7284 · 팩스 02-522-7285 · 이메일 m321@chol.com
 값 5,000원
 디자인·편집·인쇄 디자인랩(02-739-995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칼럼 '경계'에 선 지식인이 '시대와 소통' 하는 법 _박성호 초점 이명박 정부와 언론장악의 위법성 KBS 사장 해임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검토 _서동용 · 법치주의 관점에서 본 임기제 변칙운영의 문제점 _성종규 사법 제대로 보기 신문광고중단운동 법률해제 _박경신 · 현대미포조선 판결의 의미와 과제 _권두섭 법률바로세우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단상 _박주민 · 감시의 시대와 개인정보보호법 _이은우 시론 power _blind 법원을 희망한다 _황희석 · 변호사가 본 바람직한 법관상 _민경한 법정에서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합헌성 고찰 _김성진 · 관련자료(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주거·시민단체의 의견) · 최후진술 _윤희숙 연재 현대법 자료산책(6) _한인섭 민변의 활동 회원동정 성명및 논평

2008 9·10

CONTENT

칼럼	'경계'에 선 지식인이 '시대와 소통'하는 법 - 윤건차 교수의 경우 · 박성호 _ 2
초점	이명박 정부와 언론장악의 위법성 1. KBS 사장 해임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검토 · 서동용 _ 6 2. 법치주의 관점에서 본 임기제 변칙운영의 문제점 · 성종규 _ 14
사법 제대로 보기	1. 신문광고중단운동 법률해제 · 박경신 _ 18 2. 현대미포조선 판결의 의미와 과제 · 권두섭 _ 28
법률 바로 세우기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단상 · 박주민 _ 34 2. 감시의 시대와 개인정보보호법 · 이은우 _ 40
시론	1. power-blind 법원을 희망한다 · 황희석 _ 46 2. 변호사가 본 바람직한 법관상 · 민경한 _ 50
법정에서	1.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합헌성 고찰 · 김성진 _ 60 - 관련자료(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주거·시민단체의 의견) _ 67 2. 최후진술 · 윤희숙 _ 71
연재	현대법 자료산책(6) · 한인섭 _ 74
민변의 활동	월례회 · 김진 _ 78 공부모임 · 좌세준 _ 90 참관기 - 국제형사재판소(ICC) 아시아지역 워크샵 참관기 · 이동화 _ 104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연수원 설명회를 다녀온 후) · 김나은 _ 110
회원이야기	고 김응조 변호사를 추모하며 · 박성민 _ 114 세대공감 · 이준형 _ 115 내가 본 민변 - 전문기관연수 실무수습을 마치고 · 백주현 _ 118 회원이 퍼낸 책 · 김진 _ 120
성명 & 논평	정은경 _ 1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제자는 한승헌 변호사님께서 써 주셨습니다. 한승헌 변호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지의 삽화는 김현경님이 그려주셨습니다.”

2008

0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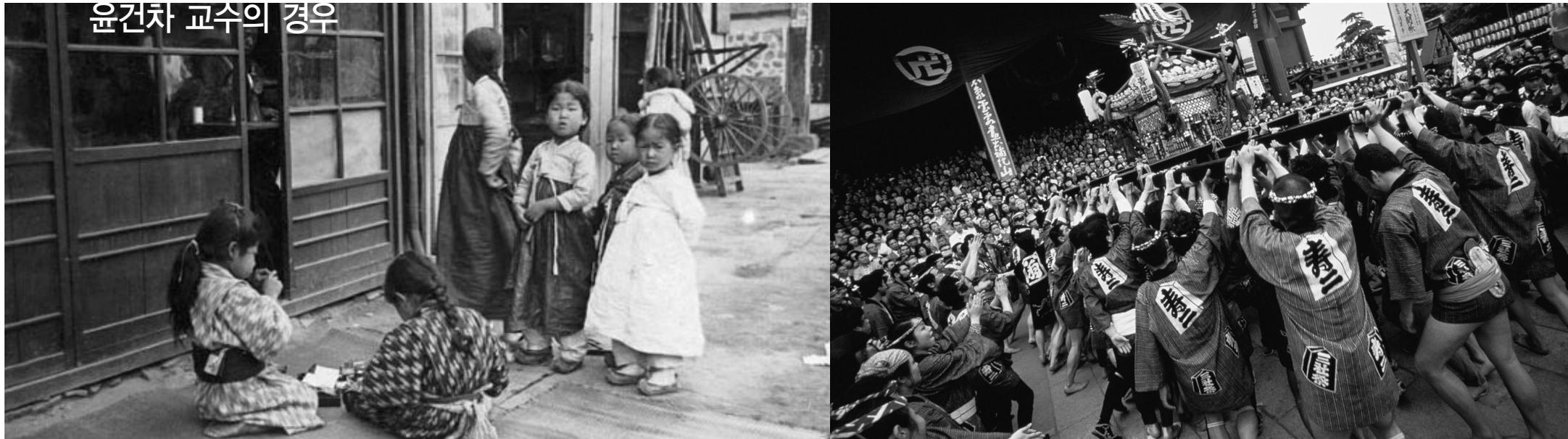
‘경계’에선 지식인이 ‘시대와 소통’하는 법

윤 교수를 처음 만난 것은 그 자리에서였다. 그때 우연히 나는 윤 교수의 책「현대일본의 역사의식」(한길사, 1990)을 가지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오래 전에 예고된 강연이었기에 며칠째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던 중이었다. 그 책은 정도영 선생이 번역한 것으로, 원래 한 권짜리가 아니라 일본 이와나미쇼텐[岩波書店]에서 각 간행된「이질(異質)과의 공존」(1987년),「고절(孤節)의 역사의식」(1990년)이란 윤 교수의 저서 두 권을 한데 묶어 우리말로 옮긴 것이었다.

고백하건대 그 책은 쉽게 읽히지 않았다. 수록된 글들의 대부분이 자세한 미주(尾註)가 붙은 논문들이라 비전문가로선 읽어내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던 까닭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일간지나 방송국의 일본 주재원 출신 기자들이 써댄 그렇고 그런 ‘일본론’에 익숙한 탓도 있었을 것이다. 어느 글에선가 박홍규 교수는

일본 근대사의 특징 중의 하나인 일본의 아시아 열시관의 형성배경과, 그 열시관의 핵심에 놓인 것이 바로 ‘조선’이라는 것을 역사적 사실을 들어가면서 또박또박 설명해 주었다. 이것이 ‘재일(在日)’로 살아가는 정주(定住) 외국인을 차별하는 심정적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윤건차 교수의 경우



민변 월례회 팀에서 엮은 「시대와 소통」(아웃사이더, 2008)을 읽다가 불현듯 10여 년 전 윤건차(尹健次) 교수가 민변에서 하였던 강연 내용이 떠올랐다. 알다시피 윤 교수는 일본 가나가와[神奈川]대학에서 근대 한일관계사·사상사를 전공하는 학자다. 그는 1997년 9월 11일 민변 동북아 특별위원회(위원장 임종인 변호사)의 초청으로 20여명의 회원들이 모인 민변 사무실에서 ‘현대일본의 역사의식’과 ‘일본-그 국가·국민·민족’을 주제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다.

“일본론 상업주의가 판을 치는 우리의 천박하기 짝이 없는 지식시장”이라 개탄하였다지만, 당시 나도 그 짝으로 천박한 일본론에 물들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솔직한 표현일지 모른다.

어쨌든 대부분 그렇듯이 책보다는 소위 ‘저자 직강’의 강연 내용이 이해하기 쉬운 법이다. 비록 서툰 우리말이었지만 윤 교수는 일본 근대사의 특징 중의 하나인 일본의 아시아 열시관의 형성배경과, 그 열시관의 핵심에 놓인 것이 바로 ‘조선’이라는 것을 역사적 사실을 들어가면서 또박또박 설명해 주었다. 이것이 ‘재일(在日)’로 살아가는 정주(定住) 외국인을 차별하는 심정적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현행 일본 헌법에 확립되어 있는 ‘상징천황제’라는 논리 속에 숨겨진 아시아 열시관을 설명하면서, 이를 논파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천



황제에 대한 본격 비판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그리고 '재일'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도 말하였다. '재일'이란 분단 조국이라는 여건 아래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는 재일동포의 총칭으로 일본 내의 소수자를 상징하는 용어라고 했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일' 조선인 연구자로서 근현대 일본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야말로 역사적 존재인 자기 자신의 의미를 되새기는 작업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도 남·북한과 일본의 3개 국가의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는 '경계인'으로서 자신의 이러한 연구 작업이 이 땅에 사는 한국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지를 되묻게 된다고도 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한국의 근·현대 사상 연구에 힘을 쏟고 싶다고 했다. 이것이 A4 용지 다섯 장 분량으로 나눠준 강연의 요지였다.

새삼 10여 년 전 일을 지금에 와서 되새기는 까닭은 한일관계가 요동치는 격변의 시대를 맞아 경계에 선 지식인이 '시대와 소통'하는 방식을 좀 더 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최근 '한류' 붐을 타고 한국과 일본을 넘나드는 세칭 대중문화 전문가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흘러넘치지만, 일본인의 내면을, 일본 사회의 심층을, 나아가 한일 간에 켜켜이 쌓인 인적·제도적 교섭관계를 꼼꼼히 파헤치고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학자들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현 상황 속에서, 윤 교수의 그간의 학문적 행보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아닌 게 아니라 윤 교수는 민변에서 강연을 한 때로부터 정확히 3년이 흐른 2000년 10월 「현대 한국의 사상흐름」(당대, 2000)이란 역작을 펴냈다. 당시 그 책은 머리말에 뒤이어 실린 한국의 '지식인 지도'라는 것으로 일약 유명세를 탔다. 지금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여전히 인기 있는 검색어 중의 하나다. 그는 머리말에 이렇게 썼다. "무릇 사람이 자신을 가장 강하게 의식하는 것은 위기에 봉착했을 때"라고. "개인이든 지역 공동체든 혹은 민족공동체든 그러한 위기는 자기상실 내지는 자기존재를 위협하는 강력한 타자(他者)를 지각했을 때 가장 선명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그 책의 끄트머리에 부록처럼 붙은 자신의 '연보' 맨 마지막에서는 이 땅의 젊은 사람들을 향해 이런 말도 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평소에 준비를 게을리 하지 말라는 당부를 하고 싶다. 아무리 고립무원의 상황에 놓여도 하루하루 꾸준히 자기가 하는 일에 열성을 다하고 힘을 길러 가면 언젠가 자신이 희망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또 가능하다면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커다란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가기 바란다. 오늘날의 한국에서는 민주화를 한층 더 실현시키고 통일로 향한 노력을 쌓아가는 길이 될 터이다."

그런 그가 2003년 1월에는 「한일 근대사상의 교착」(문화과학사)을, 같은 해 3월에는 「서울에서 생각한 것」(헤이본샤, 2003년 3월)을 한국과 일본에서 연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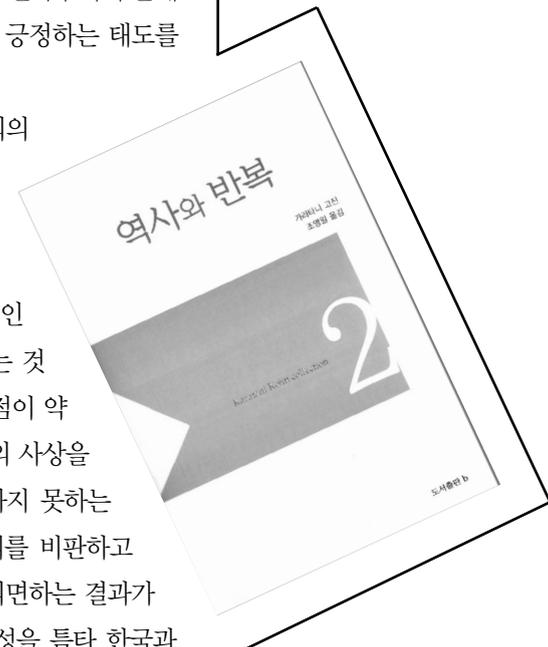
출간하였다. 그리고 올 여름 「사상체험의 교착—일본·한국·재일」(이와나미쇼텐)을 펴냈다. 최근 일본에서 나온 이 책은 곧 창작과비평사에서 우리말로 번역 출판될 예정이다.

윤 교수가 2000년 이후 출간한 일련의 책들에서 시종 강조하는 것은 '민족주의'의 긍정적 측면이다. 포스트모던 이론의 유행을 타고 탈(脫)민족주의 담론이 세를 얻어가는 가운데서도 분단된 조국, 찢겨진 산하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신자유주의 경제흐름의 와중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민족'이란 여전히 사회통합의 구심점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거대 자본의 폭력적 세계화에 대결하는 공동체적 방어기제로써 민족과 민족주의의 존재가 여전히 유효하고 정당하다고 말하는 김동춘 교수의 견해를 긍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른 한편 윤 교수가 다소간 우려하는 것은 한국 지식인 사회의 일본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특히 일본을 정점에 놓고 수직적인 방향으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학문과 사상의 수용양상에 그는 비판적이다. 가라타니[柄谷] 및 마루야마[丸山]의 저작으로 대표되는 일본사상의 수용에 대해서, 그는 "한국 지식인이 일본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은 스스로를 해부하는 것일 수 있지만, 만일 그 일본 지식인이 식민주의를 비판하는 관점이 약하고 일본의 과거청산에 둔감하였던 경우라면, 그러한 지식인의 사상을 수용하는 일은 한국의 자기 이해와 탈식민주의 과제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오히려 이러한 수용태도야말로 식민주의를 비판하고 과거청산에 적극적인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고뇌'를 외면하는 결과가 된다고 꼬집는다. 그리고 한국 지식 사회의 이러한 지적 취약성을 틈타 한국과 일본을 넘나들면서 각기 딴 소리를 해대는 기회주의적 일본전문가들이 배태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렇지 않아도 식민지근대를 축복으로 떠받드는 소위 '뉴라이트' 역사관이 '악령'처럼 출몰하는 요즈음이다. 이러한 반동의 계절에 한국 사회에서 지식인으로서 소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시대와 소통'하는 법을 체득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한 방편 중의 하나로써 자기 자신을 거둬들여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경계에 선 한 '재일' 연구자의 멀고도 험한 자기 정체성 모색 과정을 통해 배우게 된다. ✎

글 박성호 회원(한양대 법대 교수)



최근 '한류' 붐을 타고 한국과 일본을 넘나드는 세칭 대중문화 전문가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흘러넘치지만, 일본인의 내면을, 일본 사회의 심층을, 나아가 한일 간에 켜켜이 쌓인 인적·제도적 교섭관계를 꼼꼼히 파헤치고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학자들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현 상황 속에서, 윤 교수의 그간의 학문적 행보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초점 1 - 이명박 정부와 언론장악의 위법성

KBS 사장 해임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검토

언론의 자유를 천명한 헌법 규정과 언론의 자유를 개인의 자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유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바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리 국민의 헌법적 결단이나 컨센서스(consensus) 형성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 및 그 의미

우리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언론의 자유를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언론의 자유에 관하여 “언론의 자유는 바로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월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 현대헌법의 특징이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라고 하여 언론자유 우월적 지위를 천명하고, “언론·출판의 자유는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며 이를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이다.”(헌재 1992. 6. 24. 97헌마265)라고 하여 표현의 자유를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로 정의하였으며, 나아가 표현의 자유의 기능에 관하여 “통치자와 피통치자가 이념상 자동적(自同的)인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정치지도자들이 내리는 결정이나 행동에 관해서 충분히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 대중을 필요로 하며, 자유스러운 표현체계의 유지는 개인의 자기실현을 확보하고 진리에 도달하는 수단이며 사회구

성원이 정치적·사회적 결단의 형성에 참가하는 것을 확보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정과 변혁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와 달라서 정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정부는 개인이나 일반대중과 마찬가지로 또는 그 이상으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가 오류를 범한 경우의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하는 역사적 경험을 전제로 하여 정부가 국민의 비판을 수렴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보편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에 우선하는 헌법상의 지위를 갖는다고 일컬어지는 것도 그것이 단순히 개인의 자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통치권자를 비판함으로써 피치자가 스스로 지배기구에 참가한다고 하는 자치정체(自治政體)의 이념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헌재 1992. 2. 25. 89헌가104)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렇듯 언론의 자유를 천명한 헌법 규정과 언론의 자유를 개인의 자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유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바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리 국민의 헌법적 결단이나 컨센서스(consensus) 형성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국민의 헌법적 결단이나 컨센서스가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이 제반의 방송 관련 법령이라 할 것인바, 현행 방송법은 이러한 점을 특히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2. 통합 방송법의 규정

가. 공영방송에 있어서 독립성과 공공성의 중요성

방송은 소유와 운영재원의 조달 형태에 따라 국영방송, 공영방송, 민영방송으로 구분된다. 그 중 공영방송의 목표는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다양하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통해 방송문화와 공공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의 BBC, 일본의 NHK 등 각국의 공영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및 다양한 선택의 기회 제공, 프로그램의 고품질 유지 및 국가 정체성의 반영, 보편적인 접근의 보장이라는 목표를 지향해 왔다. 따라서 국가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국영방송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영방송과 달리, 공정성과 공익성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공영방송은 필수불가결하게 정부와 정치권력 및 상업자본

으로부터 독립적일 것이 요구된다.

현행 방송법 역시 한국방송공사에 공영방송으로서의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방송법 제44조는 ‘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이라는 표제 하에, “① 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영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에게 정치적·경제적 독립성은 공공성 및 공익성이라는 준립 목적 달성에 있어서 매우 필수불가결한 전제이며, 그 정치적·경제적 독립성이 훼손되면 한국방송공사는 자신의 준립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

나. 방송법의 연혁과 통합 방송법 제정의 취지

(1) 현행 방송법은 2000년 1월 12일 구 방송법(1998년 2월 28일 법률 제5529호로 개정된 것), 구 종합유

선방송법, 구 한국방송공사법 및 구 유선방송관리법의 폐지 및 통합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통합된 방송법(이하 '통합 방송법' 이라 합니다) 제정의 취지는 바로 “방송, 특히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및 공공성을 확고하게 보장”하는 것이었다.

(2) 특히 한국방송공사와 관련하여 폐지 직전의 한국방송공사법(1998년 2월 28일 법률 제5529호로 개정된 것, 이하 '방송공사법' 이라 함)과 통합 방송법을 비교하여 보면, 그 폐지·제정의 취지가 '방송공사의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에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는데, 두 법률 사이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한국방송공사의 설립목적: “국내외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전국에 방송의 시청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방송문화발전과 공공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이었던 것이,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되었다(방송공사법 제1조, 통합 방송법 제43조 제1항).

② 이사회 설치 목적: “공사의 설립목적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달성을 보장하기 위해”였던 것이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로 변경되었다(방송공사법 제8조 제1항, 통합 방송법 제46조 제1항).

③ 이사의 결격사유: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였던 것이 “정당법에 의한 당원”으로 변경되었다(방송공사법 제11조 제2호, 통합 방송법 제48조 제2호).

④ 감사의 임명권자: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었으나, “방송위원회에서 임명한다.”로 변경되었다(방송공사법 제15조 제3항, 통합 방송법 제50조 제4항).

⑤ 예산 확정·변경 후의 보고: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삭제되었다(방송공사법 제24조 제3항, 통합 방송법 제57조).

⑥ 당해년도 운영계획의 제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방송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변경되었다(방송공사법 제26조 제2항, 통합 방송법 제58조 제2항).

⑦ 결산서 확정 절차: “결산서를 재정경제원장관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결산서를 방송위원회 및 국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의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도록 변경되었다. 따라서 방송공사의 결산을 감사원에 제출해야 할 주체도 “재정경제원장관”에서 “방송위원회”로 변경되었고, 감사원이 결산서 검사 결과를 송부해야 할 기관도 “재정경제원장관”에서 “방송위원회”로 변경되었다(이상 방송공사법 제27조, 통합 방송법 제59조).

⑧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부과·징수: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후 공사가 부과·징수”하도록 변경되었다(방송공사법 제36조, 통합 방송법 제65조).

⑨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의 승인: 방송공사가 수신료 등을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었으나,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방송공사법 제37조 제3항, 통합 방송법 제66조 제3항).

다. 소결

이렇듯 통합 방송법은 종래 한국방송공사법과 비교해 보았을 때,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의 강화를 위해 정치권력 및 정부로부터의 정치적·경제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권이나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해임제정 권한의 유무에 관한 최근의 논쟁도 통합

방송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의 측면에서 판단하여야 할 문제라 할 것이다.

3.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권 내지 해임제정권의 존부

가. 통합 방송법의 임직원의 임명에 관한 규율의 변화

(1) 통합 방송법이 '직원의 임면'에 관해서는 한국방송공사법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여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반면(방송공사법 제18조, 통합 방송법 제52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감사의 임면'에 관해서는 임명권자를 “문화관광부장관”에서 “방송위원회”로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명권자의 권한을 “임면”에서 “임명”으로 변경함으로써 ‘임명권자의 감사 면직권’을 삭제하였다.

(2) 이와 궤를 맞추어 통합 방송법은 '이사의 임명'에 관해 “방송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던 한국방송공사법의 규정을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변경함으로써 '대통령의 이사 면직권'을 삭제하였다(방송공사법 제8조 제3항, 통합 방송법 제46조 제3항). 이는 '사장'의 임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한국방송공사법은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통합 방송법은 이를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변경한 것이다(방송공사법 제15조 제1항, 통합 방송법 제50조 제2항). '직원'에 관해서 '임면'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것이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면직권'을 삭제한 것임은 명백하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및

공공성이 확고하게 보장'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임직원의 신분부터 보장되어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규정 변화의 취지는 너무나 명백해서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 현행 방송법(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67호로 일부개정된 것)이 통합 방송법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3) 이와 같은 사실은 방송공사 사장 선임에 대한 법규정의 변화를 보더라도 명백히 확인되며, 이는 방송공사의 성격이 국영·관영방송에서 공영방송으로 발전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먼저 1972년 12월 30일 법률 제2418호로 제정된 한국방송공사법 제9조 제2항은 “사장은 문화공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1983년 12월 31일 법률 제3690호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방송공사 임원의 임명에 관해서는 동법이 적용되게 되었고, 그에 따라 1985년 12월 31일 법률 제3803호로 전면 개정된 한국방송공사법에는 임직원의 임명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다. 그런데 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1조 제3항 전단은 “이사장과 사장은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라고 규정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지위를 후퇴시켰다.

그 후 1987년 11월 28일 법률 제3980호로 전문 개정된 한국방송공사법은 임직원의 임명에 관한 규율을 동법 내로 회복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동법 제15조 제1항은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일단 임명 제청의 주체를 주무부장관에서 이사회로 변경하였고, 결국 그 후 통합 방송법의 제정에 의해 “임면”이 “임명”으로 변경되었던 것이다.

나. 사장, 이사의 신분에 관한 규율의 특이성

(1) 현행 국가공무원법(2008년 3월 28일 법률 제8996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보더라도 '한국방송공사

사장 및 이사에 대한 고도의 신분보장'이라는 방송법의 취지는 명확하다.

즉 국가공무원법이 결격사유(제33조), 당연퇴직(제69조), 직권면직(제70조), 직위해제(제73조의 3), 징계사유(제78조)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방송법은 이사 및 사장(등 집행기관)의 결격사유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제48조, 제50조 제6항).

(2) 한편 '공공기관'에 관한 기본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함) 제22조 제1항은 "이사회는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운영법은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제4조 제2항 제3호),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는 위 법에 근거해 '해임 또는 해임건의'를 요청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운영법에는 이사회의 해임(건의)요청을 규정하면서 방송공사에 관해서는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고, 또한 방송공사에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도 않도록 한 것은 '방송공사의 독립성 및 언론의 자유, 방송의 자유'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결단이다.

또한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 제3항은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및 상임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기관장 및 상임이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방송법에 이와 같은 규정이 없음은 물론이며 이 역시 위와 같은 이유에 의한 것이다.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제4조 제2항 제3호),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는 위 법에 근거해 ‘해임 또는 해임건의’를 요청할 수 없다.

다. 법률상 임명권에 해임권이 개념필수적으로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방송법상 사장과 이사의 임명 규정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방송법이 사장과 이사에 대하여 해임 내지 면직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상 실수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면직 권한의 '의도적 배제'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에 대해서 임명권자의 임명권 속에는 개념필수적으로 해임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는바, 아래에서 이를 살펴본다.

(2) 먼저, 현재 시행 중인 법률들을 보면 임명과 해임을 명백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예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임용령(2008. 6. 27. 대통령령 제2088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2008. 6. 5. 대통령령 제2079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임용령이나 소방공무원임용령 등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

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임용"이라는 용어는 이와 같이 '신규채용에서 면직까지 신분에 관한 포괄적인 의미의 행위'를 뜻하며, 따라서 "임면"이라는 용어와 혼용된다. 그에 비해 법령에서 "임명"이라는 용어는 "신규채용"의 의미를 가지고, 이에 덧붙여 "면직 등 신분상실"의 의미까지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임면"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따라서 "임명"이라는 용어에는 "면직"의 개념이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법령에 "면직"에 관한 규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면직"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된다. 즉 "면직"에 관한 법령상의 규정은 "면직의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과 동시에 권한자에게 "면직의 권한"을 부여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 물론 면직의 종류와 방법 등은 면직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된다.

(3) 그 외에도 동일한 법률 내에 임면에 관한 규정을 모두 두고 있는 경우는 무수히 많다.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헌법 제111조 제2항은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해 "신규채용"을 규율하고 있는바, 따라서 "면직"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게 되고, 이를 위해 제112조 제3항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역시 제6조 제1항에서는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조에서는 "재판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탄핵결정이 된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일반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각 임명하도록 규정하면서(법원조직법 제41조),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서 "법관은 탄핵결정·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되지 않는 것이며, 이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물론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되는 일반 법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대통령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해임권을 갖지 못하고, 대법원장은 일반 법관에 대한 임명권을 갖지만 해임권을 갖지는 못하는 것이다.

③ 국가공무원법은 제33조(결격사유), 제69조(당연퇴직) 외에 제70조(직권면직), 제78조(징계사유), 제79조(징계의 종류), 제82조(징계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제68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임명권"에 당연히 "면직권"이 포함되어 있다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은 굳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④ 한편 공공기관운영법 제25조는 '공기업 임원의 임면'이라는 표제 하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공기업의 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의 "임명"에 관해

규정한 후, 제5항에서 “공기업의 장은 제22조 제1항·제35조 제3항 및 제4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6조는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이라는 표제 하에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임면”이라는 용어는 “임명”과 “면직”이 동시에 지칭될 때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4) 이렇듯 우리나라의 법률은 대부분 임명과 임면을 엄격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이상의 점들을 통해 보더라도 방송법 상 한국방송공사 이사 및 임원에 대한 “임명”규정은 임명권한만을 인정하고, 해임권, 즉 면직권은 배제하는 규정임이 명백하다.

라. 소결

사정이 이러하다면,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제정권이, 대통령에게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권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한국방송공사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사유의 문제

가. 문제의 소재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방송법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명되면 임기 동안에 해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방송법의 입법취지다. 그리고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의 임기를 각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통합 방송법이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의 강화를 위해 한국방송공사의 정치적·경제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과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기를 규정한 방송법 제50조 제6항, 제47조, 제48조의 규정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의 신분보장과 관련한 위 각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사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 법원이 이를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한 사례가 있기도 하다(서울고등법원 2006. 10. 10. 선고 2005나106205호 판결).

이렇듯 방송법이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권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고, 또 강행규정으로서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이 같은 점 등을 회피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 및 제11항을 동원하여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을 강행하였다. 그런데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 및 제11항을 통해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해임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나.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 적용의 제한

위에서 누누이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정치권력 및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의 수단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법이 아닌 감사원법 규정을 통하여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이 정하는 해임권고 요건으로서의 현저한 비위를 특히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

사원이 방송법이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을 잠탈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정치권력 및 정부로부터의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을 지켜낼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을 통한 한국방송공사 사장이나 이사에 대한 해임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임명권자의 해임권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여타 공공기관 임직원에 비해 훨씬 강한 정도의 비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방송공사 사장이나 이사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의 적용이 제한을 받는다 할 것이다.

다. 해임권고 사유

감사원은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제정 권고 사유로서 크게 4가지를 지적하였는데, 감사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중 ‘KBS 감사결과 총평’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KBS의 경영책임자로서 정연주 사장은 취임 전까지 흑자이던 KBS 재정구조를 취임 이후 ‘04~’07년간 계 1,172억원의 누적 사업손실을 초래하는 등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고착화시켰고

- 이러한 적자 상황에서도 잉여인력 미감축, 정부투자기관 기준 인상률의 2배에 달하는 임금인상, 과도한 복리후생,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퇴직금누진제 유지 등 방만경영을 지속하였으며

- 자격미달자의 국장 특별승격, 원칙·기준에 어긋난 팀장 보직·해임, 비리 행위자들에 대한 부당 징계양정 감경 등 인사전횡으로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하였고

- 위법할 뿐만 아니라 타당성이 없는 방송시설 투자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비를 낭비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그 비위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감사원법 제

32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KBS 이사회에 해임을 요구하였다.

라. ‘비위’의 부존재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은 해임요구의 근거로서 현저한 ‘비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비위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법에 어긋남 또는 그 일”이다(금성출판사 간, 훈민정음 국어사전). 이 같은 비위의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감사원이 해임요구의 근거로 든 사유들을 과연 비위라고 할 수 있는지 심히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감사원이 든 위 근거들은 모두 경영판단의 대상으로서 그 근거를 모두 믿더라도 이는 경영이 부실했다는 정도의 평가를 내릴 사안이지 이를 두고 비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마. ‘특히 현저한’ 비위의 부존재

가령 감사원의 주장대로 위 해임요구 사유들을 정연주 사장의 비위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현저하지도, 특히 현저하지도 않는 비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무엇보다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을 통한 해임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방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을 해하여도 좋을 만큼의 특히 현저한 비위가 있어야 할 것인바, 감사원이 주장하는 내용들만으로는 그렇게 불만큼의 ‘특히 현저한’ 비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바. 소결

결국 정연주 사장에게 법이 정하는 내용과 취지의 해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글 서동용 회원

법치주의 관점에서 본 입기제 변칙운영의 문제점¹⁾



1. 헌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제도

가.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와 공직제도

우리 헌법은 크게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근본이념과 기본원리를 구성하는 부분으로서 헌법의 전문과 제1장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국민의 기본권을 기술한 부분으로서 헌법의 제2장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통치구조를 기술한 부분으로서 헌법의 제3장 이하이다. 즉 헌법의 원칙과 이념을 천명한 첫 번째 부분을 제외하면, 헌법의 기능적 기술내용은 크게 '기본권'과 '통치구조'라는 두개의 편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기본권이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누구든 국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자유(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통치구조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통치권능을 발휘하는 조직적, 기능적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다.

헌법상 통치구조가 위와 같이 기본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마련된 구조라면 공직자는 이 구조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직제도는

통치구조의 실현을 위한 줄기에 해당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헌법 전문 등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천명하고 있으므로 통치구조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통치구조를 실현하는 공직제도 또한 자유민주주의이념과 조화될 수 있어야 하는바, 우리 헌법은 제7조에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제1항),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제2항)'고 천명하고 있다.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공직제도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필수적 내용으로 한다. 즉 민주적 공직윤리, 민주적 지시계통,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 법치주의, 직업공무원제도 등이 그것이다.

그 중 민주적 공직윤리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오로지 공공복리의 관점만을 직무처리지침으로 삼아 일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민주적 지시계통이란 상급자에 대한 복종관계에 있으면서도 민주적인 수직관계 즉 생각하면서 복종하는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법치주의란 창의력과 능동성에 입각하여 직무에 임하되 법률에 따라야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서는 책임진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뒤에서는 자유민주적 공직제도의 필수적 내용 중에서도 정치적 중립성과 직업공무원제도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나.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

자유민주적 통치구조, 특히 그 중에서도 정당민주국가에서는 모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직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당이란 항상 일정한 정도의 당파성과 당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직자의 정당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고 공직자가 여당의 시녀로 전락하는 경우, 공직자는 이미 국민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정당에 대한 봉사자가 되며, 정당민주국가의 존립근거라고 할 수 있는 정권교체나 정책의 변화는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적 정당국가에서는 공직제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만 '한시적 정권'과 '영속적 공직제도'가 서로 견제와 보완작용을 하게 되어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정치적 신진대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특징점을 발휘할 수 있다.

한시적 정권과 그 진퇴를 같이하는 한시적 공직제도를 취한다면, 공직제도의 공직자 지위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그 선거의 전리품으로 생각하여 소속 당원들에게 논공행상의 상품으로 분배하는 이른바 엽관제도의 상품이 되어버릴 것이므로 자유민주적 정당국가의 공직제도에서는 단호히 배척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엽관제도를 배척하는 판시를 하고 있다.²⁾

따라서 혹자는 최근 정권교체에 따라 공공기관에 자기사람 심기를 계속하려면 차라리 대통령의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춰버리자는 대안을 내는 경우도 있으나, 근본적인 또는 올바른 대책이라고 보기에 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 직업공무원제도

위와 같은 자유민주적 공직제도를 제도화의 차원에서 본다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직업공무원제도라 할 수 있다. 직업공무원제도는 공직자의 안정적이고 능률적인 정책집행을 보장하려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적 보장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의 통치구조의 실현기능으로서의 공직자의 역할이 안정적으로 마련된 것은 직업공무원제도가 안착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직업공무원제도는 15세기경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확립되어 왔는데, 바이마르공화국헌법으로부터 비롯되어 미국에서는 직업공무원제도가 대통령의 절대적인 권한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미국의 정치적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영국의 Civil Service(전문적인 관료조직)가 법률집행과 행정업무를 중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행해 나감으로써 의원내각제의 정착의 바탕을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또한 제3,4공화국시대 극단적인 내각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를 지켜준 것은 관료조직의 공로라고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상의 제도라 할 수 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도 우리 헌법이 직업공무원제도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³⁾, 그러한 직업공무원제도는 입법권자를 기속한다고 판시하고 있다.⁴⁾

1) 이 글은 의회기관에서 발표한 글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2) 헌재결 1997. 4. 24. 선고 95헌바48 결정 등: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써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의 뜻을 "공무원이 정치과정에서 승리한 정당원에 의하여 중원되는 엽관제를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며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과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후략)"
3) 헌재결 1997. 4. 24. 선고 95헌바48 결정 등: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직업공무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업공무원제도는 바로 그러한 제도적 보장을 통하여 모든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상급자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헌법 제7조 제1항) 법에 따라 그 소임을 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무원 개인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국가기능의 측면에서 정치적 안정의 유지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7조는 직업공무원제도가 국민주권원리에 바탕을 둔 민주적이고 법치주의적인 공직제도임을 밝힌 것이고, 국가공무원법 제68조는 위 조항을 법률로써 구체화한 것이다."

직업공무원제도란, 공무원은 국가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국가는 그 공무원을 특별히 보호한다는 상관 관계를 제도화한 것입니다. 즉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책집행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인 통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 헌신적으로 봉사하여야 하고, 국가는 공무원이 그러한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취지다. 국가 또는 헌법이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을 보장하지 아니한다면 공무원은 특정한 집단 내지 정당에게만 충성하여 자신의 신분을 보장받으려 할 것이므로 주권자인 전체국민의 봉사자로서 일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지양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현대 자유민주국가에서는 통치구조의 원활한 작용을 위해서라도 대체로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직업공무원제도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 와서는 위와 같은 직업공무원 제도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체제인 권력분립이라는 기능 또한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즉 직업공무원제도의 정태적이고 지속적인 행정조직이 동태적이고 한시적인 정치세력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중요한 권력분립의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다.

라. 소결

위와 같이 현대 자유민주국가의 통치구조의 실현기능으로서의 공직제도의 성격과 내용에 관해서는 헌법이 그 본질적 내용을 정하고 있고, 그 내용 중 중요한 것이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국가의 통치구조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는 그 통치구조의 실현기구인 공직자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기능을 다해야 하고, 공직자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당파에 대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은 공직자의 신분보장에

의해 실현된다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결과 위와 같은 구조를 제도화한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 개인의 신분보장을 넘어서 자유민주국가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의 중요한 한 틀로서도 기능한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2. 법률상의 공직자의 신분보장

우리 법률은 헌법의 위와 같은 정신과 규정에 따라 공직자의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감사위원법] 제8조(신분보장)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2.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기업의 임원의 임면) ⑤ 공기업의 장은 …(정관위반행위, 직무해태행위, 충실의무위반, 경영실적평가 등 법에서 정한 해임사유로 인하여)…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28조 (임기) ①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에서 몇 개의 사례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법률은 공직자(협의의 공무원, 정무공무원, 공기업임원 등을 포함하여)⁵⁾의 신분보장 또는 신분보장의 성격으로서 임기보장을 헌법의 정신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기업민영화법 제4조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라는 위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 법률 제28조와 비슷한 취지의 규정에 대하여 “대상기

업의 사장의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강행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⁶⁾

3. 최근 임기제 변칙운영과 관련한 법률문제

위에서는 공직자의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원칙과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이제 현실적 문제로 들어가서, 공직자의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임기제의 유명무실화 현상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를 생각해보자.

임기제의 보장을 침해하는 행위가 위법행위임은 헌법과 법률에 비추어 당연하다 할 수 있으므로 당위를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교체될 경우 야기되는 공기업 이사장 등의 임기보장침해행위가 강제해임이 아니라 자진사퇴의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데 법률적 보호의 한계가 있다. 즉 아무리 헌법과 법률이 신분보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진사퇴의 형식으로 일어나는 한, 그 사퇴에 가해지는 압력은 단지 정치적이고 사실적인 행위일 뿐이고 직접적인 법률위반행위로 사법의 심판을 받을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위와 같은 사퇴압력에 의한 자진사퇴에 관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겠다는 구체적인 사례가 제기되고 있다. 즉 사퇴한 공직자가 위와 같은 자신의 자진사퇴가 강요된 행위이므로 그 사퇴의 의

사표시를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하고 본래의 직위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안이 법원의 소송사건으로 되는 경우, 법원은 철저히 당해 사건 자체에 한정하고 법리에 따라서만 평가할 것이 예상된다. 즉 일반적으로 여론으로서 논해지는 평가 즉 정치적인 압박행위가 사실은 헌법과 법률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추상적, 당위적으로 논해지는 평가를 넘어서, 당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정치적 압박행위가 과연 민법 제110조에 해당하는 정도의 강박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강박행위⁷⁾의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정치적 압박을 넘어 구체적인 압박행위 하나하나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그 구체적인 강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가가 커다란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흔히 기관장 정도의 인사에게 행해지는 사퇴압력은 간접적으로 은근하게 정치적으로 가해지는 것이어서 구체적이고 유형적인 강박행위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위와 같은 정치적인 사안이 법원의 평가를 받은 사례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다만 이제 앞으로는 위와 같은 사안이 법원의 평가를 받아 승소하는 사례가 생김으로써 사법의 힘으로 소위 연관제도의 순환반복을 끊어내는 사례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가질 뿐이다. 

글 **성종규** 회원

4) 헌재결 1989. 12. 18. 선고 89헌마23 결정 등: “헌법 제7조는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의 원리를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법률로서 관계규정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헌법의 위와 같은 기속적 방향제시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라는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라는 입법의 한계가 확정된 것이다.”

5) 위에서 계속하여 공직자와 공무원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였는데, 현대 공직제도는 종래 국가고권작용(?家高?作用)에 의해 설정되었던 전통적인 공무원관계 이외에 일종의 근무계약에 의해서 설정된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제2의 공직자집단까지 포함하는 경향이며,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근로관계를 맺고 이른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내지 특별행정법관계 아래 공무를 담당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협의의 공무원을 말하며”(헌재결 1989. 12. 18. 선고 89헌마32 결정 등)라고 하여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6) 서울고등법원 2005나06205 판결(대법원 상고 중으로 미확정)

7) 민법 제110조에서 말하는 강박행위에 의한 의사표시란,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 타인(상대방 또는 제3자)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에 없이 행한 본의 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신문광고 중단운동 법률해제



해리슨 포드가 살인혐의자로 주연한 영화 Presumed Innocent(우리말 제목: 의혹)를 보면 검사가 사석에서 주인공에게 살인을 했는가를 물었을 때 “Yeah, right(그래, 맞다)”이라고 말했다는 증거를 법정에서 제시하려고 하자 흑인판사가 “검사, 그가 반어법으로 말했던 것이 확실해요. 우리 동네에서라면 ‘Your Mama(니 엄마)’ 라고 했을 말을 그는 더 예의바르게 말했을 뿐이에요”라며 검사를 창피주는 장면이 나온다.

이 형사재판은 본안재판에도 가지 못하고 기소 자체가 각하되는데 검찰이 얼마나 기소할 근거가 없으면 저런 증거를 내세울까를 보여준다.

이번에 검찰이 광고주리스트 및 광고주상대 항의전화 독려글을 올린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제시한 법적 근거들을 보면 얼마나 검찰이 법적 근거가 없는 처벌을 강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1. 소비자의 절대적 권리

검찰은 일간신문의 광고주들에게 전화를 거는 행위 자체를 ‘업무방해’로 보고 있다. 업무방해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형법 제314조)” 경우이다. 우선 시민들이 광고주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가 회사에 제품의 질을 높이도록 촉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구매 혹은 불매하는 것은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소비자의 고유한 권리이며 구매여부의 조건에는 제품이나 용역의 질 자체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투자행위, 고용행위, 환경정책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광고처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다. 소비자가 이와 같이 절대적 권리를 누리는 이유는 어떤 기업체도 특정 소비자와 거래할 ‘권리’는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유일한 한국 판례로 마이클 잭슨 방한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1년 7월 13일 1996년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에 대해 반대하기 위하여 그 공연의 흥행사의 주거래은행에 해당 흥행사와의 거래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흥행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경제적 압박수단을 고지하여 불매운동 대상자가 불매운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여 부득이 본의 아니게 원고와 체결한 계약을 파기하였다’며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자신의 행동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자유민주주의헌법 법질서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멀리가지 않더라도 해당 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던 원심판결이 명쾌하다.

‘인과관계가 없으며, . . .그들[은행들] 스스로 위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시민단체]가 공연한 불매운동 등에 의해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영업손실을 비교 교량하여 독자적인 영업 판단에 따라 선택한 결과’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규정되었다. (1998. 9. 1. 선고 98 나 18225)

즉 위에서 필자가 설파한 대로, 시민단체의 언사를 수인한 은행 직원들이 그 언사에 대해 생각하고 반응할 기회를 가진 순간부터 시민단체들은 더 이상 그 언사에 대한 책임이 없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을 새겨보면, 시민단체들이 주거래은행에게 ‘마이클 잭슨공연을 지원한다면 우리는 당신 은행과 거래를 하지 않고, 내 친구나 내 가족들도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오’라고 말한 것을 ‘경제적 압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가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노조를 탈퇴하지 않는 이상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노동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주지 않으며 다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경제적 압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어느 은행에 가서 당신 은행과는 거래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압박’이라면 그 은행은 소비자들이 거래를 자신과 하도록 강제할 ‘특권’이라도 있다는 말이지 궁금하다. 기업들의 경제적 결정은 환경 및 노동에 끼치는 영향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보장해주어야 하는 소위 시장경제 아래서 소비자들이 특정 업체를 애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를 ‘강압’으로 보는 것은 시장경제의 기반을 뒤흔드는 결정이다.

시장경제에서 '경제적 압박'은 한가지 밖에 없다. 바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한 업체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또는 여러 업체가 담합하여, 소비자들에게 특정 가격이나 특정 제품을 파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위와 같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담합'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소비자주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한 것도 그런 이유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위와 같은 항의전화 자체가 위법이라는 세 가지 독립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 (1) 미국의 노사관계법과 호주의 상거래법이 금지하고 있고 (2) 미국의 민사사례들이 금지하고 있는, 일간신문들에 대한 '2차 불매운동'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3) '2차 불매운동'이 아닐지라도 그와 같은 광고주에 대한 항의전화가 형법상 '위력'에 이를 정도로 즉,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많은 전화통화가 이루어져 광고주 자체에 대한 업무방해를 이룬다는 주장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의 (1)과 (2)는 각각의 주장 자체가 허위이다. 위의 (3)의 사실은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업체의 소비자전화번호는 무조건적으로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만이 그 번호에 전화를 할 권리가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 위 구속자들이나 개별 전화통화자를 처벌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2. 미국의 노사관계법과 호주의 상거래법은 노동조합과 기업체에만 적용된다

미국에서는 노사관계법인 소위 태프트-하틀리법의 8(b)(4)(ii)(B)조와 공정거래법인 셔먼법이 노조들과 기업들의 2차 불매운동을 각각 규제하는데 전자는 노동조합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후자 역시 판례를 통해 기업들에만 적용될 뿐 소비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호주의 2차 불매운동 금지 규정인 상거래행위법(Trade Practices Act) 45조는 기업들과 노동조합들에만 적용되고 소비자들의 2차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예외를 포함하고 있다. 즉 위의 법들은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을 처벌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실제로 지난 8월19일 브리핑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한겨레신문 기자가 질문을 하자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는 노조와 같이 특별지위를 갖는 집단을 제약하는 법을 그런 지위가 없는 집단인 일반소비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이 미국법을 연구한 결과를 보여준 것이라면 그야말로 세계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2차 불매운동 금지제도의 기반은 노조에 대한 규제도 소비자운동에 대한 규제는 더더욱 아니며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이다. 기업체들이 담합하여 다른 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위법이다. 그런데 시장지배적인 사업자는 담합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경쟁자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는데 바로 자신의 제품을 취급하기를 원하는 거래처들 중에서 자신의 경쟁자의 제품을 같이 취급하는 거래처들에게는 납품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거래처들은 시장에서 인기 있는 시장지배자의 제품을 취급하기 위해 경쟁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 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가 바로 경쟁자에 대한 "2차불매(secondary boycott)"이고 미국은 이를 공정거래법의 명백한 위반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은 소위 일종의 노사관계법인 태프트-하틀리법의 8(b)(4)(ii)(B)을 통해 노동조합에도 적용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노조파업의 경제적 측면 때문이다. 즉 노동조합 발생 초기에 '노동조합의 파업도 자신의 사용자에게 노동력과 돈을 주고받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담합이고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겠는가'의 논란이 있었다. 물론 결론은 노동자는 소비자와 같은 약자이며 단결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논거 하에 일률적으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고 현재 세계 어느 나라도 단순한 파업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조의 파업행위 중에서 사용자가 아닌 사용자의 투자자나 거래처에 대해 파업을 선동하거나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파업(1차 파업)과는 달리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위의 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똑같은 이유로 호주의 상거래행위법(Trade Practices Act) 45조가 소비자의 행위는 규제하지 않으면서 기업들과 노동조합들의 2차 불매행위를 공히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검찰의 말과는 반대로 '노조가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소비자에게 허용되는 행위가 노조에게만 금지되는 것' 일 뿐 2차 불매운동 금지 법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일반소비자에게 적용될 수 없다.

도리어 미국에서는 소비자의 2차 불매운동이 건강한 시장경제의 한 부분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고 법원들과 학자들이 이로부터 영감을 받아 노조들에게도 2차 불매운동을 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 중이다.

3. 소비자 2차 불매운동이 위법판단 받은 사례는 없다

검찰은 미국과 호주의 노사관계법이 소비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단체 측에서 지적하자 '외국에서 소비자들의 2차 불매운동이 위법으로 판단된 경우가 있었다'고 하였지만 그 사례들이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아왔으나 그 사례들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기사들을 통해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 소개되는 사례들은 모두 검찰의 구속영장신청서에 언급되어 있다. 재미있는 것은 각 판례들에 대한 설명이 검찰의 구속영장신청서에서는 매우 간략하고 허술하게 이루어진 반면 각 신문들이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 미국

조선일보 8월20일자 아침신문에 “광고주 협박, 미국에서도 불법”이라는 제하에 장상진 기사가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다.

(1) 1999년 미국 캔자스주(州) 고등법원은 한 방송사의 광고주들에게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고, “이 광고회사는 여성을 착취하는 방송사를 지원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이 방송사 전직 근로자에게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도록 판결했다.

위의

(1)의 내용은 왜곡보도의 전형이다. 캔사스주 고등법원의 판결(Drake 대 Benedek 방송국, 983 P.2d 274(1999))은 이 전직근로자가 방송사에 재취직을 시켜달라는 경제적인 이유로 광고주에게 시위를 했다고 하여 위법성을 인정된 것이다. ‘고용’이라는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제3자를 괴롭히는 행위는 필자가 이미 위법하다고 인정한 공정거래법 상의 2차 불매행위와 비슷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 1996년에는 한 기독교 단체가 “WVUE-TV 방송국의 모든 광고주들을 상대로 한 광고 철회 운동을 허용해 달라”며 낸 청원을 연방대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법은 범죄적 행위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는 기사를 실었다.

또 위의 (2)의 기사가 말하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 기독교 단체가 광고철회운동을 허용해달라는 청원을 낸 적이 없고 연방대법원이 관련 사안을 심의한 적도 없다. 다만 그 기독교단체가 광고철회운동을 벌인 것에 대해 루이지아나주 항소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고 기독교단체가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며 연방대법원이 이에 대해 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심리불속행결정을 내린 바가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이 결정은 “심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단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Williams v. Burnham Broadcasting 513 U.S. 814 (1994)). 그러므로 ‘법은 범죄적 행위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을 연방대법원은 한 적이 없다. 이 말은 연방대법원이 심의를 포기한 루이지아나주항소법원의 판결에서 나오는데 이 판결에서 위법판단이 난 이유는 위의 캔사스주 법원 판결의 그것과 같다. 위의 기독교단체가 공정보도 요구를 빌미로 자신들을 방송에 출연시켜달라는 요구를 방송국 측에 지속적으로 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는 금품을 요구하는 공갈(extortion)행위였기 때문에 금지명령을 내렸었던 것이다(Burnham Broadcasting Co. v. Williams, 629 So. 1335 (La. App. 1993)).

나. 독일과 프랑스

이와 함께 동아일보의 8월 23일 정원수 기자의 보도 역시 왜곡되어 있다. 동아일보는 위의 조선일보 기사가 소개하는 미국판례들을 똑같이 소개한 후 다음과 같이 독일 사례를 소개하였다.

(3) “1969년 독일 남부 한 대도시의 극장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차단하기 위해 그 지역의 신문에 광고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독일 법원은 “극장 소유주들의 결의는 법에 위배돼 금지될 수 있다.

하지만 2차불매운동’ 금지 법리가 공정거래법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극장들과 같은 기업들에 적용된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가인데 위의 사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는 「일부 언론은 “외국은 언론사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이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는 외국 사례를 잘못 해석한 결과라는 것이 검찰의 지적이다.»라는 기사의 근거로 위 판례를 제시하여 소비자들의 광고중단운동이 독일에서 위법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동아일보는 프랑스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4) “1981년 아모코 디아즈라는 유조선이 프랑스의 브르타뉴 해안에 좌초되자 소비자단체는 유조선 회사가 아닌 화물 소유자인 석유회사 ‘셸’을 상대로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하며 불매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프랑스 법원은 “충분한 식견이 없는 여론 재판으로 셸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Renseignement concernant Shell v. Amis de la Terre)은 첫째 항소법원에서 실질적 효력이 없어서 거의 유명무실화된 사건이다. 둘째 셸사를 상대로 한 시위는 다른 회사에 압력을 넣기 위해 그 회사의 거래처인 셸사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시위였고, 프랑스 법원이 그 시위 자체에 대해 위법판단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시위가 2차 불매운동이라서 위법하다고 판시한 적이 없다.

셋째 셸사 사건은 평화적 불매운동이 아니라, 셸사의 프랑스 지사 사무실에 대한 무력 점거, 폭력행사, 기물 손괴까지를 수반한 불매운동에 대하여 “명백한 소란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유조선 이름도 ‘아모코 디아즈’가 아니라 ‘아모코 카디즈’이고 회사 이름도 ‘셸’이 아니라 ‘셸’이 맞다.

다. 국제법

(5) 국가 간의 불매운동과 관련해서도 국제기구와 국제협약은 2차 보이콧을 금지하고 있다. 유엔총회 결의와 협의회 보고서,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미주기구(OSA) 등은 ‘2차 보이콧을 통한 경제 제재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간의 2차 보이콧이란 한 국가(예를 들어 아랍국가)가 다른 국가(예를 들어 이스라엘)에 타격을 주기 위해 그 목표국가와 거래를 하는 기업들(예를 들어 미국기업들)이 자국 내에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이 국제법상 위법인 이유는 GATT상 모든 WTO회원국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되어 있는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s) 의무에 반하기 때문이다. 물론 공식적으로 적대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GATT 21조 상의 ‘국가안보’ 예외를 적용하거나 여러 아랍국가들이 WTO에 가입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 하였던 것이 GATT35조 상의 ‘상호 불적용 조항’을 적용하여 직접적으로 차별대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차별대상국가와 거래하는 국가까지 차별할 수는 없다는 것이 최혜국대우의무 조항인 것이다.

이런 국가간의 2차 보이콧 금지법리는 국가들간에 존재하는 최혜국대우의무에서 도출된 것이지 그와 같은 합의가 없는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전혀 차원이 다른 국제법상 국가간 2차 보이콧에 관한 법리를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에 적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광고중단운동이 위법하다는 외국사례의 예로 소개한 것은 국가간 2차 보이콧 금지 법리를 왜곡한 것이다.

라. 미연방대법원의 입장

특히 동아일보는 위 기사에서 미연방 대법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도 여러 차례 판례를 통해 2차 보이콧이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한 번도 어떤 이유로도 소비자들의 2차 보이콧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일이 없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히려 노동조합의 2차 보이콧만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연방노사관계법(태프트-하틀리법)에 대해 노조가 특정 생산자의 제품 구매를 막기 위해 그 제품의 유통업체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고[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v. Fruit Packers, 84 S.Ct. 1063 (1964); 소위 “Tree Fruits” 사건], 다만 그 유통업체 매출의 90% 이상이 불매시위의 궁극적 목표인 생산자의 제품판매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에는 위 법이 이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있었을 뿐이다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v. Retail Store Employees Union, 100 S.Ct. 2372, (1980); 이른바 “Safeco” 사건]. 참고로 Tree Fruits사건과 Safeco사건(검찰이 영장신청서에서 ‘사페코’라고 읽고 있으나 ‘세이프코’가 맞는 발음임)은 영장신청서에 위법성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역시 위법성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특히 위의 Safeco사건은 미연방대법원이 ‘2차 보이콧은 불법’이라고 판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이미 태프트-하틀리법은 노동조합의 2차보이콧은 명시적으로 위법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연방대법원은 그러한 판시를 별도로 할 이유가 없었으며 단지 그 법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 뿐이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연방대법원은 2차 보이콧은 합법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NAACP v. Claiborne 458 U.S. 886 (1982). 이 결정은 태프트-하틀리법이 시행 중이던 기간에 내려졌는데 소비자들의 보이콧에 대해서 내려졌던 것이다. 이 결정의 영향력은 상당하여 미연방대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받아 여러 차례 소비자들의 2차보이콧이 주법원에서 합법 판정을 받았다.

⊗ Environmental Planning and Information Council of Western El Dorado County, Inc., v. The Superior Court of El Dorado County, 36 Cal. 3d 188 (June 7, 1984) (한 비영리단체는 한 언론사의 환경문제에 관한 논조를 비난하며 원고의 신문에 광고를 내지 말 것을 광고주들에게 요구한 것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판결. 해당신문을 “쓰레기”라고 부른 전단 등을 광고주에게 보냄. “경쟁업자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계약이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 .그러다 피고의 목표는 환경과 연관된 공론에 대한 풋힐타임스의 논조를 바꾸어보려는 것이었고, 이 목표 자체는 명백히 합법적이었고, 사용된 방법도 평화로운 2차 불매운동으로서 이 주의 판례법 상 합법적인 것이었다”라고 판시함.)

⊗ Searle v. Johnson, 709 P.2d 328 (Utah 1985) (유타주에서 한 동물애호가 협회는 특정 지역의 개 수용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 지역의 관광 자체를 거부하고 주변사람들에게도 그 지역을 관광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고, 하급심은 그 지역관광업체들의 손해소송을 인정하였으나 유타 주대법원은 NAACP판결을 언급하며 파기함.);

⊗ Near East Side Community Organization v. Hair, 555 N.E.2d 1324 (Indiana C.A. 1990) (인디애나주 고등항소법원은 주거환경개선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이 그 지역의 소위 “악덕 임대인”의 세입자들을 접촉하여 민원을 제기할 것을 부추긴 것에 대하여 역시 업무방해(interference with trade)에 의거하여 임대인이 시민단체에 제기한 민사소송을 각하하였음.)

4. 광고주에 대한 업무방해: 공모공동정범 이론

8월 21일 발부된 영장내용을 분석해보면, 검찰은 ‘2차 불매운동’ 주장은 이미 날조된 외국법리에 근거한 것임이 판명되자 한발 물러나 2차 불매라서 위법이라는 것이 아니고 항의전화가 너무 많아서 광고주회사의 업무가 불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사람이 업무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고 수 만명의 사람이 같이 전화를 해서 업무가 마비되었기 때문에 검찰은 전화를 한 사람들과 전화를 독려한 사람들 모두 서로 공모공동정범이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사실이라고 해도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우선 전화를 건 사람들도 처벌할 수 없고 전화를 걸도록 독려한 사람도 처벌할 수 없다.

가. 전화를 거는 행위 - 1,000통 전체에 대한 통정이 있어야 위법성 증명가능

전화를 건 사람들의 경우, 소비자들은 전화를 걸자마자 무조건 해당제품을 구매하겠다고 하는 ‘무조건적 구매자’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의 구매의 조건을 회사 측에 통지하기 위해 업체의 소비자전화번호에 전화를 할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구매의 조건을 또는 구매 고려의 조건을 특정신문에의 광고계재로 정하고 이를 회사에 통보하여 회사가 소비자만족을 할 기회를 주고자 할 때 결국 소비자전화번호에 전화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 ‘조건부 구매자’들이 우연하게 동시에 전화를 하여 전화가 불통이 되어 ‘무조건적인 구매자’들의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업무방해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자면 특정 관광지역의 위험성을 정직하게 알리는 인터넷 게시물 때문에 여행사에 환불 요청이나 ‘귀 업체가 행선지를 바꾸면 제품을 구매하겠다’라고 통보하는 전화통화가 한꺼번에 몰려 위에서 말한 무조건적인 구매예정자들의 주문이 무산된 경우에 위 게시자가 처벌될 수는 없다. 위의 행위들이 업무방해로 인정하려면 무조건적인 구매자들의 전화가 성사되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조건부 구매자’들간에 그렇게 전화를 하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결국 업무방해가 성립된다면 수천통의 전화통화를 건 사람들이 서로 통정하고 결의하여 ‘무조건적 구매자’들이 전화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전화공세를 했어야 한다. 즉 몇월 며칠 어떤 시간대에는 누가 어떤 순서대로 전화를 걸어서 전화를 불통시키기로 하고 그와 같은 불통상태를 유지하기위해 각각의 시간대에 대하여와 같은 통정과 합의가 있었어야 한다. 예를 들어, ‘6월1일 오후5시부터 오후6시 사이에 전화할 사람 100명을 뽑는다’라는 게시물을 올려 100명이 댓글로 답하여 서로에게 정해진 시간에 전화할 것에 대하여 합의를 하는 것은 물론 각 시간대별로 위와 같은 합의를 성사시켜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 사건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 8월21일 영장내용을 보면 '집중공략 광고주 리스트', '최소 5군데 이상 공략 해주세요' '모두 빠짐없이 압박을 가해 주세요' 등 압박 적극 조장.. '오늘은 명 인제약입니다' 라고 특정업체를 게시하는 정도의 글이 보이는데 보다시피 몇 명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원을 한 정도이지 은 통정도 아니고 결의도 아니다.

이것은 서로들에게 '세금을 내지 말자'고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한 명이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개별 항의전화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이와 같은 전화를 걸기 위해 수천 명이 서로 통정하고 결의하여 그런 전화공세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불법일 수 있다.

검찰이나 법원이 혹시 '광고주들의 소비자전화번호가 제품의 질, 기업의 환경 행위, 노동행위 등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 만이 사용할 수 있는 번호라는 허무맹랑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항의전화 자체는 합법적이다.

나. 전화걸기를 독려한 행위 - 공모공동정범이론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이 요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처벌되는 네티즌들이 광고주들에게 전화를 거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 된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전화를 할 것을 독려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광고주 전화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광고주 리스트를 올린 것에 대해 처벌이 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광고주리스트를 올린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광고주 리스트는 광고가 실린 일간신문들에 공개된 것인데 이것을 인터넷에 다시 게재한 것이 범죄라면 바로 그 광고를 몇십만 부씩 찍어 광고주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전 국민에 통보하는 일간신문 스스로도 범죄를 교사 및 방조하고 있다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면 항의전화 독려글이 남는데 위에서 보았지만 항의전화 자체가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이 항의전화를 독려한 글은 더욱 위법성이 없다.

전화를 독려한 사람들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항의전화 자체가 합법적이고 '오늘은 어디에 전화하자' 라는 독려하였을 뿐 실제 그 독려글을 본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전화를 할지 몇 명이나 할지 그리고 무조건적인 구매예정자들의 전화통화를 봉쇄하기에 충분한 숫자가 할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전화통화의 사회적 타당성, 절박성, 중요성을 주장하였을 뿐이다.

전화를 독려한 행위는 전화를 실제로 한 행위에 비해 더욱 헌법적으로 보호받는다. 말은 듣는 사람이 반응하여주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음란물, 기밀누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사기 등과 같이 표현행위 자체가 공익을 해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듣고 반응하는 사람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효과를 내는 행동에 비해 말은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는 원리가 바로 표현의 자유의 몸통이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이란 중대한 피해가 반드시 그리고 즉각적으로 일어날 경우에만 말이 처벌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89년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부터 표현의 자유의 보호기준으로 널리 받아들여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은 미연방대법원이 1차 세계대전 당시 징집 불복을 선동하는 전단을 배포한 것에 대해 실제로 대규모 징집거부사태가 발생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만 선동행위에 대한 처벌이 헌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판시한데서 온 것이다(Schenck v. U.S., 249 U.S. 47 (1919)). 형법이론인 공모공동정범이론도 표현을 다룰 때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론에 부합하게 합헌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한정되어 해석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미연방대법원이 1969년 KKK단원이 집회에서 소수민족을 폭력적으로 공격할 것을 선동한 행위에 적용하면서 특정행위가 타당하다는 '주장(advocacy)' 과 그 행위의 '교사(incitement)' 를 구별하고 '즉각적인 위법행위의 교사'에 대한 처벌만이 헌법상 가능하다는 원칙으로 발전시켰다.(Brandenburg v. Ohio, 395 U.S. 444, 449 (1969)) 우리나라 영한사건들은 incitement를 선동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전적 의미일 뿐 판례들을 통해 그 개념의 범주가 확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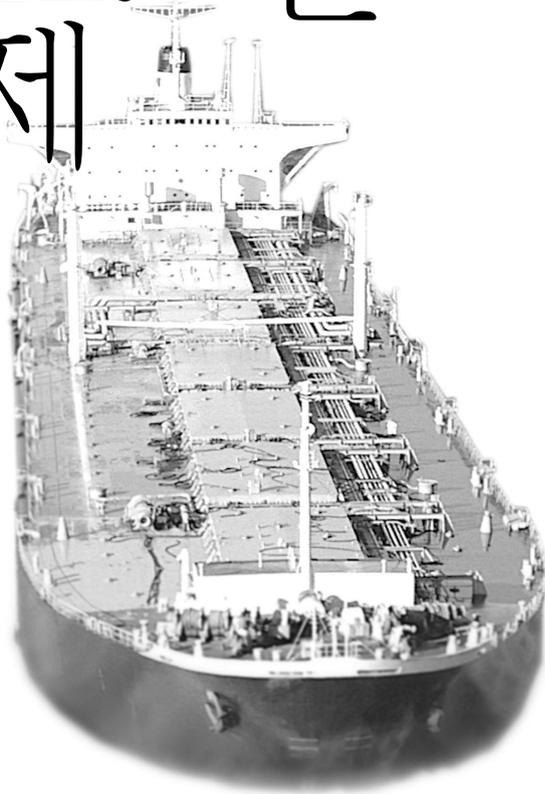
'주장' 과 '교사' 는 다음과 같은 예시를 통해 구별된다. 미연방대법원은 1973년 시위진압경찰이 시위대가 차도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자 시위자 한 명이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우리는 차도를 점거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그 말이 특정인들을 교사하려 한 것이 아니"라며 이에 대한 처벌이 위헌이라고 하였다(Hess v. Indiana, 414 U.S. 105 (1973)). 또 위에서 언급한 NAACP 대 Claiborne 사건에서도 "저 가게를 이용하는 흑인들은 목을 부러뜨려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처벌이 불가하다고 하였다.

즉 화자와 청취자 간에 특수한 상황이 있어 청취자가 반드시 그리고 즉각적으로 화자의 주장을 실행에 옮길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한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한 입장이나 특정한 행동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것마저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는 것이다. Hess판결의 시위대나 Brandenburg 판결의 KKK단원들 또는 NAACP 대 Claiborne의 시위대와 같이 하나의 목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도 모두 처벌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보면 합헌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화자와 청취자 간의 통정과 결의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생면부지의 낯선 사람들에게 '이러 이러한 곳에 전화를 합시다' 라는 게시물을 올린 것뿐이므로 화자와 청취자 간에 가별성 있는 '교사' 는 없다. 물론 독려글이 더욱 가별이 불가능한 이유는 위에서 말했듯이 독려의 대상인 개별전화통화 자체가 합법일 뿐만 아니라 이 개별전화통화를 합산하여 불법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통정과 결의가 없다는 것이고 독려자들이 이와 같은 통정과 결의를 중개하거나 조정하지 못하였음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글 박경신 회원(고려대 법대 교수)

현대미포조선 판결의 의미와 과제



지난 7월10일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훈 대법관)는 현대미포조선에서 선박의 수리, 검사업무를 하던 노동자 30여 명이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확인 소송에서, 현대미포조선이 하청업체인

용인기업(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는 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되어 있었다)과 체결한 계약은 '위장도급계약'에 불과하고 노동자들은 처음부터 원청회사인 현대미포조선에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판결)

노동자들이 2003년 1월 31일자로 용인기업의 폐업으로 해고되어 거리로 나선지 꼭 5년 6개월 만이다. 이 사건의 원심인 울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은 도급관계로 보아 노동자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위장도급이고 노동자들과 현대미포조선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 1) 윤애림, "간접고용에서 사용자 책임의 확대", -집단적 노동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제14호)」(2003), 147면.
- 2) 강성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보호방안',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정책연구과제 「용역노동자의 노동실태와 관련 법제도 고찰 및 정책제언」(2007), 126면
- 3) 파견법상의 허가 및 제한 나이가 사용사업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위장도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노무도급계약의 외양을 취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의도는 자신이 사용자로서 각종 책임을 면하는 동시에 그 결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봉쇄하려는 것이거나, 해고제한 법리의 회피 등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용자가 노동자와의 사이에 중간업자를 근로계약의 형식적인 당사자로 개입시키고 노동법상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고용형태를 간접고용이라고 한다¹⁾.

간접고용은 직접고용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직접고용이란 사용자가 자신의(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이용하는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형태를 말한다. 직접고용에서는 근로계약의 체결이나 노동자의 사용 등에서 타인을 매개시키지 아니함으로써 근로계약의 체결주체, 노동자 사용 주체, 임금의 지급 주체, 노동자 사용으로 인한 이익의 향유 주체가 일치한다. 이에 비해 간접고용은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그 노동자를 사용 또는 이용하는 형태이다²⁾.

여기서 도급은 수급인이 어떠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64조).

이와 같이 원래의 의미를 지닌 도급을 진정한 도급이라 한다면,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도급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노무도급관계를 위장도급이라 할 것이다³⁾.

위장도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실질관계가 무엇인가를 보면 첫째가 파견근로관계인 경우가 있고, 둘째는 아예 수급인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도급인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도급인과 노동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사건이 바로 도급계약을 위장한 것인데, 그 실질은 현대미포조선(도급인 또는 원청업체)과 노동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한편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파견업체)가 노동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노동자를 사용사업장에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는 파견사업주의 실체가 인정되고 사용사업주의 관여의 정도가 묵시적 근로관계보다는 낮은 경우라 할 것이다. 1998년 7월 1일 제정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명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사유, 업무, 기간 등의 제한 아래 근로자 파견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2007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이랜드·뉴코아 사태는 1년이 지난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이는 차별금지 등의 비정규직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산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그 업무를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형식적으로 용역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로 하여금 계산업무를 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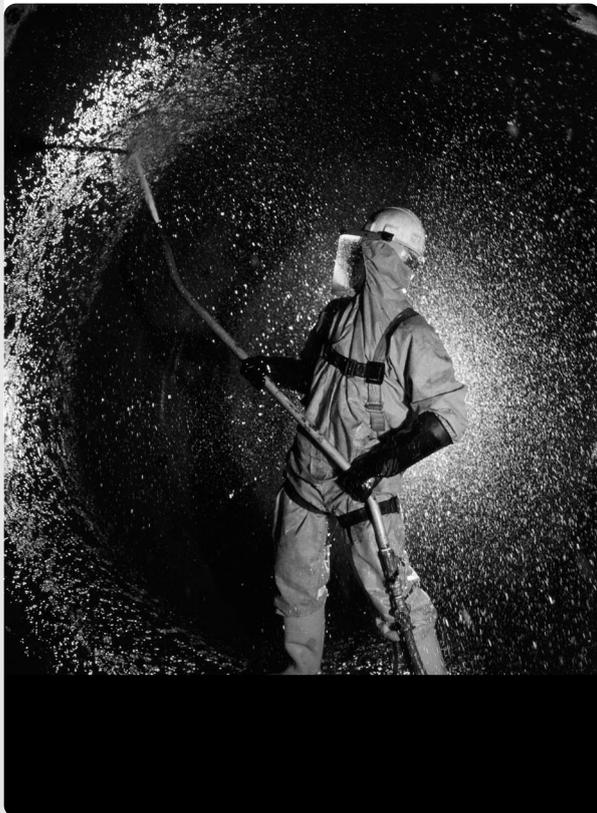
용역업체라는 다른 회사 소속 노동자가 되는 것이므로 원청업체(도급인, 사용사업주)는 차별시정이나 기간제 사용 제한(2년)을 전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3년이 넘게 투쟁하고 있는 KTX 승무원. 우리는 KTX를 타면서 그들이 철도공사 직원이라는 것에 추호도 의심을 품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도 명목상으로는 철도공사의 하청업체인 철도유통 소속이었고, 이들이 불법파견을 주장하고 나서자 철도공사가 KTX관광레저로 도급계약처를 통째로 바꾸면서 하루아침에 전원 해고되었다. 1,000일이 넘는 기류전자 불법파견 여성 노동자들, 1년이 넘는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 등 아직 투쟁이 현재 진행형인 사업장이 모두 이 간접고용과 관련된 사업장들이다. 모두 도급계약으로 위장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조업 사내하청, 유통서비스 분야 등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노동법은 어디에서도 '간접고용 노동자'라고 낙인을 찍어 이들에게는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없다. 하지만 원청업체는 자신의 책임을 전면 부정하면서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어,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노동 3권은 물론이고 노동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조합을 결성해도 교묘하게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하면 업체는 폐업이 되어 버린다. 그리고 새로운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들만 고용승계를 하면서 조합원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꼭 노조활동 때문이 아니라도 KTX여승무원 사례처럼 원청업체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하청 노동자들은 전원해고하기도 한다.

어렵게 노조가 유지되어도 사업장 내에서 노조활동을 하면 “남의 공장에 와서 노조활동을 한다”면서 원청업체의 보안 직원들이 동원되어 플래카드를 뺏고 폭행을 가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진다. 단체교섭 요구를 하면 원청업체는 “우리는 당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제3자”라면서 일체의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 하청업체도 “우리가 무슨 힘이 있냐. 임금도 원청이 도급료를 맞게 주어야 인상을 해주는 것”이라고 발뺌하면서 교섭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다. 사정이 이 정도라면 사실상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힘든 것이다.

원청업체는 직접고용을 회피하면서 하청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고 있다. 그나마도 또 하청업체가 중간이득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중의 중간착취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코스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을 주면서 이들에게 정규직 노동자의 옷을 입히고 정규직의 명함과 배지를 주며 증권회사에 나가 일하도록 했다. 증권회사와 업무위탁 계약을 맺을 때 정규직 노동자가 시설을 관리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번론 | 30 | 사법 제대로 보기

일본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남의 일 같지 않은 다음 보도 내용을 보자.

‘친구도 사귄 수 없는 못난이예다 인권도 없음/애인도 없음.’

8일 7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아카하바라 묻지마 살인 용의자 가토 도모히로(25)가 무선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한 게시판의 제목이다. 사상 최악의 ‘도리막’ (길거리 악마) 사건을 저지른 그의 게시판은 실직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 등 일본 비정규직 젊은이의 절망적인 내면을 잘 보여준다. 자신을 ‘후대전화 의존’이라고 칭한 그는 20일 동안 3천 건의 글을 올렸다.

범행 사흘 전인 5일 오전 6시17분에 올린 글에선 “작업장에 갔더니 작업복이 없다. 그만두라는 건가. 알았다”고 분노를 표실했다. 시즈오카현의 자동차 공장에서 시급 1300엔(월 20만엔)의 파견사원으로 일하던 그는 이날 일찍 출근했다가 자신의 작업복이 보이지 않자 “그만두라는 말이나”며 큰 소리로 항의한 뒤 퇴근했다. 그는 정리하고 대상자가 아니었으나 지난 3일 동료와 함께 상사에게 불려가 “이달 말까지 쉬지 말고 나와달라”는 얘기를 들었다. 7월부터는 나오지 말라는 뜻이라는 것이다. 이후 그의 불안감은 급속히 증폭됐다. “아, 주소부정의 무직이 되는 것은 점점 절망적이다.” (6일 오전 1시44분) 1시간 뒤에는 “하고 싶은 것 살인, 희망 와이드 쇼 독점”이라고 적었다⁴⁾.

“8일 대낮에 발생한 도쿄 아키하바라 ‘묻지마 살인’을 계기로 일본 파견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무하던 자동차공장 파견근무에서 해고돼 자포자기했다고 밝힌 용의자 가토 도모히로는 고교 졸업 뒤 5년간 파견노동을 중심으로 5곳의 일자리를 전전했다. 그는 자신의 의사와 달리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자신을 패배자라며 절망감을 표현했다⁵⁾.”

“지난 8일 파견노동자가 저지른 도쿄 아키하바라 무차별 살상사건에 놀란 일본 정부가 부랴부랴 일부 비정규직 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마스조에 요이치 후생노동상은 최근 워킹푸어(아무리 일해도 빈곤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계층)의 온상으로 지적돼온 날푼팔이 파견노동제도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돼야 한다”며 통역사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종 외에는 제도 자체를 금지할 뜻을 밝혔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를 위해 노동자파견법 개정작업을 검토하고 있다⁶⁾.”

현대미포조선 사건은 ‘현대미포조선 사건’, ‘용인기업 사건’ 등으로 불리면서 여러 차례의 토론회, 국회 국정감사, 노동법 학자, 실무계에서 제조업 사내하청 위장도급 사건의 선례로 관심을 받아 온 사건이다.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된 지 3년여 만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대법원도 상당한 고심과 연구 끝에 결론이 내려진 사건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현대미포조선이 원고들의 채용, 승진, 징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였고 작업과정에 있어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했으며,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하청업체인 용인기업은 독자적인 사업장비 등 사업경영상 독립적인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이를 모두 현대미포조선이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용인기업에 소속되어 있었던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는 현대미포조선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종래 소사장 제도⁷⁾나, 모자회사 관계⁸⁾ 등 경영적 지배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원청업체와 노동자 사이의 직접 근로관계를 인정하던 것에서 한발 나아가 그 범위를 더 넓혔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즉 원하청 사이에 경영적 지배 관계가 없더라도 파견근로관계를 넘어 직접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앞으로 이러한 판단이 더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는 단순한 인력파견에 불과한 사내하청을 비롯한 간접고용 형태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원청회사와의 직접고용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기를 기대한다.

최근 대법원은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 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의제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파견근로자보호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파견대상업주가 아니거나, 파견근로자보호법 제7조의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재판장 대법원장 이용훈, 주심 대법관 김지형)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판결, 재판관 전원 일치)



구 파견법 적용 문제이기는 하지만, 불법파견인 경우에 2년이 경과하면 원청업체가 직접고용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판결은 간접고용 노동의 문제에 대하여 법원도 그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도급계약으로 고용관계를 회피하는 것을 엄격하게 막는 것이다. 즉 현대미포조선 판결처럼 원청업체와 직접 근로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확대하거나, 최소한 파견근로관계로 인정하여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필요한데, 결국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사용자가 외형을 조금 바꾸었다고 쉽게 '도급계약'으로 인정하게 되면 이 사건 판결 같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간접고용에서 '도급계약' 인정은 아주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인정해야 하고 단순히 인력노무도급, 인력공급에 불과한 간접고용에 대하여는 직접근로관계 내지 불법파견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07. 7. 1.자로 파견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당시 고용의제 조항은 삭제되었다. 지금은 불법파견으로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법적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즉 노동자는 불법파견을 한 원청업체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정법 '직접고용의무 조항'의 효력에 대한 해석 문제가 남아 있다. 이 경우에 근로자파견법 제6조의 2는 그 문언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파견노동자에 대하여 고용의무를 부담하고, 파견노동자는 이를 사법상 권리(고용의무 이행청구 가능)로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또 도급계약이든, 아니면 파견근로관계이든 간접고용에 있어서 원청업체는 최소한 노동 3권에 있어서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경우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도급계약관계라고 하더라도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사업장 내 노조활동을 좌우하는 것은 원청업체임은 분명하다. 원청업체의 단체교섭의무, 하청 노동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및 쟁의활동보장, 원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 금지가 필요하다.

해석론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영역이므로 대법원의 전향적인 결론을 기대해 본다. 나아가 판결이 나면 다시 그에 맞추어 외형을 변경하여 법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사내하청도 내지 노무도급에 대한 제한 내지 원청업체의 사용자 책임을 명문화하는 것이 지금이라도 가능하고 또 시급하다.



7)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판결
8) 인사이트코리아 사건이 대표적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판결)

노동으로 생기는 경제적 이익도 가져가고 권한도 행사하는 원청업체가 사용자로서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 상식을 지키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에 대하여 자본과 정부는 수백, 수십억의 손해배상청구와 해고, 구속 등의 형사처벌로 답하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적극적 해석과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글 권두섭 회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단상



촛불집회는 정부와 정치권, 법원과 검찰, 기업계와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의 문제에 관해 취하는 기본적인 태도나 시각이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도 했지만, 우리가 흔히들 합의로 정한 룰이라고 하는 현행의 법률체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역시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후자에 관한 한 최근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만큼 인구에 널리 회자되고 논란이 된 법률도 아마 없을 것이다.

집시법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어 지금도 일부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얼마에 이를지 모를 수천 명의 시민들이 아직도 처벌대상리스트에 올라 있으며, 최근에는 유모차 아주머니들까지 처벌대상에 오른다 하여 세간의 논란이 들끓고 있을 정도이니, 아마 단일사건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법률로 의욕되는 일은 조만간 다시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한다. 사정이 이러한지라 우리가 대의제를 통해 합의로 정하였다는 현행 집시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이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논의에 부쳐야 할 필요는 점점 더 커지는데, 아래에서는 법률적 분석보다는 촛불집회 과정에서 불거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I. 집회에 대한 편견 깨기

집시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이야기들이 있다. 그것은 언론에서 만들어낸 집회에 대한 비상식적 상식(?)을 깨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는 실제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어느덧 사람들의 상식으로 자리매김한 오해들이 정말 많고, 그러한 오해들 중 많은 부분이 언론들의 편향된 보도들에서 비롯되고 있다. 집회에 대해서도 언론들이 만들어낸 몇몇 잘못된 상식들이 있는데 집시법에 대해서 살피기 전에 이것부터 살펴보아야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집시법을 평할 수 있기에 이러한 것들부터 살피도록 하겠다.

1. 우리나라 집회는 너무 폭력집회가 많은 것은 아닌지?

뉴스나 신문을 통해 보도되는 많은 시위장면들이 폭력 즉 물리적 충돌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덧 불법 집회와 폭력집회(이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집회'. 필자는 폭력집회라는 말을 폭력적으로 싫어하는 관계로 위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음)를 동일시하면서 우리나라에 무수한 '물리적 충돌이 있는 집회'가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워낙 우리나라 집시법이 불법집회를 양산하는 구조라서 불법집회는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물리적 충돌이 있는 집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

1) 법치주의의 연원과 본래적 의미도 '권력에 대한 법의 통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법치주의는 오히려 법을 내세운 권력의 국민에 대한 통제로 들린다. 어찌보면 거꾸로 선 법치주의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명박 정부에도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다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주장을 계속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어지간히 폐법에 익숙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곳도 아닌 경찰청이 발표한 수치에 의하더라도 2006년도에는 전체 집회 중에 0.69%만이 물리적 충돌이 있는 집회였고, FTA 반대집회나 평택미군기지이전 반대집회 등 굵직한 집회가 많았던 2007년도에도 전체 집회 중에 약 0.5%만이 '물리적 충돌이 있는 집회'였다. 유럽의 국가 중에서도 집회를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독일의 경우에도 1997년도 기준이기는 하지만 전체 집회 중에 2%가 넘는 집회가 물리적 충돌이 있는 집회였다. 그렇다면 단순한 비교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물리적 충돌이 있는 집회'가 독일 등 선진국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 집회의 문화로서는 거의 세계최고 선진국대열에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는 집회'가 난무한다는 것은 하나의 이미지일 뿐이다. 특히나 대부분 물리적 충돌이 경찰이 집회를 강제해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2. 집회가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지수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 성장률도 떨어지는 것 아닌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집회 등 폐법 문화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지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게 나왔으며, 이러한 폐법 문화만 근절해도 성장률이 1%는 더 높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사실 그럴까?

안타깝게도 우리들이 그렇게 오매불망 닦고 싶어하는 OECD선진국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즉, 선진국들은 각 국가를 대상으로 지표들을 조사할 때 집회를 법치의 영역(Law and Order)에 넣지 않고, 민주주의(Democracy)의 영역으로 분류한다. 선진국들이 생각하는 법치는 국가권력이 법에 의해 훌륭히 통제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¹⁾. 오히려 집회가 많이 그리고 잘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신장된 것으로 분류된다(법치에는 별 영향이 없음).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행사되는 국가권력이 바로 법치주의지수를 떨어뜨리는 주범인 것이다(어찌 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 점수는 상당히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분위기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만 아니면 1%는 더 성장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되나?).

II. 집시법 살피기

1. 우리나라에는 왜 불법집회가 많은지?(집시법에서 정한 대로 집회하면 되지 왜 불법집회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법, 특히 집시법을 다 지키면서 집회하는 것은 사실상 '하늘의 별따기'와 비슷하다. 정말 반듯한 엄마 친구의 아들이나 딸 같은 집회마저도 현행 집시법 하에서는 불법집회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법집회가 많은 것이다.

2. 법을 지키면 집회를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우리나라 집시법은 집회에 대해 주제, 시간, 장소, 방법, 상황 등을 가지고 중첩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합법적인 집회를 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간적 제한

헌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 집시법은 촛불집회 등 야간에 벌어지는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명백히 허가제(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가)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현행 집시법의 규정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장소적 제한

집회를 할 만한 거의 대부분의 장소는 집회가 금지되는 주요도로, 관공서 부근, 학교인근 등으로 설정되어 있어 적합한 장소를 찾기도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 버린다. 즉, 집시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서울 시내 7개의 주요도로를 연결하면 거의 대부분의 서울 시내 도로가 이에 해당하게 되며, 학교만 치더라도 서울 시내에만 무려 2300군데가 넘고, 최근 주상복합단지의 유행으로 도심에도 주거지가 있는 형편이 되어 버려 결국 현행 집시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서울 시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집회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방법적 제한

집시법에 따르면 먼저 집회를 하더라도 조용히 해야 한다. 아무리 불만이 많아 하소연하고 싶어도 버스가 지나가면서 내는 소음(약 80db)이상을 내면 불법집회가 될 수 있다. 진공청소기가 내는 소리가 87db이니 어느 시인이 말한 '소리 없는 아우성'을 쳐야만 한다.

주체적 제한

다음으로 예전에 단 한번이라도 집회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은 바가 있는 단체나 사람들은 집회를 개최하기 어렵다. 집회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경찰은 집회를 개최하려는 단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충돌의 전력을 해당 '사회안정질서에 위협을 가할 것'을 판단하는 주요한 잣대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한번 실수(?)로 용서 받지 못할 자가 되는 것이다.



상황적 제한

2006년도에 신고된 전체 집회 중에 약 97%가 유명집회였다. 유명집회라고 하는 것은 신고는 되어 있지만 정작 집회가 열리지 않은 경우로 대부분이 어떤 특정 장소에서 집회가 열리는 것을 막기 위해 누군가가 형식적으로만 선행집회를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유명집회가 전체 신고된 집회 중에 97%였다는 것은 그 숫자만큼 정당한 집회가 선행집회가 신고되어 있다는 이유로 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행 집시법은 한 장소에 두 개 이상의 집회가 신고된 경우 후행신고된 집회를 기계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이런 폐단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부산에서 아셈회의가 열리는 기간 동안 집회를 할 만한 거의 모든 장소에 이미 집회신고가 되어 있어서 결국 합법적으로는 집회를 할 수 없었던 일도 있었다.

전반적 제한

위와 같이 시간, 방법, 장소 등의 제한을 모두 통과했다고 안도할 수 없다. 우리나라 집시법은 신고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은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고제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에 어떠한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신고만을 하게 하는 것이기에 진정한 신고제라면 신고만 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집회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이 예정하고 있는 보호조치를 실행 안 하면 될 뿐이지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현행 집시법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집회를 금지하고 있고, 심지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고가 강제되어 있고, 더 나아가 경찰이 신고된 집회에 대해 다시 그 내용 등을 따져서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신고제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집시법 시행령은 집회 신고사항으로 22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경찰은 사소한 신고사항까지도 보완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면 금지통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말 집회 한번 하기 되게 어렵다.

3. 현행 집시법에는 집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인간의 모든 회합을 자유롭게 보장하고, 그것이 물리적인 충돌을 빚을 경우에만 사후적으로 관리, 통제되어야 한다는 이상적 원칙에 비추어 보면 차라리 집회에 대한 개념규정을 두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상적인 상태가 되지 못한다면 차라리 집회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여 그것에 해당하는 행위만 집시법에 의해 규율되게 하는 것이 차선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행 집시법의 경우 집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규정이 전혀 없다.

집회의 개념은 집시법의 기초개념이고,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개념규정이 없는 것이다. 비록 개념규정이 없더라도 법원이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면 법을 적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법원도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집회로 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한 공동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일시적 회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위 양자는 매우 다른데, 후자의 경우 집회라는 것의 폭이 매우 넓어지게 되어 길거리에서 어깨동무하고 교가 등을 제창하는 동창회도 집회에 해당될 수도 있게 된다. 도대체 집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줘야 법을 지키든 할 거 아닌가?

4. 집시법이 위와 같이 문제가 많더라도 잘 적용하면 되는 것은 아닌지요?

집시법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바로 집시법에 대한 적용, 그리고 그 전제가 되는 해석 및 판단을 경찰이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행정권력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국가권력에 좌우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경찰이 국가권력에 반대하는 집회에 대하여 중립적인 자세와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참고로 미국연방대법원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사전제한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그것이 행정기관의 행정재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절차보장-대립당사자적 청문의 기회보장-을 통한 준수법적 판단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 점에서 시사점을 부여한다[Freedman v. Maryland, 380 U.S. 51(1965)]. 이 때 대립당사자적 구조에는 신속한 청문기회의 보장, 위법의 입증책임의 전환(행정청 즉 이 사건에서는 위원회가 입증책임을 짐), 가능한 한 사법적 절차에 의거할 것 등이 포함된다.

5. 노무현 정권 때 오히려 집시법이 강화된 것을 봐서는 현행 집시법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한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지난 6년간 명예회복을 결정한 6053건 중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건수가 2299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가 각 418건과 328건, 업무방해가 34건, 도로교통법 위반이 29건 등이라 한다. 대체로 폭처법이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은 집시법 위반과 연계됨을 감안한다면, 지난 군사정권 하에서 권위주의적 억압에 항거하다 처벌받은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집시법과 관련된 셈이다.

이를 반대로 보면 정권차원에서는 집시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요긴한 수단이 되는 셈인가 보다. 아마도 노무현 정권 역시 집시법이 가지고 있는 정권유지수단으로서의 매력을 쉽게 저버리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집시법이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정권이었던 노무현 정권 하에서 강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참고로 우리가 이명박 정권의 집회관리방식을 욕하면서 예로 드는 명박산성, 시위자 체포경찰관 인센티브제공, 원천봉쇄, 상경저지 등은 모두 노무현정권 때부터 있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가 문제 있다고 보고 있는 어청수 경찰청장도 노무현정권 때 승승장구하던 사람이다.

6.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집회나 시위피해자들을 위한 집단소송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집회는 건전한 여론형성기능,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시민사회 형성의 기능,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발현하는 인격 실현기능,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실현 기능 등을 가지고 있다. 집회의 자유가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하기에 헌법은 집회의 자유에 대하여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 즉 생명권 다음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집회의 자유가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에 집회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편에 대해 국가나 제3자는 수인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집회에 대한 집단소송제도는 집회에 의한 재산권침해 또는 교통불편을 이유로 집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하는 제도로 결국 우월한 집회의 자유를 그 보다 열위의 기본권인 재산권 더 나아가 기본권도 아닌 교통편의 보다 아래에 위치지우는 위헌적 제도라 할 수 있다. 특히 집회는 그 개념 자체에 다중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불편주기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 자체에서 발생하는 타인과의 기본권충돌을 전면내세우면서 그에 대한 제한 수단만을 강구한다는 것은 결국 집회를 기본권이 아닌 단순한 행정규제의 대상이 되는 일반 행위 혹은 더 나아가 범죄행위로만 보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물론 집회로 인해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사람들로서는 기본권 타령만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집회에 대한 제한이 더욱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집회가 토마스 에머슨이 이야기한 것처럼 “없는 자”들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같은 표현의 자유 중 언론의 자유의 경우 남들이 읽어줄 정도로 글을 쓸 줄 아는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도 일반인들의 주장을 담는 공기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매스 미디어와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만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사회적 소수자는 어렵고 힘들지만 몸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 소수자는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다.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는 만큼 언제 누가 사회적 소수자가 될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가 아닌 자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언론의 무관심 등으로 몸으로 항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집회의 자유라는 것은 사회가 변하더라도 소수자가 될 염려가 없거나 몸으로 항의할 일이 없는 정말 소수의 자 이외의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보존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집회피해자들을 위한 집단소송제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각살우의 우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III. 결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법치주의를 외쳐왔다. 그런데 법치주의는 위에서 이미 살핀 바와 같이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등장한 원리로 국가권력은 반드시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보면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법치는 자신이 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고, 법에 의한 통제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이란 이름으로 국민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이라도 진정한 법치주의를 세우려면 헌법질서에 맞게 집회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촛불집회참가자들에게 대해 최근 벌이고 있는 과잉한 수사를 중단하고 집시법을 개악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중지하여야 할 것이다. 

글 박주민 회원

감시의 시대와 개인정보보호법



내 몸에 도청장치

왕년에 한 시민이 생방송 중인 텔레비전 뉴스 스튜디오에 뛰어 들어 '내 귀에 도청장치가 있다'고 전 국민을 향해 소리를 치는 희대의 방송사고를 낸 적이 있었다.

한 음악 밴드는 그의 희한한 주장을 따서 밴드 이름으로 쓰기도 했다.

그런데 요즘 들어 "혹시 그 사람이 미래를 예견하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 방송국에 뛰어들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엉뚱한 상상을 하기도 한다.

과연 그의 말대로 우리는 지금 '내 몸'은 물론 '도처'에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 개인정보 보호는 어떤 의미일까?

추억 속에 남는 삶에서 추적, 저장, 가공, 분석 가능해진 우리의 삶

예나 지금이나 첨단 감시 시스템은 흥미진진한 영화의 소재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 대부분이 공상이었던 것이 지금은 대부분이 현실이다. 오히려 지금은 실제로 작동하는 감시 시스템이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경우가 많다. '감시'라는 말이 거북하다면 '정보의 수집'이나 '집적'이라는 말을 써도 본질은 같다.

먼저 인터넷을 보자. 우리나라는 포털이든, 쇼핑몰이든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대고 가입해야 한다. 로그인하면 포털에서든 쇼핑몰에서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을 수집하고, 집적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서비스에 접속했는지, 어떤 카페에 가입하고, 누가 친구인지, 어떤 이메일을 보내는지,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면 어떤 회사나 어떤 주식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부동산 정보를 찾아보았는지, 휴대폰으로는 언제 누구에게 어떤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는지, 어떤 쪽지를 누구에게 남겼는지,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대답을 하고, 어떤 검색어를 넣고 어떤 사이트를 보았는지, 어떤 기사를 보고,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웹 브라우저를 열고 과거에 방문한 페이지 정보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기겁을 할 것이다.



쇼핑몰에서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떤 물건을 검색해 보고, 어떤 평가를 했는지도 수집될 수 있다. 나는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그들'은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심지어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아이피 주소를 통해서 접속자의 시, 군, 구까지 알 수 있다. 아이피 주소에 접속자의 주소나, 이런저런 정보를 매칭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으면 아예 익명성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다. 위성방송이나 케이블방송을 본다면 셋톱박스를 통해서 가입자의 프로그램 시청에 관한 정보가 가입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와 함께 수집, 축적, 분석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요일제 참여 차량에 부착되는 전자태그는 6~8m 밖에서도 인식된다. 서울시내 주요 도로에 인식기를 설치하면 전자태그 부착차량의 이동경로와 위치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과거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기록을 몇 년간 축적해 놓을 수도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무선 정산장치인 하이패스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교통카드, 신용카드, 언제나 한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폰도 추적장치이다. 어디로 이동해서 무엇을 했는지가 고스란히 축적되는 것이다. CCTV의 성능도 무시무시하다. 전철역에 설치된 CCTV로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가 낱알이 기록된다.

이제 우리의 삶은 추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궤적이 추적, 저장되어, 가공, 분석 가능한 것이 되었다.

선의와 선처를 기대할 수 없는 기업과 정부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정보를 가진 자, 기술을 가진 자의 선의나, 선처를 기대해야만 하는 것인가?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다지 선의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고, 선처를 할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남용’과 ‘일탈’의 동기가 있다.

기업에게는 그런 정보는 ‘돈’이 된다. 점잖은 말로 표현하면 엄청난 ‘경제적 효과’ 내지는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인터넷 광고시장에는 ‘지역 타겟 광고’가 붐을 이루고 있다. 아이피 정보를 수집하고, 접속자 별로 아이피 정보와 매칭하면 거대한 광고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웹브라우저든, 포털이든 쇼핑몰이든 접속자의 활동 이력을 수집, 분류하여 활용하면 엄청난 돈이 될 수 있다. 이들에게는 익명보다는 실명이 유리하다.

그런데 이들에게 아이피 정보를 수집하지 말 것과, 실명정보를 수집하지 말 것, 접속자의 활동 이력을 수집, 저장하지 말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의 모든 자동차에 무선인식(RFID) 장치가 달리게 된다면, 그래서 차량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면 엄청난 ‘돈’이 창출될 수 있는데. 위성방송사업자나 케이블사업자가 가입자의 내밀한 방송시청 내역을 수집할 경우 부가가치가 창출되는데,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모으면 쓸모가 많을텐데. 기업이 이를 마다하겠는가.

또 한 가지, 시장의 장악력이 큰 기업일수록 고객에 대한 고도의 정보수집과 분석이 가능하다. 결국 그 능력은 기업의 시장장악력을 확대시킨다. 결국 정보수집과 분석을 통해서 독과점이 강화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경우, 웹브라우저 시장에서의 장악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다른 기업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진입의 장벽을 만들 수 있다. 미디어 플레이어를 공급하면서 플레이 되는 파일의 내역을 수집할 경우 콘텐츠 시장에서 진입장벽을 만들 수 있다. 방송사업자나 포털도 마찬가지이다. 사정이 이러하네 기업에게 고객에 대한 정보수집과 축적의 욕구를 스스로 알아서 억누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국가나 정부는 어떤가? 적절한 통제자나 조정자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국가나 정부는 개인에 대한 정보수집을 막으려는 생각이 별로 없다. 이들은 손쉬운 통제를 위해, 시민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은 ‘세계시장을 선점’하도록 하겠다는 명목으로, 국내에서 ‘시장을 성숙’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 점은 현 정부만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반박하지 몰라서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한다.

첫째는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되어, 현 정부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소위 ‘인터넷 실명제’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을 거대한 추적 장치로 변모시키는 주범이다. 악성 댓글을 방지하고, 인터넷의 명예훼손을 막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효과가 미미함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반면에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의 여론을 통제하는 데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인터넷의 개인정보 침해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도 두말할 필요가 없다. 실명제가 도입되지 않은 외국의 경우, 실명제가 없어서 인터넷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으므로 실명제를 도입해야겠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오로지 인터넷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전체주의적인 국가들만이 인터넷 실명제나 그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뿐이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고집하는 이유는 왜일까? 이들은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제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집권 세력은 여론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것이 본능인지도 모르겠다. 인터넷이 실명 기반이 될 경우, 표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된다.



기업이 글을 쓴 사람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하겠다고 하거나, 검찰, 경찰이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하겠다고 할 경우, 언론사라면 엄포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겠지만, 네티즌들은 그런 엄포만으로도 급격하게 표현이 위축되게 마련이다. 정부는 실명의 인터넷을 통해서 네티즌의 발언을 통제하고, 가끔씩 엄포를 나서 위축효과를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 효과는 이번 촛불 정국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둘째는 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전자정부 프로젝트로 통합민원처리를 모토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망을 통합하는 작업이나, 신분증과 관련된 사업들(무선인식기술과 스마트 카드를 신분증으로 도입하는 전자여권이나, 전자주민등록증 등),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량에의 무선인식(RFID) 장치의 부착, 감청 가능한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추진 등 숨 가쁘게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개인정보의 보호는 언제나 뒷전이였다. 이들 서비스들은 편리함과 효율성을 내세우고 있는데, 감시와 추적, 개인정보의 유출가능성에는 눈을 감고 있다.

춤스키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정치 엘리트들이 미디어를 장악하고, 교묘하게 미디어를 조작하고, 시민들을 4년에 한번 선거 때 표찍는 바보로 만들고, 의원과 정치인들끼리 정치를 독점하는 시스템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소수 엘리트 정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미디어 조작과 여론의 통제이다. 현 정부나 노무현 정부도 춤스키가 말하는 소수 엘리트 정치를 위해 미디어를 장악하고, 여론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소수의 엘리트 정치세력들은 인터넷에서도 여론 통제를 하고 싶어 하고, 자동차 주행이력, 신용카드 사용이력, 교통수단 이용이력, 길거리의 CCTV, 출입국 내역, 휴대폰 이용내역 등 감시와 통제 시스템이 점점 심화되는 것을 본능적으로 반기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기습과 개인정보보호법의 표류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돌아와 보자. 개인정보보호법은 한 개인의 삶이 추적, 수집, 가공, 분석되는 시대에 그런 행위들을 통제하여 기업과 정부의 오용과 남용의 가능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분석, 가공 등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나열하고 명시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효과적인 통제시스템을 갖추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17대 국회가 열리기 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노동당 등은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야 하며, 그 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해서 감독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만들고, 개인정보영향평가제, 범용식별자의 사용제한, 집단소송제도, 공공기관의 정보통합의 제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17대 국회가 열린 후 당시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전의원이 발의자가 되어 개인정보보호법안을 제출하였다. 17대 국회에서는 이 법안 외에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서 개인정보보호법안이 발의되어 개인정보보호법안의 발의자는 약 180여명에 이르렀다. 이 법안들은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를 독립적인 기구로 두고, 그 기능은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감독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자는 데는 의견이 일치되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리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결국은 17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그런데 18대 국회가 개원하고, 개인정보보호법안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17대 국회에서 통합개인정보보호법에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던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만들어 법 제정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의하는 안전을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격하시켜서 두는 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감독기능, 조사기능, 정책기능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두었다. 정부부처 중에서 개인정보처리를 가장 많이 하고, 전자정부시스템의 주무부서로서 자신이 주된 감시의 대상이 되는데, 자신이 스스로를 감독하겠다고 나서는 모양이다. 시대착오적인 안이다.

이미 외국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를 두고 있다. 1970년대부터 개인정보보호기구를 두어 왔던 유럽의 국가들을 비롯해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캐나다 등 대다수의 국가들이 100명에서 300명 정도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를 두고 있다. 이들 국가들에서 개인정보보호기구는 새로운 기술발전예 따라 나타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지침을 만들고, 의견을 내고, 조사를 하고, 시정요구를 하고, 연구를 한다. 이들 대다수의 국가에서 개인정보보호기구는 현대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최소한의 감독 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개인정보보호기구가 생긴다고 해서, 국가와 기업의 개인정보에 대한 끝없는 욕구와 갈망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보호기구를 구성하는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기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 있는 시민의 감시와 참여이다. 그럼에도 개인정보보호기구는 최소한의 출발점으로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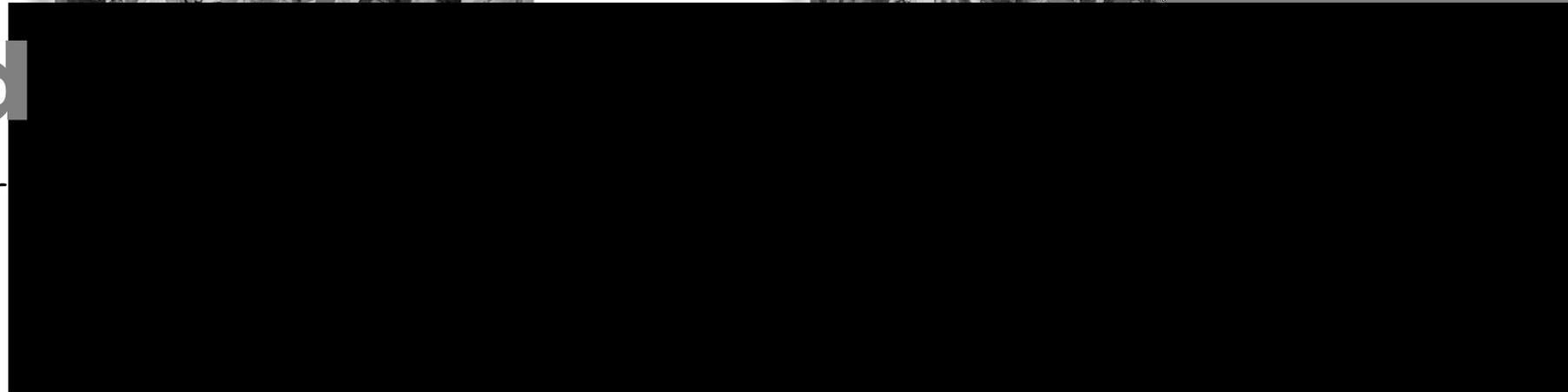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루, 독과점의 저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신문을 떠들썩하게 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인터넷 실명제의 저지와 인터넷에서의 익명성의 복구, 자동차의 전자태그에서의 해방 또는 최소한 개인식별정보의 삭제, 이동전화 서비스를 감청 가능한 것으로 하게 만드는 법 개정의 반대, 무선식별형 전자여권의 도입 반대, 국제적인 지문정보의 수집 반대, 위성방송과 케이블방송의 수신자로부터 모은 정보의 활용금지, 인터넷 웹브라우저에서의 개인정보 보호기능 확대 등, 오늘도 우리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활동을 추적하고, 감시하고, 표현을 위축시키고, 선발업체의 독과점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정보수집과 활용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것들을 저지하는 것은 과학기술을 거부하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무책임한 행위가 아니라, 인권을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위이다. 이런 현안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도입하는 것으로 일거에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진부한 이야기지만 주체의 각성과 각성된 주체들의 노력으로만 감시 세계의 추세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글 이은우 회원

power - blind

법원을 희망한다



'blind' 라는 영어단어는 시각상의 장애를 나타내지만, 다른 단어와 결합할 때는 무엇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이를 무시한다는 뜻도 가진다.

그 대표적인 예가 color-blind나 gender-blind처럼 인종이나 성(性) 등을 차별의 요소로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는 뜻을 나타낼 때이다.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가 일정하게 자리를 잡은 시점에서 color-blind나 gender-blind와 같은 단어들이 도리어 기계적, 형식적 평등논리를 강조하는 보수적 기제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차별의 요소에 눈 감으라는, 처음 이 단어에 부여된 사회적 의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KBS 정연주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처분의 부당함을 다루기 위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취소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지난 8월 20일 서울행정법원은 "대통령의 해임처분이 위법하다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였고, 또 9월 5일 서울고등법원은 이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한 사건에서 똑 같은 이유로 똑 같은 결정을 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의 기각결정이 있기 며칠 전 정 사장의 집행정지신청 소식을 듣고서 같이 있던 변호사들에게 "나중에 취소소송 판결이 어찌 될지는 몰라도 집행정지는 당연히 되는 것 아냐?"라고 말했던 적 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한 선배 변호사는 "우리가 언제부터 법원을 그렇게 신뢰해 왔나?"며 핀잔 아닌 핀잔을 주었다. 그 당시만 해도 필자로서는 그 선배 변호사의 반응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모름지기 대통령이나 정부기관의 처분은 옳고 그름이 판가름나기 전이라도 일단 효력을 발생하지만,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여 집행정지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즉,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간이 지나버리면 나중에 당사자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이겨 봤자 소용없는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실 KBS 정 사장 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당연한 것처럼 필자가 생각했던 데는 이러한 법 규정상뿐 아니라 법원이 이제껏 집행정지를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해 왔던 법적용 기준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필자가 아는 모 업체가 어떤 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한 것이 뒤늦게 발각되어 등록취소처분을 받았을 때, 허위서류로 사업등

록을 받은 것이 확연함에도 취소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자 며칠 가지 않아 집행정지결정이 났었다. KBS 정 사장 사건과 비슷한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다. 법률의 규제를 받는 어떤 조합의 조합장이 비위문제 때문에 장관에게서 해임처분을 받자 조합장의 신분유지를 위하여 해임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을 때에도 얼마 있지 않아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바 있다. 조합장의 비위사실에 대한 증거가 꽤나 많았을 뿐 아니라 나중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정도였음에도 말이다.

비록 그리 많지는 않으나 필자가 처리했던 집행정지사건 중 이를 기각한 사례를 필자는 아직 기억하지 못한다.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으로 다투면서 판결이 있을 때까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다투는 이유가 너무도 터무니없는 경우거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집행정지를 인정할 때 공공복리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가 아닌 한 틀림없이 집행정지결정이 났었고, 이는 집행정지제도의 취지상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 정 사장의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이 기각할 것이라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것이고, 막상 법원의 기각결정을 듣고서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정말 필자만의 무지 때문인가?

신문에 난 기각결정의 사유를 좀 더 살펴보니, 담당재판부는 “해임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다. 정말 그런가? 공영방송의 사장이 사장직에서 강제로 쫓겨났는데, 옳고 그름이 판결로 판가름 날 때까지 사장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아니면 어떤 것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가? 일개 조합장의 해임처분에 대하여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면 일국의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처분에 대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정말 설득력이 있는가?

재판부는 또 “대통령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기각사유를 덧붙였다 한다. 이것은 법률전문가가 보면 언어도단이자, 정치적인 수사(rhetoric)다. 집행정지결정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내 주던 것인가?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섰다면 취소판결 전이라도 집행정지결정을 내주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고, 위법한지 위법하지 않은지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장차 취소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따져볼 때까지 잠정적으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는 것이 집행정지제도의 취지가 아니던가? 재판부의 설명대로라면 해임처분

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있을 때에만 집행정지를 해 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집행정지제도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행위이자 이제껏 법원이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취해온 일반적인 태도와 관례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일탈행위임을 스스로 밝히는 셈이다.

이 즈음이면 법원이 왜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헌법 제103조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 사장 사건의 재판부는 정말 한 점 양심에 부끄럼이 없을 정도로 독립하여 심판한 것일까? 이 사건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정치권력과는 무관한 일개 조합의 조합장이었다면 이 같은 결정을 하였을까? 당사자가 부간지 빈간지, 세도가인지 힘없는 민초인지 가려보지 않으려고 형값으로 눈을 가린 채 오로지 정의와 형평의 저울추에만 의지한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Justitia)처럼, 오늘의 법관들은 정말, 정말 이 나라 최고의 권력자와 그 배후의 세력들이 한 당사자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권력과 사리에 좌우되지 않은 blind였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했으니 그 양심을 취소를 어떻게 가능할까마는 color-blind나 gender-blind도 모자라 이제는 박물관에서나 보았으면 했던 권력의 시녀라는 옛 용어를 다시 끄집어내며 power-blind를 외쳐야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자연 “우리가 언제부터 법원을 그렇게 신뢰해 왔냐?”라고 했던 그 선배 변호사의 예지가 아직도 빛나는 게 그리 썩 즐거울 리가 없다. ✎

글 황희석 회원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변호사가 본 바람직한 법관상



이 글은 민경한 회원이 2008년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 법원의 「우리법 연구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에서 “바람직한 법관상”을 주제로 발표한 발제문입니다.

1 글머리에

‘우리법 연구회’가 벌써 성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를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바람직한 법관상을 주제로 한 학술토론회는 아주 신선하고 시의적절한 것 같다. 주제가 민감하고 어려워서인지 지금까지 토론회 한 번 개최된 적이 없고 자료가 매우 부족하여¹⁾ 발제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법관론 일반이나 법관의 직무상 권한과 직무외의 행동에 대해서는 다른 교수님과 판사님들이 발제를 하므로 저는 19년간의 변호사 생활의 경험²⁾과 주위 몇 분의 법조인들의 소중한 경험담을 토대로 주로 법정과 법정 외에서 변호사로서 보고 느낀 법관의 실상과 문제점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2 법관과 변호사의 관계

가. 재판제도와 사법제도 유지의 3개의 축

소송의 3구성 요소는 민사소송은 소송물, 당사자(대리인 변호사), 법관이고 형사소송은 공소사실, 피고인(변호인 변호사), 법관이므로 법관, 검사, 변호사는 재판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3개의 축이다.

나. 법조 3륜에 대한 두 가지 시각

법조 3륜이란 법조라는 마차가 세 개의 수레바퀴로 작동되어 굴러간다는 뜻으로서, 법원, 검찰(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즉 판사, 검사, 변호사가 사법작용의 세 축으로 각각 별도의 역할이 있고 이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원활한 사법작용이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3축 중 어느 한 축이 자기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

할 때 재판이나 사법제도에 큰 장애가 생긴다.

법원, 검찰, 변호사는 분쟁해결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과거에 법조인 수가 적고 의정부, 대전 법조비리 사건 이전까지는 법조인끼리 서로 잘 어울리고 편의를 봐주는 부정적인 면도 있었으나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으며 과거의 그러한 현상만으로 법조 3륜을 부정적인 시각³⁾으로 볼 것은 아니다.

법조 3륜은 각기 역할이 다른 뿐이지 위상차(몸통, 가지론)를 논하거나, 없어야 할 용어라며 법조 3륜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안 된다. 업무의 성격상 판사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법원 우월주의나 특권의식은 배제해야 하며, 이런 시각차에서 재판장의 권위적인 태도나 말투, 행동이 나오게 되며 법관의 군림하려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법조 3륜은 맡은 바 역할이 다를 뿐이지 누가 중요하고 누가 우위라고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법원, 검찰, 변호사는 때에 따라서는 대립과 견제의 역할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할 협력자, 동반자의 관계이다.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두 나라가 경기를 하는데 이 경기의 심판이 두 나라 선수들보다 우위에 있는지, 선수와 심판 중 누가 더 중요한 지를 따진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고 무의한 것이다.

1) 사법연수원 1999년 법관론, 2006년 법조윤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3년,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박종연 변호사, 1999년 법률신문, 바람직한 재판장상, 문양 변호사, 1989년 대구 지방변호사회지,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법관상, 양근모, 1967년 법정, 우리가 기대하는 법관상
2) 10년간 변협 감찰위원 활동(인천 3년, 광주 5년, 서울 2년)과 40여편의 사법관련 칼럼을 씀
3) 대법원장은 2006. 9. 경 '법원을 검찰이나 변호사와 동일 선상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법원이 사법의 중추 기관이다' 고 발언하였다. 서울고법의 모 부장판사는 2006. 9. 경 '판사는 변호사와 같은 배를 탄 동지가 아니다. 동료의식 갖지 마라. 법조 3륜은 진즉 사라져야 할 말이다' 고 발언하였다.

3 법정에서 본 바람직한 법관상

가. 법관의 신중한 언행은 절대적으로 필요함

당사자들은 법정에서 재판장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사소한 언행에도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각자 나름대로 억측을 한다. 가족이 아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검사를 할 때 의사나 간호사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것과 비슷하다. 법정은 국민이 법관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장소이고 법정에서의 법관의 모습이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인상과 신뢰도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서 법관의 신중하지 못한 언행은 사법 불신의 원인이 된다.

(1) 판결의 예단이나 속단은 금물

사건 내용 전체에 대한 변론이 끝날 때까지 어떠한 편견도 갖지 말아야 한다. 특히 처분문서가 있거나 비슷한 판례가 있는 경우 예단을 갖기 쉽고 특별한 사정의 주장, 입증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하는데 그렇다면 법률 행위의 무효, 취소, 착오 제도가 왜 있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이 왜 있겠는가. 또한 재판부가 당사자의 논리정연하지 못한 주장도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하고 진지한 자세를 보일 때 당사자는 재판부를 신뢰하게 되므로 재판결과에 승복하는 비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항소심 첫 기일에 재판장이 항소인에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고 항소취하 하시오’라고 항소취하를 권유하거나, ‘1심 판결이 별 무리가 없는데 항소해 가지고 달라지겠어요’, ‘이렇게 항소해 가지고 되겠어요’ 라는 등의 말에 대해 당사자는 재판부의 불성실, 담당 대리인의 무능, 상대방 변호사와 재판부의 관계 등에 대하여 오해나 불신을 갖게 되고 대리인도 맥이 풀린다. 항소심에서는 가능한 한 1심 판결에 대한 예단을 갖지 말고 항소인의 주장, 입증에 귀담아 들어주기를 바란다.

(2) 평상심을 유지하고 감정을 드러내거나 호의적, 비우호적 표현은 삼가야 함

재판장은 가능한 법정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평상심을 유지해야 하며, 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어느 한 쪽 당사자에게 호의적, 비우호적 표현은 삼가야 한다.

법률적으로 이론구성이 안 되거나 입증이 부족한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가 왜 이런 사건을 수임합니까?’, 준비서면의 분량이 많다고 ‘준비서면 분량에 따라 수임료를 받아요’라고 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두 차례 조정에 불응하자 재판장이 해당 대리인에게 ‘상급심 법원에 아주 든든한 뺨이 있나 보죠’라고 말하거나, 증인에 대한 변호인의 주신문, 검찰의 반대신문, 재판장의 보충신문 후에 변호인이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증인에게 한, 두 문항 신문했다는 이유로 ‘○○○ 변호사님이 재판 진행하시죠’라는 발언,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불펜 던지고 욕하고, 조정시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며, 준비서면이나 반대신문이 길다고 짜증내고, 변호사에게 ‘○○○ 씨’라고 호칭하고, 좋지 못한 감정을 표시하고 비속어나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품위와 정중함을 잃지 말고 절차지연이 미치는 불이익 등 그 효과를 정확히 설명하여 주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소의 취하를 검토해 보도록 권유하거나 요약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면 재판부의 권위도 손상되지 아니하고 소송의 촉진에도 기여할 것이다.

나. 헌법,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 (헌법 제 103조, 법관 윤리강령 제1조)

(1) 과거- 정치권력이나 법원내부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으로부터의 독립

(2) 현재- 전관예우, 지인(학연, 연수원 동기, 혈연, 지연), 당사자와 대리인 및 변호인에 대한 호불호, 판사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가치관, 여론으로부터의 독립

전관예우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건브로커 채용과 사건알선료 지급, 고액 선임료 등 사법불신과 법조비리의 출발점이다. 많은 판사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전관예우가 존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인정해야 하며, 전관들의 판사실 출입이나 전화 변론을 거절할 수는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법원의 내부지침 존재). 판사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가치관으로부터의 독립도 필요하다. 음주운전, 절도,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등 특정사건에 대하여 편견을 갖는 판결 즉 무의식적인 불공정⁴⁾을 없애기 위해서는 재판은 가능한 한 법관 개인의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한 상태에서 객관적인 법규범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당사자와 대리인이 무례하거나 밋다고 재판진행이나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간다. 많은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재판장의 불공정하고 독단적인 재판진행에 대하여 당사자가 불이익을 입을 것이 두려워 이의제기를 못한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다. 조정의 남용과 통제

최근 변호사들의 최대 불만은 지나친 화해권고로서 조정의 강요, 불응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 내용도 자세히 파악하지 않고 적당히 중간선에서 조정 권유, 판결 쓰기 귀찮아서 조정에 친한 사건도 아닌데 조정에 회부하고 여러 차례 조정을 권유한 것 같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 조정의 남용과 통제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지적되어 왔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민사조정 제도의 남용과 문제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줄고⁵⁾를 참고하기 바란다.

처분문서가 있거나 비슷한 판례가 있는 경우 예단을 갖기 쉽고 특별한 사정의 주장, 입증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하는데 그렇다면 법률 행위의 무효, 취소, 착오 제도가 왜 있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이 왜 있겠는가.

4) 위 서울대학교 교재(주1) 148쪽

5) 민경한, 법률신문 2005. 12. 19.자 법조광장, 민사 조정제도의 남용과 문제점

법관은 자신의 심증형성에는 객관적인 자료 이외에 자신의 선입견도 기여하였음을 항상 염두 해두고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면 언제든지 이를 받아들여 자신의 심증을 다시 형성하겠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라. 결과적 정의 못지않게 절차적 정의도 중요함

공정하고 올바른 판결을 내린 것도 중요하지만 그 판결을 내리기까지의 절차나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 결론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결과는 물론이고 절차나 과정을 승복하지 못하면 좋은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

(1) 재판장의 겸손(독단은 금물)

법조인 특히 법관들은 대체로 우수한 두뇌의 소유자이지만 그만큼 고집이 세고 독단적인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법률문제에 관하여는 과연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할 수 있는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설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이 반드시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관에게는 겸손이 법률적 지식만큼 요구되는 덕목이라⁶⁾ 독단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법관은 자신의 심증형성에는 객관적인 자료 이외에 자신의 선입견도 기여하였음을 항상 염두 해두고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면 언제든지 이를 받아들여 자신의 심증을 다시 형성하겠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마음속으로 주문을 먼저 정해 놓고 증거를 거의 채택하지 않고 빠른 결심을 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당사자에 대한 설득 없이 ‘억울하면 항소하시오’라는 독단적인 재판진행은 자제하였으면 좋겠다.

요증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증거의 경우 무조건 채택을 안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나 양 당사자의 신빙성의 판단자료에 도움이 되고, 당사자의 억울함을 들어 준다는 측면에서 증거채택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당사자가 증거조사라도 해보고 패소한 경우 판결에 승복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이 일본 후생노동성을 상대로 한 보상금청구 거부처분 취소의 행정 소송에서 일본 한센병 보상 특별법상의 ‘국립 한센병 요양소 등’에 소록도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법률 판단 문제이며 피해 실태는 요증사실이 아니었는데도 일본 동경 재판소 담당 재판부가 첫 기일 때 두 명의 한센병 피해자들의 피해를 통역까지 하면서 오랫동안 생생하게 들어 준 것을 보고 감명 받았다.

(2) 예의나 친절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Francis McCarty 판사의 ‘훌륭한 판사가 되기 위한 격언’ 20여 가지 중 ㉓ 판사석 잘 보이는 곳에 다음의 좌우명을 부쳐라 ‘노여움은 참되, 예의와 배려와 이해를 아끼지 마라’ ㉔ 변호사, 증인, 배심원에게 주의시킬 때는 친절하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한 어조로 하라. 야단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㉕ 판사는 국민의 주인이 아니라 공복임을 명심하라. ㉖ 법정에서 있는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느끼도록 하라 등은 예의를 갖추고 친절한 재판 진행을 위해 되새겨 볼만한 경구인 것 같다.

판사 출신의 어느 변호사는⁷⁾ “...그 재판장은 평소에도 당사자가 누구든 항시 정중하

고 차별 없이 대하여, 사건개요를 미리 파악하여 요령 있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면서, 표현력 없는 당사자가 긴장하여 두서없이 하는 말도 정확히 알아듣고 친절하고 거리감 없는 태도로 개운한 답변과 설명을 해주고, 피곤해도 감정을 드러내어 짜증을 내는 일이 없고, 당사자를 단지 경계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사무친 근심과 고통을 함께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고...”라며 바람직한 재판장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경청할 만한 이야기다.

어느 원로 변호사는 법관이 재판운영에 있어서 기피하여야 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⁸⁾. 법관의 독자적인 도덕관념을 기준으로 당사자의 주장 내지 변명을 비방하는 일, 화를 내거나 고함을 치는 일, 당사자, 피고인 때로는 변호사에게까지 약간의 실수를 꼬집어 여러 사람 앞에서 핀잔을 주는 일, 결론을 예단하거나 속단하여 표시하는 일, 법률상 기피사유는 아니나 그에 가까운 사정이 있는데도 자기의 공정성을 과시하기 위하여 그대로 재판에 관여하는 일 등이다.

법원이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온화하고 품위 있는 언어를 사용하며 친절하게 재판을 진행하면 재판에 졌어도 승복하는 당사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전투경찰 설치법 위반 피고인이 법률적 다툼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재판장의 친절에 감동하여 항소를 포기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⁹⁾.

가. 정의와 형평은 법의 양대 이념이다

형평에 어긋난 재판이나 판결이 사법 불신의 제1의 원인이 되므로 무엇보다 형평성 있는 판결을 하는 것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 재벌관련 범죄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이 과연 동종, 유사한 범죄의 다른 피고인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을 유지하였는가, 또한 구속에 대한 기준(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우려, 실행 가능성이 높은 중대범죄 기준)을 모든 피의자에게 동등하게 적용하는가는 깊이 생각해 볼 대목이다.

형평성 위반 사례- 2008년 8월말 지원장 출신 모 변호사 사건(6억원의 특경가법상의 사기와 2억원의 횡령, 4번의 구인장 발부, 연락 두절됨-영장 기각), 한화 김승연 사건에서 구속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문시 치료의사(정신과 전문의) 및 구치소 보건 의료과장에 대한 참고인 신문,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선임한 상고사건의 심리 속행 판결을 등과 관련하여 형평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6) 위 서울대학교 교재(주 1) 149쪽

7) 위 박종연 칼럼 (주1) 참조

8) 위 문양의 칼럼 (주1)

9)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29조(2000. 7. 1. 개정), 제30조 제1항 5호, 35조에 의하면 2년 이상 형의 선고의 경우 당면 퇴직됨 -1년 6월 이상 2년

4 개선해야 할 판사의 의식 -국민이 바라는 법관의 모습

나. 재판이나 판결에 대한 비판을 금기시 하는 경향

판례 평석과 재판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은 구별해야 한다. 판례 평석이나 판결에 대한 학술적이거나 전문적인 비판은 사실관계나 증거관계를 충실하게 파악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재판이나 판결에 대하여 비판할 경우 판사들은 사실관계도 잘 모르면서 비판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특히 법조인이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더 강한 비난이 있다. 그러나 재판 및 판결에 대한 일반인이나 법조인의 일반적인 비판 특히 국민적 관심사인 사안(새만금 사건, 신정아 사건의 영장, 이견회 회장 판결 선고, 소비자 불매운동의 네티즌 영장발부 등)에 대한 재판이나 판결에 관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점에 대한 의견 표명은 허용하고 경청해야 한다.

다. 재판절차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에 대한 개선 노력이 부족하고 판례나 선례에 집착하거나 거기에 맞추어 가려는 경향이 강함

(1) 조정률이나 영장기각률을 산정하여 법원별, 판사별로 비교하는 것은 재판권의 침해로서 이는 반드시 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속 법원이나 다른 법원의 경향에 지속되고 통계를 의식하다 보면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데 장애가 생기게 되고 헌법 정신에도 배치된다.

(2) 대법원 판례도 처음부터 불합리한 판결이 있을 수 있고, 나중에 사회현실의 변화에 따라 그 판례가 더 이상 타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만약 대법원 판례가 잘못된 경우에는 길게는 수십 년간 국민의 법 생활을 왜곡되게 하고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많은 피해와 고통을 야기하게 된다. 하급심의 재판이라도 그 사건 하나하나가 당해 국민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나 다름없는 것이기에 그 사건에 적용할 대법원 판례가 과연 법 논리나 상식에 비추어 정당한 것인지, 오랜 세월이 흘러 사회현실이 변한 지금에도 여전히 타당한지에 관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검토해 보는 자세도 우리 법률가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자세라고 본다¹⁰⁾. 기존의 학설이나 판례의 틀로서 사실을 재단하는 경우 실제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고 대법원 판례는 고정되고 항구적이 되어 버릴 수 있다. 최근 법조 일각에서는 인터넷(코트넷)의 검색기능 향상으로 유사한 판례나 하급심 판결에 짜 맞추기를 하면서 충실한 심리를 하지 않고 결론에 이르며, 짜집기나 모방을 하는 판결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다.

(3) 위자료 액수도 사망 사고시 6,000만원이라는 데 대해 너무 기속되지 말고 탄력적 운용 필요(최근 8,000만원으로 증액된다는 보도)

㉗ 검사의 잘못된 형 집행지휘로 6년 3개월 부당한 수감생활 했던 60대 남성-국가 4,000만원의 위자료 포함하여 9,400만원의 배상, 대구지법 12민사부, 2008. 2. 14. 연합뉴스, ㉘ 재판부의 법률적용 잘못으로 보호감호 청구대상 아닌 범죄에 대하여 보호

감호 처분으로 6년 9개월 보호 감호소에 수용, 1억 원의 배상판결, 수원지법 민사 8부, 2006. 11. 5. MBC TV, ㉙ 의료사고(대학병원에서 자궁근종 수술 후 수술용 칼을 자궁 안에 넣고 봉합, 6년 동안 그 병원에서 발견 못함), 위자료 3,000만원 인정함, ㉚ 수지 김 사건에서 국가적 범죄의 소멸시효에 대한 신의칙 위반과 권리남용 법리적용, 징벌적 성격의 다액의 위자료 인정은 아주 바람직한 판결이라는 생각이 든다.

(4) 소신 있는 판결 필요

법인격 부인론, 사안에 따라 처분문서의 증거력에 대한 충분한 심리 요망,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일부 실형과 일부 집행유예 판결, 레미콘 기사의 근로자성 인정의 하급심 판결 등은 아주 의미 있고 신선한 판결로 보인다. 판례와 배치되거나 판례에 없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경우 항소심(상고심)에서 다뤄보라는 이야기는 너무 무책임하고 소신 없어 보인다.

라. 판사가 고생하는 직업인가?

흔히들 판사들은 자신들이 박봉에 격무에 시달리며 고생하고 있다고 말한다. 퇴직 후 갖 개업하게 되면 그동안 고생하였으니까 보상 차원에서라도 개업 직후 1년 안에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무리를 하게 되고 일부 판사들도 이에 동조하며 암묵적으로 전관예우를 해 준다. 판사들이 격무에 시달리며 고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앙 부처 간부 공무원, 대기업 간부나 직원, 대형 로펌의 변호사 등 여러 분야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으며 판사들만의 현상이 아니다. 판사의 급여도 잘 나가는 일부 변호사에 비해 적은 것이지 보통의 변호사, 고위 행정공무원, 대기업 간부 등에 비해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혹자는 판사들의 이런 불평에 대하여 권력, 돈, 명예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비판한다. 판사는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업무나 역할 자체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부심과 긍지,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가. 법관은 판결로만 말해야 하는가?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는 재판진행 중 예단이나 편견을 가지거나 선불리 결론을 말해서는 안 되고 여론이나 외부의 영향이나 간섭에 구애 받지 않고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로 말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싶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10) 박종연 변호사, 법률신문 2006. 7. 6. 자-대법원 판례에 대한 법률가의 자세 실형의 경우 적용 여부

5

법관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견 표명 (법관의 표현의 자유의 한계)

지극히 당연한 말이고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 법언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제도나 인사, 사법제도 개혁 등 사법 전반에 대해 적용되고 있고 적용되기를 요구하는 데에는 의문이 간다. 최근의 로스쿨 도입문제, 법조 일원화, 전관출신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제한,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의 인선기준, 고법부장 승진문제 등 사법개혁 및 법조인 모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현안 문제가 많이 있다. 이러한 사법부 내부의 문제점이나 개혁방향 및 대안 등은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판결로만 말한 것이 지극히 당연하겠지만 사법제도 전반이나 이들 제도의 존치 여부나 시행에 있어서 국민 누구보다도 그 필요성이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논의의 한 중심에 있는 법조인들이 활발한 논의의 장을 펼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할 것이며, 때로는 집단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의견표명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¹¹⁾.

나. 법관의 의견표명

법률문제에 대한 학문적인 견해 표명은 자유스러울 것이나 학문적인 차원을 넘어서 입법이나 사법제도의 개폐, 정치 문제나 사회 문제에 대한 법관의 의견표시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된다.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법관이 공개적으로 그 의견을 밝히는 것은 법관의 공정성 내지 중립성에 의심을 가지게 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견해가 많다. 지나치게 정치색이 짙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으나 지대한 국민적 관심사에 대하여는 법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 표현은 가능하다고 본다. 최근에 모 부장판사가 현 정부의 종교적 편향에 대하여 비판한 글은 아주 공감이 갔고 신선했다¹²⁾. 사법관련 토론회의 참여나 의견 개진도 필요하다. 작년 두 차례의 토론회시 토론자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한 토론회 때는 판사의 토론문을 자료집에 게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우여곡절 끝에 판사가 겨우 참석하였고¹³⁾, 한 토론회는 검찰,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측 토론자는 모두 참석하였으나 끝내 법원 측 토론자의 참석 없이¹⁴⁾ 진행되었다. 법관 윤리강령은 '법관은 품위 유지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학술 활동에 참여하거나 종교, 문화 단체에 가입하는 등 직무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제5조 제1항) 법관의 토론회의 참여나 의견표명에 대한 활동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 같다.



6

법관의 사적인 모임의 한계

가. 법관의 청렴의무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 을 하지 아니한다'(법관 윤리강령 제 3조 제1항),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 행위를 하지 아니

하며 증여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위 강령 제6조)고 규정되어 있다.

변호사나 지인으로부터 향응 제공, 골프, 도박 자금 제공은 회피해야 하며 특히 돈 거래는 금물이다(최근의 예: 윤상림 사건, 김홍수 사건, 군산 골프 접대 및 아파트 무상 거주 사건, 부천 모 부장판사 사건). 이들로 인한 법조비리 사건은 중대한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모방 범죄의 가능성이 많다.

나. 법관의 사적 모임의 한계

법관은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갖기 위하여 항상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변화된 사회현상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한다. 사적인 모임의 필요성과 한계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된다. 유희, 청탁의 가능성이 많고 불신과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사적인 모임을 자제해야 하고,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변화된 사회현상을 숙지하는 것은 독서, 예술 감상, 인터넷 기타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판사의 사적 모임 참석을 제한하는 것은 판사의 개인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유희, 청탁 가능성은 판사 개개인의 의지와 품성에 달려 있다면서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 의정부, 대전 법조비리 사건 이후 법관들이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거의 없어진 것은 사실이나 최근의 법조비리 사건은 모두 판사와 사업가의 사적인 접촉에서 비롯된 것이며 조 부장, 손 부장 사건 이후 오해와 불신이 높아져 가고 사법부의 신뢰가 상실된 만큼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불신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적모임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7

결어

법관, 소송 대리인, 당사자가 재판이란 적법절차 속에서 서로 진실을 발견해나가는 동반자 또는 협력자라는 인식을 갖고 서로를 겸허하게 존중하고, 법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균형감각을 갖고 겸허히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려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심증형성이나 법정진행이 완벽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사실문제에 관한 자신의 기존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겸허한 자세와 보다 더 바람직한 법정 운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법관도 신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고 이상적인 법관일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법관, 이상적인 법관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고, 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꾸준히 함양하여 존경받는 법관이 되기를 기원한다. ✎

글 민경한 회원

11) 출고, 대한 변협신문 2004. 8. 30. 자 시론, 법조인의 침묵, 과연 능사인가?
 12) 조원철 부장판사, 한겨레 신문 2008. 9. 2. 자기고관 '종교와 상생'
 13) 2007. 6. 민변 주최 '재벌범죄 양형에 관한 토론회'
 14) 2007. 8. 한국 투명성기구 주최 '법조 비리 근절대책 발표 1년 성과와 과제'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합헌성 고찰



이 자료는 민변과 토지공공성네트워크가 2008. 9. 18
공개변론이 열린 2005헌바112(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등) 등
7건에 관하여 2008. 9. 17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1.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합헌성 주장의 요지

현대사회에 있어 조세제도는 국가재정의 충당이라는 고전적이고 소극적인 목적에서 더 나아가 일정한 방향으로 국가사회를 유도하고 형성하는 적극적인 목적을 지향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경향이 되고 있다.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을 위해 부동산의 보유를 실거주 목적의 보유로 유도하고 투기목적의 보유를 제한하려는 조세제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보유인지 아니면 투기목적의 주택보유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개인별이 아니라 세대단위로 보유 부동산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은, 주택에서의 거주는 개인별이 아니라 세대단위로 하고 있다는 점이나 이미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제에서 위헌시비 없이 비과세 여부를 세대단위의 주택보유수를 기준으로 판단해 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이다. 이를 두고 혼인하여 세대를 이룬 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조세정책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제도는 합헌이라 할 것이다.

2. 조세정책의 정책 유도적형성적 기능의 합헌성

(1)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불합치 결정(92헌바49)에서 나타난 조세제도의 투기억제, 주택가격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정책 유도적형성적 기능의 합헌성 판단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위헌심판인 1994. 7. 19. 선고 92헌바49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현대에 있어서의 조세의 기능은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이라는 고전적이고도 소극적인 목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이 공동의 목표로 삼고 있는 일정한 방향으로 국가사회를 유도하고 그러한 상태를 형성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부과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경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조세의 유도적·형성적 기능은 우리 헌법상 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도록 한 헌법 전문(前文), ②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제34조 제1항, ③“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제119조 제2항, ④“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도록 한 제122조 등에 의하여 그 헌법적 정당성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이러한 조세제도의 정책 유도적형성적 기능의 합헌성에 바탕한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의 위헌여부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종 개발사업 및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희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토초세법의 위 목적규정은 (중략) 조세를 수단으로 하여 유희토지 등에 대한 투기적 수요의 억제, 지가의 안정과 실수요자에의 유희토지 등 공급의 확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생산구조 내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경제적·사회적 제 비용의 절감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행정 목적을 아울러 실현하려는 의도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조세에 있어서 헌법적으로 승인된 유도적·형성적 기능에 비추어 토초세법의 위 목적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곧바로 그 시비를 가릴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3) 소결론

이러한 현재의 기존 결정례에 의하면, 조세의 유도적형성적 기능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소득세법의 목적의 정당성 자체를 현재가 판단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종합부동산세의 실거주 목적보유를 장려하고 투기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제한하기 위한 정책 유도적형성적 기능의 합헌성

(1) 헌법 제122조 토지공개념 근거조항의 의미

헌법재판소 1998. 12. 24. 89헌마214 결정은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

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면적은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에, 모든 국민이 생산 및 생활의 기반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그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공동체의 이익이 보다 강하게 관철되어야 한다(헌재 1989. 12. 22. 88헌가13, 판례집 1, 357 참조). 헌법은 토지가 지닌 위와 같은 특성을 감안하여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제122조)고 규정함으로써 토지재산권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2) 투기억제, 지가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재산권 제한의 정당성

헌법재판소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관한 위헌소원 심판(94헌바37)에서 「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하여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입법목적 자체를 스스로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공개념 제도의 일환으로 법이 제정된 입법배경을 고려하면, 법의 진정한 입법목적은 도시계획구역 안에 거주하는 국민 누구나가 유사한 면적의 택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택지를 분배하고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실수요자가 아님에도 지가상승을 기대하고 토지 투기 등의 목적으로 토지를 필요 이상으로 보유함으로써 실수요자의 토지소유와 이용을 가로막는 사회적·국민경제적으로 유해한 행위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택지의 적절한 공급을 가능하게 하고, 이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입법목적은 ①국가가 입법을 통하여 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공익이자, ②헌법 제35조 제3항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이며, ③헌법 제122조에 의한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는 권한에도 그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법의 목적은 정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고 실시한 바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는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부동산의 가격안정은 세대별 고액 부동산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실거주 목적 보유 외의 부동산보유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킴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가 줄고 공급이 확대될 경우 가능한 것이다.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합산하여 실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이나 고액 부동산 소유자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세대별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의 가격안정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처럼 부동산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종합부

동산세법은 세법의 국민경제정책 유도, 형성적 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4)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의 정당성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비추어, 세대별 합산과세를 통하여 실거주 목적보유를 장려하고 투기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제한한다는 정책유도기능을 제고하고, 이로써 더 나아가 조세부담의 형평성이나 부동산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

4. 실거주 목적 보유와 투기목적 보유를 구별하는 기준으로서 세대별 1가구 보유 기준의 합리성

(1) 주택에서의 거주는 인별이 아니라 세대단위로 하고 있어, 세대단위를 실거주 목적 보유인지 여부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인

세대별 합산과세제도가 특히 주택에 관하여는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본질에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26조 제1항에 의하면 혼인한 부부의 동거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13조 제1항은 친권자의 자에 대한 보호교양할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친권자와 자 사이에 동거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세대라는 개념도 같은 집에서 동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종합소득세법 제2조 제8호,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이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같은 장소에서 동거할 것이 예정되거나 예상되는 가족은 하나의 주거공간만이 그 실제 주거에 필요한 것이고, 개념 필연적으로 하나 이상의 주거공간은 실제 주거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세대를 구성하는 개인들이 보유하는 주택이 주거에 필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보유분인지의 판단은 동거관계가 있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다른 조세제도에서의 실거주 목적 보유인지 여부를 세대별 단위로 판단하고 있는 예

현행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되는 주택의 판단기준도 이러한 관점에서 세대를 구성하는 각 개인이 아니라 세대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즉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단을 개인별로 하지 아니하고 세대별로 하고 있다. 예컨대 주택을 각자 1채씩 소유하고 있는 두 사람이 혼인하여 이를 계속 보유하면, 세대 기준으로는 2채를 보유하게 되고, 그 1세대 2주택 상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고 보는 결과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실거주 목적 보유와 관련된 비과세 여부를 세대별 단위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대별 판단방법에 대하여는 한번도 위헌시비가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도 발생하지 않

고 있다. 부부 내지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조세상의 합리적 차별을 가하고 있는 조세제도
는 그뿐만이 아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은 배우자가 있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를 차별하
여 전자의 경우에만 배우자분소득공제 등 여러 가지로 세금부담을 경감한다(소득세법 제50조, 제51
조, 제52조).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역시 배우자에 대한 증여나 상속은 다른 사람에 대한 증여와
상속과는 달리 배우자를 우대하는 것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0조, 제53조).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한 주된 이유가 '세대별
합산규정으로 가족을 구성한 세대는 과세표준이 증가함으로써 독신, 이혼한 부부, 사실상 혼인관계
에 있는 부부 등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다' 는데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양도소득세의 경
우도 마찬가지 차별이 존재하고, 배우자 공제나 배우자 증여 우대는 정반대의 경우 차별이 존재하
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 이를 두고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한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세대별 합산과세의 합리성

따라서, 혼인여부에 의하여 과세내용이 달라지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입법이 모든
경우에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그 제도의 본질에 가장 부합하는 과세단위가 오히려 개인이 아니라 주거단위로서의 세대라고 보
아야 하겠으므로, 세대 단위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입법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
는 입법재량의 범위내로 합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부부합산과세의 위헌결정의 기계적 적용의 문제점

(1) 부부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소득세법 61조 위헌소원(2001헌바82)에서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어 혼인한 부부
를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취급하고 있으며, 그러한 차별은 ①자산소득
종합과세제도가 인위적인 소득분산에 의한 조세회피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세회피
행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규정에 의해서 방지할 수 있다는 점, ②공동생활에서
얻어지는 절약가능성을 담세력의 요소로 고려해선 아니 된다는 점, ③혼인한 부부가 혼인하
였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세금을 강요받아서서는 아니 된다는 점, ④조세부과를 혼인관계와
결부시키는 것은 사물의 본성에 어긋난다는 점, ⑤자산소득은 중간소득계층에도 광범위하
게 발생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헌법상 정당화되지 아니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부부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에 대한 결정의 배경이 된 논리의 부당
성에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논리 자체가 종합부동산세법에 기계적으로 적용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공급의 유한성 등 금융상품과 부동산의 차이점

① 헌법재판소 1998. 12. 24. 89헌마214 결정과 같이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면적은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
족한 반면에, 모든 국민이 생산 및 생활의 기반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의존하고 있으
므로, 그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
의 것이 아니므로 공동체의 이익이 보다 강하게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다.

②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인 주택과 토지는 주식이나 예금 등 다른 재산권과는 달리 재화
로서 공급에 제한이 있다. 즉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고, 주택의 경우 역
시 토지의 제약, 효율적인 도시계획 등의 제한을 받으므로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
다. 또한 주택문제의 심각성과 토지 및 주택에 있어 수요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토지
및 주택가격의 상승과 투기현상이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권에 비해 현저하다. 특히 세계적
으로 인구밀도가 방글라데시, 대만에 이어 3위라는 대한민국의 인구과밀 실정은 국제적으로 유
례가 없을 정도의 토지 및 주택에 대한 투기 및 이에 따른 비정상적 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토지나 주택의 소유는 소수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집중되어 왔으며, 그 결과 토지나
주택은 국민 다수의 생활공간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소수 자산가의 치부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
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③ 한편, 일반 국민의 토지나 주택은 생산이나 생활의 기반이 됨은 물론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
민 생존의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토지나 주택에 대한 의존도는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
산권의 대상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 이러한 점에서 토지나 주택의 사회성 내지 공공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2) 토지재산권과 금융재산권 등 다른 재산권에 대한 헌법규정 사이의 차이

헌법재판소 1998. 12. 24. 89헌마214 결정은 토지가 지닌 위와 같은 특성을 감안하여 『헌법은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
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제122조)고
규정함으로써 토지재산권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처
럼 헌법은 다른 금융재산권 문제와 달리 토지나 주택의 문제에 대하여는 토지주택 재산권의 위와 같
은 특성과 부동산정책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의 필요성 등의 헌법목적에 입각하여 헌법에 직접
특별규정을 다수 두고 있다.

헌법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제1항), 국가의 주택개발
정책을 통한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할 의무(헌법 제35조 제3항), 국토의 이용 등의 제한과 의무(헌
법 제122조) 등이 그 예이다.

(3) 부부 자산소득합산과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사이의 입법목적상의 차이

소득세에 있어서 부부 자산소득합산과세의 취지는 부부간의 인위적인 소득분산에 의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함에 있었다. 이러한 입법목적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조세회피행위 방지라는 입법목적은 행정기술적 관점에 불과하여 증여세 등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조세포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한 세대를 차별하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판단한바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취지는 금융소득 부부합산과세처럼 부부 사이 증여를 통한 조세포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행정기술적인 취지가 아니라 투기목적의 주택보유를 막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보유를 유도형성하기 위한 정책유도적 목적에 주목적 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목적은 일련의 헌법규정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이다.

요컨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제도는 부동산가격안정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그 목적 자체에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4) 소결론

위와 같이 금융재산권과 달리 토지나 주택에 대하여는 헌법에 그 이용개발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차별과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이나, 조세회피행위의 방지라는 행정 편의적인 입법목적에서 도입된 종합소득세의 부부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와 달리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제도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보유를 유도형성하여 부동산투기억제와 지가안정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인 점 등에 비추어, 금융종합과세의 부부합산과세제가 혼인한 세대를 비합리적으로 차별하였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하여 바로 같은 취지로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가 혼인한 세대를 비합리적으로 차별하는 위헌적인 입법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는 실거주 외의 투기목적의 부동산 소유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에 따라 정립된 제도로서, 그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은 세대 단위로 수요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성이 있고, 부동산가격안정에 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세대별 합산과세 제도는 헌법이 부여한 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으로서, 세대를 이루지 아니한 자와 세대를 이룬 자들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단순한 이유로 그 합헌성이 부정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

글 김성진 회원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주거 시민단체의 의견

1 이명박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정책은 집값안정기조에 찬물을 끼얹고 국가경쟁력을 깎아먹는 망국적인 정책이다.

2 전매제한을 풀고, 대출규제를 푸는 것은 대출받은 투기자금으로 거품분양가, 거품부동산가격을 떠받치겠다는 투기조장 정책일 뿐이다.

3 미분양문제는 정상가격으로 분양가를 인하함으로써 해결해야지 투기자금을 동원하여 고분양가를 떠받치려는 정책은 부동산시장을 더욱 왜곡시킬 뿐이다.

4 택지비를 실거래가로 반영하겠다는 것은 분양가상한제의 사실상 무력화로 이어져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좌절시킬 것이다.

5 무분별한 재건축, 재개발규제 완화, 신도시개발 등 각종 개발촉진정책은 투기와 집값의 기폭제가 되고 국토의 난개발을 부추키는 정책이다.

6 집값안정의 미봉책으로 불쑥 등장하는 신도시개발이 아니라 국토계획과 도시개발은 다음세대를 위하여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실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7 무분별한 부동산세제 완화는 자산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복지재정을 위축시키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일뿐이다.

8 정부는 부동산규제 완화보다는 서민들의 내집마련과 주거복지에 부동산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1. 집값안정기조에 찬물을 끼얹고 국가경쟁력을 깎아먹는 이명박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정책

세계적으로 2000년대 초반에 과잉유동성에 의하여 형성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집값의 하향안정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사태도 미국의 집값이 30% 정도 하락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호주 등 집값상승 현상이 있었던 나라마다 집값이 하락하고 있고, 일본도 2008년 초 도심에서 시작된 집값 하락 현상이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강남, 분당, 용인 등 부동산버블이 심각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하락의 전조가 보이고 있으나 4월 총선에서 정치권에서 무책임하게 뉴타운공약을 남발하자 집값이 폭등한 것처럼 개발호재가 있는 곳에서는 집값이 상승하는 현상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한국이 집값하락안정화 현상이 뚜렷하게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집값안정에서 부동산경기 부양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로 투기적 움직임이 시장에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집값안정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하다가도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민간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DTI 담보대출 완화 등 각종 부동산경기 부양으로의 정책전환을 내비쳐 부동산시장을 불안정하게 해 오고 있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투기억제장치인 전매제한제도마저 유명무실하게 하는 정책을 내는 것은 부동산시장에 본격적인 건설경기 부양정책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상의 투기방조정책으로의 전환으로 다시 부동산투기가 재현되고 집값상승으로 이어지면 서민들은 이제 내집마련의 꿈을 접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이 부동산가격조정 과정을 거쳐 3~4년 후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면 안정된 임대료, 주거비를 무기로 제조업투자 활성화, 임금과 물가안정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게 될 때 한국경제는 계속 부동산가격거품에 시달리다 국가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전매제한을 풀고, 대출규제를 푸는 것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투기자금으로 현재의 거품투성이 분양가, 부동산가격을 떠받치겠다는 투기조장 정책일뿐이다.

분양받은 주택을 자신이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바로 프리미엄을 얹어 전매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투기행위로 집값상승의 주범이었기에 역대정부에서 지켜온 가장 기본적인 투기억제정책이었다. 1999년 김대중 정부가 IMF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미명하에 전매제한제도를 폐지한 후 부동산투기가 만연하자 제일 먼저, 부활한 제도가 전매제한제도이기도 하다. 특히, 민간중대형 분양주택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분양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라는 것은 아파트가 건설되어 등기도 되기전에 전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되어 투기와 탈세의 온상인 미등기전매마저 정부가 허용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만일, 여기에 DTI 대출규제마저 앞으로 풀게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투기자금으로 투기적 부동산거래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여 부동산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된다.

결국, 거품투성이 고분양가, 고부동산가격을 하향안정화하여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투기자금 동원과 투기적 거래를 방치하여 현재의 거품가격을 그대로 떠받치는 정책이 될 것이다.



3. 미분양문제는 정상가격으로 분양가를 인하함으로써 해결해야지 투기자금을 동원하여 고분양가를 떠받치려는 정책은 부동산시장을 더욱 왜곡시킬 뿐이다.

현재의 미분양사태는 실수요자인 무주택세대주들의 소득능력에 비하여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2005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가 흑자액을 매월 꾸준히 저축해 서울에서 25평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는 20년 9개월, 32평형은 27년 5개월이 걸리는 실정이다. 그래서,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청약가산점제와 200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분양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분양주택의 공급에 기대를 걸고 수많은 집 없는 서민들이 주택구입을 미루고 있다. 시장원리에 의하면 이렇게 많은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다면 공급자가 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분양가를 낮추어 미분양물량을 해소하려는 것이 정상적인 공급자의 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회사들이 고분양가를 내리지 않고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정부가 고분양가에도 거래를 할 수 있는 투기수요를 창출하는 건설경기 부양정책을 내올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정책은 이러한 건설회사들의 비합리적인 태도가 그냥 헛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으로 밝혀지는 셈이다.

4. 택지비를 실거래가로 반영하겠다는 것은 분양가상한제의 사실상 무력화로 이어져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좌절시킬 것이다.

택지비를 실매입가로 반영하는 것은 실거래가의 파악이 현저히 떨어지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건설회사들이 토지와 공모하여 택지비를 부풀리는 것을 막기 현실적으로 어렵고 건설회사들이 분양가를 고려하지 않고 투기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분양가를 부풀리고 주변 집값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미 건축비상한선인 기본형(?) 건축비 산정에 있어서도 실제 시공비가 아니라 최신, 최고의 자재를 모두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가상의 건축비를 인정하여 상당한 거품이 내재된 상태에서 택지비에서도 많은 거품이 발생하게 용인해 준다면 분양가상한제는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다.

게다가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에는 가산비까지 올려 준다니 다시 주상복합아파트의 고분양가가 주변시세를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재현될 것이 너무도 명확하다. 분양가상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이러한 정부정책은 그야말로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다.

5.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규제 완화, 신도시개발 등 각종 개발촉진정책은 투기와 집값의 기폭제가 되고 국토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정책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전매제한제도,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투기억제장치를 해제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신도시개발 등 각종 개발촉진정책에 매달리는 정부의 태도이다. 예를 들어, 지난 정부에서 서울의 집값이 폭등하는 메커니즘을 보면, 강남재건축이 활성화되면서 일반분양분이 주변아파트보다 20~30% 높게 책정되면 이에 맞추어 주변아파트값이 상승하는 방식으로 재건축개발사업의 고분양가 강남집값상승의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뉴타운,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강남집값상승, 판교 등 신도시개발로 인한 분당, 평촌 등 수도권지역 집값상승도 이렇게 주변집값보다 훨씬 높은 고분양가가 기폭제가 되었다. 그런데도, 재건축 전매제한(조합원지위 양도금지) 제도를 풀고 만일, 재건축·재개발에서 소형아파트와 임대아파트 의무비율제도를 완화하는 등 개발촉진정책으로 전환하게 되면 가뜩이나 강북의 재개발지역 중심으로 치솟고 있는 집값상승 현상에 불을 붙이는 정책이다. 강북에서 소형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턱없이 부족하여 소형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치솟고 전세값이 폭등하여 참여정부에서의 중대형아파트 위주의 건설정책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가뜩이나 소형아파트가 부족하는데, 의무건설비율제를 없애면 몇 년 후에는 소형아파트 가격이 더 치솟을 수밖에 없게 된다. 눈앞의 개발촉진에만 매달려 몇 년, 몇 십 년 후에 나타날 문제에는 아예 눈을 감는 정책이 되어서는 않된다.

6. 집값안정의 미봉책으로 불쑥 등장하는 신도시개발이 아니라 국토계획과 도시개발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실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 제122조는 국토는 국민 생활의 기반이자 생산의 기초수단이기 때문에 균형 있는 개발과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천명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은 "전국의 국토계획 - 광역단위 도시기본계획 - 지구단위의 도시계획" 체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도시개발이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 도시를 개발하는 방법에서도 단순히 베드타운, 공업단지만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문화·산업·유통·정보 등 도시의 종합적인 기능을 갖추어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정부에서 경기부양, 개발인센티브의 논리로 각종 특별법, 촉진법을 남발하여 손쉽게 개발할 수 있고 개발이익이 많이 남는 단순 베드타운, 공업단지 기능만 갖춘 도시를 만듦으로써 각 도시마다 도시의 종합적 자족기능이 상실되고 부동산가격 상승, 교통혼잡, 주차난, 교육·병원시설의 부족, 환경파괴, 수도권집중 등 다양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또 다시 준비되지 않은 검단, 세곡 신도시 개발을 불쑥 발표하면서 지난정부의 전철을 또 다시 밟으려 하고 있다. 한번 개발된 도시는 이를 철거하고 다시 개발하는 것이 곤란하다. 그 도시에서 삶을 이어갈 미래세대의 입장까지 도시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미래세대들이 누가 이런식의 난개발을 하였느냐고 우리세대를 향해 반문할 때 경기부양을 위해 어쩔 수 없었노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7. 무분별한 부동산세제 완화는 자산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복지재정을 위축시키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일 뿐이다.

IMF 경제사태를 겪으며 건설경기를 활성화한다며 김대중 정부에서 2001~2003년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신규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1가구 다주택보유자에게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특혜제도를 실시했던 결과가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 그렇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은 더욱더 투기의 대상이 되었다. 예를 들어, 강남의 타워팰리스 등이 그 당시 양도소득세 5년 면제, 1가구 1주택 평가기준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은 분양주택들이다.

2003년경에는 과천 등 수도권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다주택보유자들에게 양도소득세가 종과되고 있는

최후진술

이 글은 집회 및 시위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을 선고(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받은 윤희숙(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이 최후진술이다. 윤 부의장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관계자로서 2008. 6. 25. 체포되었고,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촛불집회의 주최가 문제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5인 중 한 사람이다.

지난 4월 18일 대한민국은 미국에서 쓰는 개 사료로도 쓰지 않는 30개월 이상 소의 내장까지 수입하는 협상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한



데, 대전에서 분양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 많은 사람이 혼란을 겪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조세에 대한 예측성이 떨어져 조세의 안정성이 신뢰성이 크게 떨어졌고 국민들은 지금도 양도소득세는 안낼 수도 있는데 억울하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줄었다 늘었다 하는 고무줄 조세정책이 계속되면 국민들의 조세에 대한 신뢰성은 더욱 떨어지고 세금을 내는 것을 국가공권력의 변덕에 의하여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정도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1가구 1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정책은 다른 근로소득세 부담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1가구 1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가 과다하여 주택의 매매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처럼 주장되고 있지만 실제로 1가구 1고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전체 매매가격의 10%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여 매매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줄 정도로 과다한 것이 아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그것도 6억원 초과분만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6억원 이하분에 대하여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장기보유에 따라 45%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로 부과되는 세금은 매매대금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흔히, 양도소득세를 등록세·취득세와 같은 부동산거래세라고 주장되는 경우가 있지만,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소득세인 것으로 보유단계에서 개발이익(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개발 부담금과 그 성질을 같이 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등록세·취득세 등 거래세와 함께 같은 것으로 취급하여 거래비용 절감차원에서 논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같은 소득세인 근로소득세는 누진율이 최고 36%까지 달해 월 700~800만 원 이상의 근로자는 36%까지 소득세를 부담하는데 반해,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10%의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을 두고 과다하다고 한다면 이보다 훨씬 높은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상대적 조세저항감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류세와 같이 서민들도 부담해야 하는 세금보다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같이 고소득을 얻는 자에게 누진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금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작년 국세청 집계로 부동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산관련 양도차익은 60조 9천억 원이었지만 양도소득세로 환수된 비율은 12.9%에 불과하다. 6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은 신고대상도 아니어서 집계되지 않은 것이다. 노무현 정부 4년 동안에만도 160조 4천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지

만 양도소득세로 부과된 것은 11.9%에 불과하다. 근로소득세와 비교하여 보면 조세형평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현상이다.

더욱이, 거주도 하지 않은 비 거주 보유자에게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는 주택을 거주 의 수단도 아닌 투자의 대상으로 보유해 온 것인데 근로소득자 등 다른 소득세 부담자와의 관계에서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오히려, 지방에 거주하는 세대가 집값상승을 기대하며 지방에서는 전세로 살며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였다가 양도차익을 얻고 매매하는 현상이 확대되어 실수요가 아닌 또 다른 차원의 투기수요가 주택시장에 발생하게 하여 집값상승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 나아가, 1가구 1고가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확대 정책을 넘어 다주택자에 대해서 까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서민들의 주택문제 해결과는 전혀 상관없는 투기 세력만을 위한 정책이라 할 것이다.

2008년 8월 21일

강북실업자사업단, 관악주민연대,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 기독교 도시민선교협의회,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나눔과 미래, 노숙인의복지와인권실천하는사람들,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구주거권실현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 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준),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성동평화의집, 성경적 토지정의위한모임, 아시아주거권연합한국위원회, 여성민우회, 위례시민연대, 인천참여자치연대,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실직노숙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주주거복지센터,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주거권실현을위한 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 비닐하우스주민연합,주거복지부산연대, 주거복지연대,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 천주교도시민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노총,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YC, 주거복지연대, 환경정의, 동작공대위, YMCA 전국연맹, 참여연대(총 43개 단체)

지금 우리사회는 웹2.0으로 불리는 새로운 인터넷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인해 기존에 언론사나 대학, 국가기관과 같은 집단이 독점했던 정보와 지식을 전 세계에 있는 누리꾼(네티즌)들이 함께 공유하고 활용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은 우매한 민중이 아니라, 이러한 방식으로 형성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는 집단지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광우병 쇠고기문제 역시 국가기관의 입을 빌리지 않고도 이미 국민들은 전 세계의 인터넷을 통해서 사안의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국민들 중에는 권위있는 수의학자나 국제통상전문가, 광우병전문가와 미국현지에 살고 있는 주부와 유학생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의 정보공유를 통한 여론형성 방식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소통방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예전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국가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과반의석의 힘을 믿고,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미국산 쇠고기수입, 대운하, 의료민영화 등을 강행하려 했습니다. 막무가내인 거대여당과 이를 견제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야당뿐인 국회를 보면서 국민들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느꼈고, 결국 직접 목소리를 전하고자 거리에 나온 것입니다.

거리에 초를 들고 나온 국민들은 인터넷 동호회 회원, 유모차를 몰고나온 주부, 하이힐 아가씨, 퇴근길의 직장인, 할아버지와 할머니 등 그야말로 “일반시민”이었습니다. 이들은 평생 처음으로 나온 집회였기에 자기와 같은 일반국민이 촛불을 들면 정부가 어떠한 응답을 해줄 것이라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촛불을 들고, 노래를 부르고, 호소를 해도 정부에서는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만을 거듭 밝혔고, 오히려 촛불배후 운운하며 촛불의 순수성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물대포와 군화발을 동원한 폭력진압이 가해지는 날을 기점으로 분노로 바뀌었고, 분노한 시민들은 국민을 섬기겠다고 한 정부에 깊은 불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폭력으로 진압하는 참담한 경험을 한 국민들은, 지난 수 십년간 애써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국민들은 쇠고기재협상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대한 저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바로 대통령이 청와대 뒷산에 올라 보았다고 한, 6.10 전국 백만의 촛불을 거리에 불러 모은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구현되는 사회라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이라도 국민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정부는 정부정책과 다른 의견을 낸다는 이유로 국민을 반정부세력이라 규정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강제로 진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자신은 이른바 강부자와 고소영으로 통칭되는 내각

구성을 하고 실정법에 위반하여 공영방송사장을 교체하는 등 측근인사와 보은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정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정부가 유독 힘없는 국민들에게만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촛불과 관련한 사람에게 엄한 사법처리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무원칙한 처사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정부로부터 국민들이 더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난 6월 초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는 한통의 편지와 함께 성금이 도착했습니다. 편지의 사연은 아빠와 함께 6월 10일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기로 약속한 어린 딸이, 6월 10일을 며칠 앞두고 물놀이 도중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뜨게 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충격과 고통 속에 딸의 유품을 정리한 아버지는 아이가 모은 저금통을 촛불문화제에 사용해 달라며 눈물겨운 성금을 보내주었습니다. 내 아이는 더 이상 함께 촛불을 들 수 없지만 다른 아이들에게는 광우병 위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다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그 배후를 철저히 조사해보라고 호통쳤던 초 값의 출처는 바로 이런 성금이었습니다. 체제전복을 꿈꾸며 혼란을 야기 시키는 “좌파빨갱이”, “반정부세력”은 정부와 보수언론이 만들어 낸 허상일 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에서 비롯된 이 난국의 책임을 이른바 “촛불세력”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반정부 대 친정부세력, 좌파 대 우파로 나누어 촛불에 색깔을 입히고 훼손하려 했습니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정부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촛불은 세계역사상 유례없는 끈질김과 창의성 그리고 자발성으로 한국 민중의 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촛불의 수가 줄어들고, 촛불이 꺼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촛불은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청와대에 등을 돌려, 국민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더 끈질긴 생명력으로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권위와 힘으로 강제로 국민을 통치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 촛불의 뜻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럴 때야말로 비로소 정부로서 국민들에게 온전하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과의 소통부재에서 비롯된 이 정국을 풀기 위해서는 정부의 촛불에 대한 전향적 태도와 관점이 필요합니다. 놀랄 만큼 변화된 이 시대와 국민에게 맞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 그 시초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글 윤희숙

숙녹비대전 熟鹿皮大典

숙녹비대전이라는 특이한 말은 대학원에서 잠깐 들었다. 박병호 교수님이 진행한 한국법제사연구 과목에서는 조선 후기의 소송문서를 독해하는데, 그 가운데 소송인들의 주장 속에 이런 말이 등장한 것이다. 흔히 아는 속담으로는 “鹿皮에 가로 日”인데, 녹피가 순음화하여 녹비가 되었다고 한다. 사슴가죽은 유연성이 좋아 한자로 날 日을 써놓고, 이를 가로로 당기면 가로 日자로 변한다는 것이다. 이를 법률적으로 연관시키면, 어떤 법조문을 놓고 제멋대로 日자로, 또 때로는 日자로 해석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耳懸鈴鼻懸鈴도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정도야 알 만한 사람은 아는 것이다. 그 ‘녹비에 가로알’ 식 사고가 법에 미치면 어떻게 될까.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갖다 붙이고, 또 법해석을 제멋대로 할 때 그런 시대의 법적 관행을 일러 아예 숙녹비대전이라 지칭하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대전>은 <경국대전>을 말하는데, ‘대전’ 급으로 분류된 법전은 선조들이 만든 법(祖宗成憲)으로 영세토록 마멸되지 않는 위치에 있다¹⁾. ‘숙녹비’와 ‘대전’을 결합시킨 조어 그 자체가 부조리한 법현실을 풍자하는 셈이다. 다음에는 사료 속에서 몇 가지 용례를 찾아보기로 한다.

1 먼저 홍만종의 <순오지>가 있다. 이 책은 정철의 <속미인곡>을 일러 ‘제갈량의 출사표와 백중하다’는 평을 한 것으로 국어 문제지에 소개되어 있어 그 이름이 낯설지 않다. <순오지>의 말미에는 당시의 속담들이 실려 있는데, 뜻밖에 거기에 <숙녹비대전>이 등장하는 것이다.

숙녹비대전 (熟鹿皮大典)²⁾

숙녹비라는 것은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쏘리고, 오른 쪽에서 당기면 오른 쪽으로 쏘리는 것이므로, 이것은 세상에 법을 맡은 관리로서, 법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 맘대로 늘이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자가 많은 때문에 이렇게 기롱(譏弄)한 말이다.

홍만종은 이어서 그와 유사한 속담을 또 하나 소개한다.

고려공사삼일 (高麗公事三日)³⁾

우리나라 사람은 인내성이 부족해서 한 가지 정치나 한 가지 법령이라도 바꾸고 고치기를 보통으로 알기 때문에 사흘밖에 가지 않는다는 말이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자의적인 법해석을 숙녹비에 비유한 여러 표현이 나온다. 선조 24년 이유징은 선조 앞에서 경연을 끝내고 다음과 같이 아뢰고 있다⁴⁾.

“예로부터 천하와 국가를 위한 분들 가운데 창업한 임금은 규모를 세워 자손에게 계책을 남기고, 수성(守成)한 임금은 제도를 준수하여 빛나는 치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경국대전>이, 두루 자상하고 완전 세밀하여, 사정을 상세히 하였고, 전후<속록(續錄)>의 저작도, 미진한 것을 더할 수 없이 수록하여 자세하게 갖추어져, 한 가지 일도 빠뜨리지 않았으니, 조정의 정사에<대전>을 따라 써서 유실됨이 없게 한다면, 일대의 정치를 하는데 훌륭한 법이 되고도 남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수백 년 이래 세월만 허송하였고, 법을 집행하는 관원도 심상히 보아 넘기며 오직 인정(人情)의 천심(淺深)만으로 그 법을 재려고 하여, 삼일공사(三日公事)란 꾸깃음과 녹비대전(鹿皮大典)이란 조롱이 있게 되었으니 진실로 한심스럽습니다⁵⁾.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 일이나 한 가지 행위를 반드시<대전>에 실린 대로 인용하여 못된 버릇을 통쾌하게 개혁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유징은 <경국대전>과 <속록>의 법전에 따라 정치를 하고 법을 집행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런데 관원들이 법전이 아니라

2

1) 선왕의 법은 조종지법(祖宗之法) 또는 조종성헌(朝宗成憲)으로 불린다. 조종성헌은 존중되어야 하며 함부로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단 제정된 법령은 록(錄)에 수록되며, 법전을 편찬할 때 그 록 중에서 영구히 시행할 영세지전(永世之典)을 골라서 전(典)에 수록한다. (박병호, 한국법제사,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86, 55~62 참조)한국비대전은 이 영세지전의 집성이기에 조석변하는 숙녹비규범과 대척되는 것이다.

2) 홍만종, 旬五志, 이민수 역, 을유문고, 1971, 300쪽.

3) 위의 책, 304쪽.

4) 박동량, 기재사초 상(寄齋史草上), 한국고전번역원, 1971, 신묘년(선조 24년, 만력 19년) 5월 8일 기사 인용.

5) 守法之官“視之尋常”惟以人情淺深“得以輕重其法”而至有三日公事之? 鹿皮大典之譏

인정에 따라 법을 가볍거나 무겁게, 넓게나 좁게 자의적으로 적용함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의 녹피대전이란 조롱을 끌어온다. 그의 대책은 일정한 행위에 대해 <경국대전>의 조문을 인용하면서 제대로 적용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3

또 다른 예로 인조 때에 최명길은 관리의 법적 남용을 막기 위해 법전의 정비를 주장한다. 원래 조선시대의 '대전'은 조종성현으로 감히 건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대전, 대강은 선왕의 제도를 준수하지만, 시대에 맞추어 변통할 수 있는 것은 경장해야 한다고 했다. 최명길은 성종, 중종 때에는 <진속록> <후속록> 등의 법전을 반포했는데, 명종 이후엔 여러 수교(受敎)가 있었으나 율관(律官)이 법을 의논할 때 마음대로 조종하였다고 비판한다. 최명길은 숙녹비대전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연유했다고 말하고 있다⁶⁾.

4

고려공사삼일의 표현도 여러 곳에 등장한다. 오래 참고 견디지 못해 일의 지속성이 없거나, 정령이 조령모개하는 것을 비꼬는 말이다. 개인적인 일이라면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는데, 나라일도 사흘을 못 간다는 뜻이다. 특히 법령은 상양과 한비자 이래로 신상필벌이 기본원칙일 텐데, 사흘을 못가서 조변석개한다면 법에 대한 신뢰가 생길 리 없다. 그런 점을 정확히 지적한 것으로, 이익의 <성호사설>이 있다. 그 한 부분이다⁷⁾.

나라가 다스려지고 어지러움은 현령(憲令)을 엄하게 하고 너그럽게 하는 데에 달린 것이니, 법이 행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어진 마음과 좋은 정사가 있다 하더라도 나라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 . . 무릇 법을 어긴 자는 규례에 따라 아뢴 다음, 율(律)에 비추어 해사(該司)에 맡기고, 법을 어기고 아뢰지 않으면 대관(臺官)이 논박하여 중한 벌을 내리도록 하면 이 한 가지의 일만으로도 온갖 법의 요령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앞에서는 동쪽으로, 뒤에서는 서쪽으로 하며, 아침에는 백(白)으로, 저녁에는 흑(黑)으로 하니, 속담에 이른바 삼일공사(三日公事)라는 것도 오히려 혈한 표현이다. 시행하는 일에 신의가 없고 형벌이 적중하지 않고서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6) 조선왕조실록, 인조 38권, 17년 4월 21일 (무신) 001.

7) 이익, 성호사설, 제10권, 인사문, 사관적간.

지금은 죄형법정주의가 확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민주법치국이다. 법규정, 특히 형사법규정이 애매모호하면 곧바로 위헌의 시비 앞에 곧바로 노출된다. 그런데 갑자기 케케묵은 숙녹비대전이란 말이 떠오른 까닭은 무엇일까. 촛불시위에 대한 공안당국의 대응 때문이다. 수백만 명이 태평로와 종로의 도로를 활보했는데, 그 중 미운털 박힌 몇 명에게만 모든 도로의 불법점거에 대한 죄책을 따지겠다. 국민들은 스스로 거리로 나섰는데, 구태의연한 공안당국은 수십만의 국민들이 꼭 누구의 선전, 선동에 의해 조종당한 허수아비로 여기고, 배후조종자를 잡겠다고 한다. 경찰에 의해 배후조종자로 수배당한 시민단체의 한 인사에게 “당신이 시민들의 조종자냐”고 물은 적이 있다. 그는 답했다.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그런데 경찰만은 그 인사가 그럴 능력이 있다고 믿는 모양이다. 달리 보면 수배자들은 이 경찰들에게 감사해야 할지 모른다. 자신들의 역량을 그토록 높이 평가해주니까 말이다. 다른 한편으론 경찰은 참여한 모든 시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다. 배후조종당한 허수아비로 취급하고 있으니 말이다.

또 다른 한편으론 경찰의 종교편향성이 문제되고 있는데, 모든 종교를 신성하게 취급하고 있음도 확인된다. 사제와 목사님들과 스님들은 아예 건드릴 엄두도 안내니 말이다.

하지만 법률가로서는 참으로 안타깝다. 왜 법률을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제멋대로 적용하느냐 말이다. 다시 한 번 법은 객관적 규범이 아니라 법집행자 하기 나름인 것으로 전락된다.

사슴가죽은 가방이나 장갑 용품으로는 좋지만, 법전용(法典用)으로 써서는 안 된다. ㄸ

글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참조

여기서의 인용구는 대개 국사편찬위원회(www.history.go.kr) 및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www.koreanhistory.or.kr)에서 뽑은 것이다. 이 두 On-line 정보망은 한국사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한다. 우리 역사에 대해 어떤 검색어를 통해서든지 자신의 학구적 관심을 충족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민변 7월 월례회 「네티즌의 진화과정과 전망」지상중계

곽동수 (한국사이버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학부 교수)
일시 : 2008. 7. 24. 저녁 7시
정리 : 김진



송 2008년 7월 월례회를 시작하겠다. 경제학을 전공하였는데 컴퓨터 통신학부의 교수님이고, 1992년에는 한글과 컴퓨터 창립멤버였으며, 2004년부터 CBS 상상경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인터넷과 컴퓨터 관련된 글을 많이 쓰고 있으며, SOHO(Small Office, Home Office)라는 이름을 한국에서 처음 사용하여 퍼지게 만든 장본인이다. 우연히 컴퓨터와 친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우연’이라는게 어떤 뜻인가?

곽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업무나 생활에서 컴퓨터를 접하게 된 분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던 80년대에는 그렇지 않았다. 한 번 해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으로 거의 처음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 창립멤버가 되었다. 그러다가 컴퓨터를 제일 많이 쓸 것 같은 방송국 등을 중심으로 아래한글을 팔러 다니고,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니 교육을 했다.

그러면서 만난 PD들의 권유로 이리저리한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컴퓨터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돈을 벌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되었다. 64년생이니까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고, 계속 그런 식으로 끌어 오고 있다.

송 홈페이지 이야기도 해 달라.

곽 1996년 남들이 인터넷을 처음 접할 때 처음 만든 홈페이지다. 쓴 글과 방송 내용 등을 모아 놓고, 안 없었더니 13년째가 되었다. 개인사이긴 한데, 일본에서 태어나 한국에 왔고, 홍콩에서도 잠시 살게 되었는데 그걸 계기로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접하는 데 익숙해서….

송 대통령이랑 비슷한데? (웃음)

곽 내 뜻은 아니었다, 그 분은 모르겠지만 (웃음)

송 네티즌들의 인터넷 활용 방법이 속도감 있게 변하고 있다. 블로그, 텀 블로그, 메타 블로그, 그리고 웹 2.0까지…그 중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메타 블로그인 ‘온20’ 이라는게 있다. 그걸 만든 이유가 “최근 20대 대학생의 꿈은 공무원이 되는 것이라는 현실이 슬퍼서, 소통과 연대의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다는 말이 많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풀면서 강연을 시작할까 한다.

곽 강의하고 글 쓰고 말하고 먹고 살려고 하는 생활인이고, 초등학교 4학년인 둘째 녀석이 아파서 빨리 들어가야 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 고민하는 평범한 아빠다. 대개 새벽 4시부터 방송 준비를 하고 방송 끝나면 학교로 가는데, 학교도 건물이 스튜디오라서 거기서도 방송으로 강의를 하면서 프리젠테이션을 한다. Apple 사의 스티브잡스(Steve Jobs)라는 사람도 처음에 연구를 하고 강의하고 그러다가, 떠버려서 아직도 그렇게 강연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오늘 강의하러 오기 전에 거리에 있는 시민들이 모두 왼쪽에 있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여러 곳에서 인터뷰를 하게 된다. 송호창 변호사와 100분 토론에 같이 출연했던 인연으로 여기 오게 되었다. 여담이지만, “패셔니스타가 본 패널”이라는 글도 있던데 송호창 변호사가 1등이고, 그 밑에 “상투적이다”는 글과 함께 제 얼굴이 나왔던데…지금 보면 느끼겠지만 텍스트가 없어도 의미가 전

강사 소개

곽동수의 상상경제
CBS 표준FM 98.1MHz세벽 6시 5분(월~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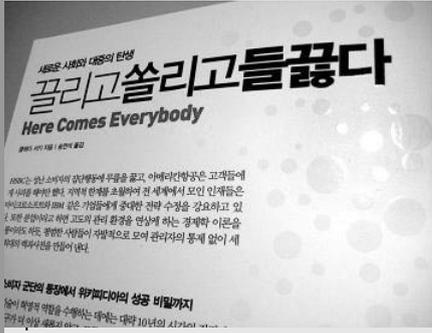


달되는 세상이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인터넷 정보 보호 종합대책」이란 것도 나온다. 사실을 적시한 글은 명예훼손으로, 대충 나쁜 놈이라고 하면 모욕죄로 넣겠다는 뜻이다. 보면서 또 다른 슬픔을 느꼈다. '경제-문화-디지털' 이 하나로 돌아가는 세상인데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한다. 대한민국은 100년 전에는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할아버지는 식민지 백성으로, 아버지는 민족주의 개발지상주의 국가에서 살았고, 아들은 IT 전문가로 살고 있으니, 같은 뉴스를 보아도 3대가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같을 수 없다. 는 이야기를 쓴 적이 있다. 혼란은 당연하다는 거. 중요한 것은 부지런히 일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다.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활용된 것은 12년이 되었다. 근데 12년이라는 과정이 너무 빨랐다.

「끌리고 쏘리고 들끓다」라는 책이 있다. 원제가 “Here comes Everybody!” 라는 것인데 번역을 섹시하게 잘 뽑았다. 이에 빗대서 네티즌의 변천 과정을 설명할까 한다. 원전보다 사진이 괜찮지 않은가? (웃음) 여기 한 부분은 이렇다. “조직 없이 조직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놀라운 조직력을 발휘하는 새로운 대중이 나타났다” 촛불집회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깃발 몇 개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다치니까 의료진이 나타나고 민변이 나타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디로 갈까 리더가 없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변화가 있다. 새로운 흐름이라는 것. 여러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 “빌 게이츠는 죽었다”는 말이 있다. 영향력 7위로 은퇴하였는데, 1위는 스티브 잡스였다. 스티브 잡스에 관한 책을 감수한 적이 있는데,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다. 요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나 입양이 되었고, 대학에 들어갔다가 1년 후에 그만두고 6개월을 기숙사에 얹혀 지냈던 히피 시대의 스티브 잡스. 말년에 뜨고 있다. 스티브 잡스 강의를 좀 들어보자. 개인적으로 좋아한다. 간략한 이야기로 전 세계에 이야기를 한다.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매장을 소개하고, 가격까지 이야기하는... 특이한 사람이다. 삼성전자 사장이 그러는 걸 본 적이 있는가? 반도체 생산 1위인 삼성전자의 MP3가 1위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본다. 스티브잡스는 아이팟을

하루에 한 시간 이상을 듣지만, 어떠한 삼성 임원도 그걸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다. 변화의 물결을 읽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책은 「스틱」이다. 뒷부분이 특히 좋은데 “인류는 뇌리에 달라붙는 한마디를 각인시킨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중요하다”라고 한다. 뭐가 생각나는가?



송 괴담?

곽 그렇다, 괴담은 “말도 안 되는데 진짜처럼 들려야” 괴담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출장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바에 앉아 있는데 늘씬한 아가씨가 다가와서 느낌을 보여주고 호텔방까지는 갔는데 ...그 이후에는 기억이 안 난다, 깨어나니 목

욕탕 벽이 보이고 메모가 적혀 있다 “절대 움직이지 말고 119 긴급구조를 요청하라”는. 그리고 그 앞에는 “심장을 도둑 맞았습니다”라고 써있는 거. 이런 게 괴담이다. 미국에서는 출장을 간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들이 만들었다는 이런 괴담이 실제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다. 활자가 아니라 화면과 영상을 통해 실제 같이 느껴지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도시 괴담’은 인터넷이 아닌 종이 매체가 만들고, 스스로가 그것을 ‘괴담’이라고 부르면서 괴담이 되었다. 기존의 시각으로 본다면 인터넷의 변화가 제대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미국 괴담 이야기를 한 것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도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그 느낌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이다. 칠순을 넘은 아버지는 아들이 방송에 나오면 무조건 좋아하시지만, 조금씩 “밥은 먹겠냐, 일 떨어지지 않냐”는 걱정을 한다. 나름 브루주아라고 할 수 있는 내가 갑자기 선동하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 분류시켜버리면 끝이 되는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촛불집회도 일부 정신 나간 사람들의 선동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아마 지금도 “누군가 뒤에서 리딩을 하고 있을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거다.



학생운동도 제대로 해보지 않았다. 진학을 못하는 친구 때문에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한번 하고, 운동장 세 바퀴 돌 것을 두 바퀴만 돌고 바로 나가라고 했더니 전례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가더라. 그거 사진 찍고 나가는데 “그 동안 숨어 있던 배후”라면서 종로경찰서에 잡혀 갔었다. 그대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아버지 친구분이 거기 있어서 많이 맞고 몇 시간 만에 나왔다. 그런 추억이면 괜찮겠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에서 “누가 ~ 한다더라”는게 괴담이 된 사태가 되었다. 네티즌을 정말 모르고 있는 거다.

디지털 도구에서의 통제는 카약 조정과 비슷해졌다. 기술적 환경에 크게 좌우되는 물길을 따라, 빠르게 떠밀려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도구들의 확산에 대해 약간의 통제력을 갖고 있지만, 방향을 되돌리거나, 멈추거나, 하다못해 핵 돌릴 수 있는 정도의 힘도 갖고 있지 못하다. 우리의 가장 큰 도전은 목적지를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중심을 잃지 않고 몸을 똑바로 세우는 일이다. 그를 형성하는 도구의 발전은 이미 일어나 버린 사건에 가깝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는 것인가"이다. 우리의 사회적 도구 인터넷은 역사에 길이 남을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사회가, 대중이 달라졌다

원인은 사회가 "대중이 달라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잃어버린 10

년을 찾았으니까 10년 전과 똑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끌리고 쏠리고 들끓다」라는 책이 나왔을 때 Business Week에서 「Real World 2.0」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요즘 2.0이 워낙 유행이다. 블로그 2.0, 웹 2.0...말하자면 현실 2.0쯤이 되겠다.

인터넷은 역사에 돌이키지 못할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어디로 갈 것이냐, 이를테면 "선진사회로 갈 것인가"가 중요한 사회가 아니라, 어디로 갈 지 모르지만 가는 동안 의연하고 깨끗하게, 정신을 잃지 않고 서 있어야 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BusinessWeek

Real World 2.0
 is a new book, here comes everybody, author and academic Clay Shirky argues the future is here, it's time to get on with it.
 by Peter H. Rasmussen and Clay Shirky

"Our principal challenge is not to decide where we want to go, but to stay upright as we go there." In his book, here comes everybody: The Future of Organizing Without Organizations, author and NYU faculty member Clay Shirky describes the profound impact of social-technological tools on contemporary culture—from e-mail and blogs to Twitter and wikis.

Shirky's book, an exploration of the development of such tools, is well-timed. Last week, an anti-government protest erupted in Tibet. China moved quickly to quell news of the death by restricting internet access to YouTube as well as banning mainstream news such as the BBC and CNN. But, unbeknownst to many of Shirky's critics, the crackdown failed as protesters bypassed the country's "Great Firewall" by using proxies and VPNs to stream, unlicensed news sites. AOL, on May 23, the state-run news agency, Xinhua, acknowledged that it had ignored four protesters—the first time China made such an admission since the protests began, and arguably a by-product of its failure to limit the flow of information.

다. 역사에 길이 남을 변화를 일으키는 현장에 있다는 것... 내가 디지털 쪽으로 오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게으른 선배가 졸업을 위해 논문을 대신 써 달라고 해서 밤새 워드를 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리저리한 기능을 익히다가 이리저리한 제안들을 생각하게 되어서 그걸 넘기면서 한컴에 조인하게 된 것인데, 인터넷을 쓰는 사람이 효과적으로 바뀌면서 시각도 넓어지게 되었다. 저게 전부려니 하고 세상을 보던 사람이 멀찍이 떨어져 세상을 보게 되었고, 그 밑에 누군가가 낯선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된 것이다.

한 번 시야가 넓어지면, 한 번 새로움을 맛보면 원래로 돌아가기 어렵다. 갑자기 아고라에 글이 쏟아져 나왔고 그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다, 잘 달래면 다시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시대가 바뀌고 있고, 이게 흐름이 되어 가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인터넷'이 있다. 이전에 X세대라는 말이 있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애들이 한꺼번에 똑같이 등장한 것이었다. 벽에는 스타의 사진이, 험렁한 합합 바지를 입고 농구공이 방안에 있는 애들이 싱가폴, 아일랜드, 뉴욕에서 똑같이 등장한 것이다. 어떻게? 팝이나 음악이나 합합을 통해 하나로 묶여졌던 거라면, 디지털은 이것과 비교도 안 된다. 중학교 때 만나 이제 같이 산 시간이 몰랐던 시간보다 더 길어진 집사람과 연애를 할 때, 장인 어른이 엄해서 "한 번 울렸다 끊어지면 내 전화인 줄 알아라"는 암호를 정한 적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웃는다. 부모한테 꾸중을 받으면서도 계속 문자보내는, 그것도 한 두 글자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세대니까. 청혼하기 전에 요리 한 번 해서 감동시키려면 요리책, 백과사전을 보고 아는 사람한테 알려달라고 해도 배우기 어려웠는데...스파게티가 라면 같은 건줄 알았다가 고생만 했는데, 요즘 애들은? "지식에 접속"한다. 「스파게티 만드는 법」이라고만 치면 200가지는 나올 것이다. 엑스세대 이후에 또 다른 공통된 세대가 나온 것이다. 위키피디아의 '코즈의 정리'를 보자. 간단

하게 말하면 이거다. 100원을 투자해서 1000원을 벌 수 있다면 100원을 쓴다. 999원까지도 쓸 것이다. 이런 게 투자일 것이다. 원가가 중요한 것이다. 월례회도 그렇다. 한 번 하려면 에어컨에 복사에 종이...꽤 돈이 들지 않는가. 그렇지만 모두 채팅룸에 접속해 있다면 어떻게겠는가? 돈이 안 들겠지. 이렇게 원가가 들지 않으니 의견이 쏟아져 나오게 된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관리자의 통제 없이 세계 최대의 백과사전을 만들고, 누군가 술을 먹었는데, 누가 아이를 가진 것 같은데, 누가 결혼을 할 것 같은데... 네티즌 수사대가 나서서 사실을 밝히고...결국에는 촛불을 들 때까지. 원가 개념이 없이 그저 "저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갔을 뿐이에요"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그것 밖에 없는 변화의 물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8년 네티즌의 모습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관리자의 통제없이 세계 최대의 백과사전을 만들고, 네티즌 수사결과를 내놓고, 촛불을 든다. 2008년 세계 네티즌의 모습



한국적 디지털 문화

책의 앞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한 사람이 뉴욕의 택시에서 전화를 놓고 내려서, 전화를 해보니 전화가 받지 않아 포기하고 새 전화를 샀는데, 친구들로부터 "누가 니 전화기로 사진을 찍어 메일을 보내서 나에게 메일이 왔어"라는 말을 듣고 다시 전화를 해보았더니 이번에는 받길래 "전화기 내놓으라"고 했더니 "내가 쓸거야"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는다. 열반아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름과 얼굴을 올리고 잡아달라고 했더니, 수 백개의 글이 올라오고,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을 결국 잡게 된다. 그 과정에서 "뉴욕 경찰은 뭘 하고 있냐"는 이야기부터 "그게 분실이지 도난이냐"는 이야기, "안 내놓고 있으면 불법점유"라는 이야기까지...수사본부 없이 해결이 되었고 잠깐 이 이야기가 미국에서는 큰 화제가 되었는데, 우리 네티즌들은 그것보다 훨씬 확실한 거 해냈다. 클릭비 감상혁이 음주운전으로 몇 킬로를 갔는데, 어느 여배우가 아이를 가졌고... 몇 년 전에 다 했던 이야기다. 이제는 "그게 뭐?" 이라는 수준이니, 세계 네티즌들은 우리보다 훨씬 뒤쳐져 있다. 그래서 적어도 디지털 영역만큼은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은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한국이 제일 앞서가고 있다"고 대답한다. 한국적인 디지털 문화 때문이다.

첫 번째는 주입식이라는 특징이다. 한국형 디지털 문화는 '볼링'에서 탁구

NAME	AGE	SEX	HEIGHT	WEIGHT	HAIR	EYES	TEETH	NOSE	EARS	NECK	FACE	HAIR	EYES	TEETH	NOSE	EARS	NECK	FACE
1777	1777	1777	1777	1777	1777	1777	1777	1777	1777	1777	1777	1777	1777	1777	1777	1777	1777	1777
42178	42178	42178	42178	42178	42178	42178	42178	42178	42178	42178	42178	42178	42178	42178	42178	42178	42178	42178
58796	58796	58796	58796	58796	58796	58796	58796	58796	58796	58796	58796	58796	58796	58796	58796	58796	58796	58796
24791	24791	24791	24791	24791	24791	24791	24791	24791	24791	24791	24791	24791	24791	24791	24791	24791	24791	24791
44884	44884	44884	44884	44884	44884	44884	44884	44884	44884	44884	44884	44884	44884	44884	44884	44884	44884	44884
99437	99437	99437	99437	99437	99437	99437	99437	99437	99437	99437	99437	99437	99437	99437	99437	99437	99437	99437
51315	51315	51315	51315	51315	51315	51315	51315	51315	51315	51315	51315	51315	51315	51315	51315	51315	51315	51315
44238	44238	44238	44238	44238	44238	44238	44238	44238	44238	44238	44238	44238	44238	44238	44238	44238	44238	44238
91574	91574	91574	91574	91574	91574	91574	91574	91574	91574	91574	91574	91574	91574	91574	91574	91574	91574	91574
44444	44444	44444	44444	44444	44444	44444	44444	44444	44444	44444	44444	44444	44444	44444	44444	44444	44444	44444
13729	13729	13729	13729	13729	13729	13729	13729	13729	13729	13729	13729	13729	13729	13729	13729	13729	13729	13729
55451	55451	55451	55451	55451	55451	55451	55451	55451	55451	55451	55451	55451	55451	55451	55451	55451	55451	55451
31118	31118	31118	31118	31118	31118	31118	31118	31118	31118	31118	31118	31118	31118	31118	31118	31118	31118	31118
17773	17773	17773	17773	17773	17773	17773	17773	17773	17773	17773	17773	17773	17773	17773	17773	17773	17773	17773
2145	2145	2145	2145	2145	2145	2145	2145	2145	2145	2145	2145	2145	2145	2145	2145	2145	2145	2145
23447	23447	23447	23447	23447	23447	23447	23447	23447	23447	23447	23447	23447	23447	23447	23447	23447	23447	23447
7196	7196	7196	7196	7196	7196	7196	7196	7196	7196	7196	7196	7196	7196	7196	7196	7196	7196	7196



IT 버블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엉뚱한 것이 생겨났다. 붉은 악마와 함께 가장 주목받은 디씨인사이드(http://dcinside.com)가 뜨기 시작했다. 가장 활성화 된 것은 2002년 월드컵과 함께 해외 축구방이 떴고, 개죽이 같은 캐릭터와 함께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쓰기 시작했다. 정말 디씨인사이드에 나온 말들은 여러 가지 면으로 나가면서, 그들만의 용어를 만들어 냈다.

2003년에 지식in이 나타났다. 전문가들이 한 걸로 시작했는데 완전히 달라졌다. “방학숙제는 어떻게”, “엄마가 때리면?” “찌글어져 자”라는 글이 전국에서 올라오기 시작한다. “미린 일기 쓰게 날씨 좀 정리해서 올려주세요”라고 하면, 답부터 훈계하는 글까지 다양한 글이 달리기 시작한다. 불필요한 정보가 나오면 자동으로 스킵하면서 읽게 된다. 지식 in의 등장은 아주 새로운 것이었다. 그 전에도 한겨레 신문사에서 비슷한 것이 있었지만, 인센티브 제공과 정보 분류가 가능했던 포털이 하나까 제대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2004년에는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난다. 최고의 히트상품 싸이월드. 그 의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여자들이 거울을 보면서 어릴 때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라고 묻는다지만, 나이 먹으면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보자. I LOVE SCHOOL에서 열심히 활동했는데 몇몇 애들은 간통으로 잡혀 들어가고 돈 빌려주었다가 폐이는 사람도 생긴다니 허전해졌다. 지식 in에 내가 아는 지식을 다 올려 놓았지만 허탈한 것이다. 여성들은 특히 소외감이 컸다. 이런 사이트들이 대개 남성 중심적인 사이트들이어서, 여성기획자가 만든 조그만 사이트가 뜰 수 있는 조건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또 다른 거울을 가지게 된 것이다. 내가 나를 꾸밀 수 있고 문을 열면 내 방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거기서 한 발자국만 옮기면 친구방, 일촌방을 볼 수 있다. 파도타기. 20-30집 다니고 일촌평 남기다 보면 피곤해진다. 1년이 지나자 “싸이월드 피로감”이 생겼다. 싸이버머인인 ‘도토리’가 뜨면서 인터넷 경제의 근간이 갖추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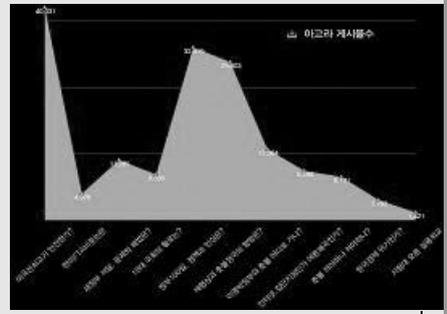
2005년 이런 게 모이기 시작한 게 블로그(Blog)다. 길게 가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넓고 담담하게 자료를 올리고 공유하는 게 중요해졌다.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이 묶이게 시작된 것이다. 2006년에는, 한국 사회에서는 절대로 꺾지 못한다고 했던 방송과 신문이 도전을 받게 된다. 희한한 동영상들이 등장하였고,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이 나뉘어진다. TIME지에 You를 부르는 커버가 등장한다. “이시대 중심은 바로 네티즌 당신입니다”는 기사. 그 옆의 표지는 1982년 컴퓨터가 처음 등장했을 때의 커버다. 24년이 지나고 나서 기계에서 사람으로 돌아온 것이다.

2007년 굉장히 많은 변화 속에서 이런 말들이 등장한다. 이 말들 중 몇 개나 아시는가?

킹왕짱 듣보잡 막강 안습
고고씽 하악하악 지뭇미
편다 흠좀무 떡실신 정줄늘
우왕ㅋ굳ㅋ

듣보잡 = 듣도 보도 못한 잡놈, 안습=안구에 습기찬다, 하악하악 = 야동 같은 것을 보고 흥분되어 내는 소리...편다=짱 이후에 가장 다용도로 쓰이는 말, 흠좀무 = 이걸 시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말인데 “흠 저게 사실이라면 좀 무서운 걸!” ... 등등. 2008년 히트어는 “우왕 ㅋ 굳 ㅋ”란다. 이게 인터넷 좀 아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표준어라는 것이다. 변호사도 집에 가서 디씨인사이드에 접속할 때에는 ‘님들’ ‘홍야’ 이렇게 쓴다. 나이 많다는 거 티 안내려구. 그런걸 써가면서 거기에 갈 때는 그렇게 일탈하게 된다는 것이다. 밤 11시까지 야간 자율학습하고 들어가는 학생들이 무엇을 하고 놀겠는가? 세계 최고로 직장에 오래 있는 직장인들이 업무 외에 자리에 앉아 무엇을 하겠는가? 글 좀 올리고 답글 확인하고, 조희수 좀 올리다가 ... 패션, 육아 이야기와 돌잔치 정보 교환. 가장 붐비는 취업정보 사이트. 각자 생활에 가장 필요한 곳에 쓰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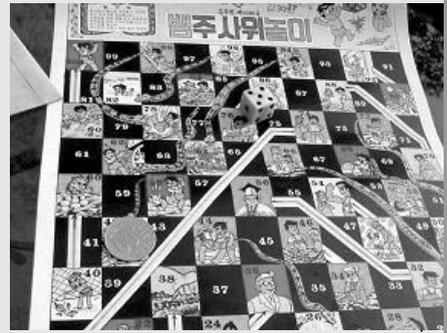
그리고 이것들이 다 모인 것이 2008년이다. 하이텔을 통해 정보 교환의 중요성을 배웠던 네티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된 네티즌... 백분토론 당시 야고라 게시 글을 집계해 봤더니, 미국산 쇠고기 토론이 있었던 5월 8일 때 거의 가장 적었다. 촛불이 꺼져간 상황이 야고라 게시물에서도 보이는 것 같다. 야고라 글이나 아이템을 보면, 네티즌들이 문제제기한 상황이 이제 거의 결과를 향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네티즌들이 무서운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힘을 안다는 것이다.



접속,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어릴 때엔, 인생을 이렇게 주욱 올라가라고 배웠다. 살다보니 주르르 미끄러지는 일도 있더라. 옵션은 주로 이렇다.

플랜 A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대기업을 가는 것이다. 그럼 알아서 다 알게 해준다. 플랜 B는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것이다. 상위 15~20%에 속하는 사람들이 제일 속상한거다. 자기 머리가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대학을 가긴 했지만 마땅치 않은 거다. 플랜 C -내놓은 친구들. 사회에 빨리 적응한다.



플랜A
공부열심히 - 좋은대학 - 대기업
플랜B
그냥 열심히만-대학진학-....
플랜C
계획? 계획따윈 없어!

플랜 A도 플랜 B도 아닌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새로 나오게 된 게 연예인이다. 반에서 50등하는 성적표를 TV에 자신 있게 꺼내어 놓아도, 돈 잘벌고 넓은 주택에 사는 연예인이 나온

플랜A
모범생, 대기업, 성공공식
플랜B
연예인, 인기 = 돈, 10억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탄생**

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1회 700만원 출연료를 본다. 이혁제도 1억이 넘고, 유재석은 얼마야? 이제 단위가 아예 달라져서 박신양은 쯤의 전쟁 번외편 하나로 1억 5천을 받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기업 초봉 3500만원”으로 서러운 사람들은 더 기운이 빠진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10억 열풍이 지나간 사회분위기에서 새롭게 생각을 바꾸게 된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지식이 있어야 성공하는 것이라면, **이제 지혜가 그걸 대체**하고 있다. 3단 기어 차를 잘 운전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면, 이제는 5-6단 기어 차도 문제가 없다. 좋은 차를 고르는게 필요하다. 검색을 잘 해서 좋고 싼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는 나라라고 가르친다. 우리 사회가 디지털만 바뀐 것이 아니다. 스펙트럼이 바뀐다.

연애기술을 선배들에게 전수받았다면, 이제는 인터넷에 모든 것이 있다. 하느냐 마느냐 선택의 시대가 되었다. 지금 젊은이들은 자기 생각이 있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는 훈련도 되어 있으며, 그걸 이야기나눌 사람도 있는데, 할까말까 내가 결정하는 일만 남아 있는 것이다. 자유의지만 남은 것. 구세대에게 럭키치약, 금성사 티브이, 트리오, 삼양라면...전부 하나였고, 빨간 벽은 빨간 벽으로 하나였다면, 새로운 세대에게 빨간 벽이 뭐냐고 물으면 지식인에서 수백장의 사진이 올라올 수 있다.

“잘 보시면 이것도 빨간 벽으로 보입니다” “프리즌 브레이크에 나오는 빨간 벽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파란 벽이 개인적으로 좋던데...” “그건 초록색이죠, 파란 벽은 이거죠?” “벽은 뭐니 뭐니해도 콘크리트가 최고죠” ...이런 글까지 올라오면서 길어진다. 이게 인터넷이다. 전에는 같은 교복과 양복을 입던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지만, 수많은 생각. “빨간 벽”이라고만 하고 디테일을 제시해 주지 못할 때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예쁜 눈, 호수같은 눈”이라고 말하면서 성형수술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사람은 없다. 몇 미리(mm)까지 이야기하면서 수술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구세대와 신세대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보아야 하는 것은 이것이다. “적당히, 이 정도면 되었어” 할 때, 이 친구들은 끝까지 간다. 예를 들어 ‘권상우 커플’. 비교 기사까지 올라온다. 실행까지 나아갈 수 있는 계획까지 나온다. 정말 두려운 것은 TV도 이기기 시작했다는 것. ‘다모’ 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처음으로 드라마 폐인을 낳았던. 그 폐인들이 모여서 주인공 49제도 지내준다. ‘상상플러스’ 는 실시간 검색어를 바꾼다. 힌트가 검색어로 뜨고, 블로그를 띄우려고 정답을 쓰는 사람도 있다. ‘송호창’ 을 치면 ‘송호창 변호사가 자주가는 옷집’이 나오는데 가보면 도박 사이트고... 그런데 ‘민변’ 을 치면 ‘숙변 제거’가 뜨는 건 왜 그런가? (웃음) 상상플러스의 올드앤뉴가 검색어가 되는 것처럼, 컴퓨터와 TV가 만나는 게 낯설지 않다. TV에서 “검색을 해달라”는 멘트가 자연스럽다. 50대 아주머니가 아침 드라마를 ‘다시보기’ 로 보고, 할머니가 손자에게 “고스톱 머니 안 떨어지게 충전 좀 하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이다. TV와 결합, 휴대폰과의 동거가 진행 중이다.

촛불집회에 나타난 힘. 분업하고, 집어넣고, 만나고 하는 것, 오프라인 미팅부터... 그동안의 모든 노하우를 네티즌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로 결집시킨 것이다. 행동할 준비가 내내 되어 있었는데 할까말까 이슈가

없었던 사람들을 뛰어 나가게 만든 것이다. 그걸 실시간으로 보면서 더욱 나가고 싶어졌고, 내 인생을 조종할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

한편 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히트한다. 손가락으로 메일 체크하고, 스프레드시트가 제일 먼저 뜨고 주가 확인하는 거. 아이폰이라는 거. 우리는 연예인 얼굴이 우르르 뜨고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햅틱 폰이 인기다. 창의력 대신 기성세대가 있는 걸 10년째 개량만 하면서 ‘개발’이라고 하는 우리 제품들에 혁신적인 변화가 없다.



「끌리고 쏘리고 들끓다」에서는 **새로운 사회와 대중의 탄생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거기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

한국의 네티즌 문화는 처음부터 ‘참여’ 였다. ‘참여’ 가 아닌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제가 이 자료를 하이텔에서 퍼왔습니다, 천리안이나 나우누리에는 알아서 올려주세요” 자기 전화요금 써가면서 다운받아서 친절하게도 가져가기 편하게 쪼개고 압축해서 올려준다. 돈도 안 되는 걸 왜 하고 있어? “~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써있으니 매일 저녁 들어간다. 사랑받고 싶은 거다. 한국에서 ‘성공’ 이란 반에서 공부 잘하거나 몸짱이나 옷짱도 아니라고 본다. 어떻게 해도 상위 5%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사회를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통사람들이 뻑뻑하게 잘 못 살고 힘들고 구박받지만,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애정받을 수 있는 거 그 공간이 인터넷이었다. 끈끈한 정을 느끼면서 실제 얼굴을 못 보고 나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과. 처음부터 그렇게 ‘참여’ 였는데, 커뮤니케이션과 접속을 통해서 집단지식의 기회를 형성했다. 내가 어제 홈페이지에 “Active X가 지원이 안 되는 ~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된다면서요?” 그랬더니 그 밑에 답글이 달린다 “아이고, 그러게요. 저도 걱정이예요, 한국은 큰일 났어요” 그런데 그 밑에 누군가 “잘못 알고 계시는군요. 이게 올바른 정보입니다”라며 링크를 걸어놓고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어찌 되었든 지혜를 얻고, “우리나라 인터넷 뱅킹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한민국 네티즌은 진화하는 중이다.**

그 진화 과정이 지루할지는 몰라도 지난 10년간을 살펴 보면 행동하는 쪽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 그저 요즘 네티즌들은 이런 바람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정치가는 바르고 믿음직한 정치가.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정치가는 너무 작은 약한 존재이고, 정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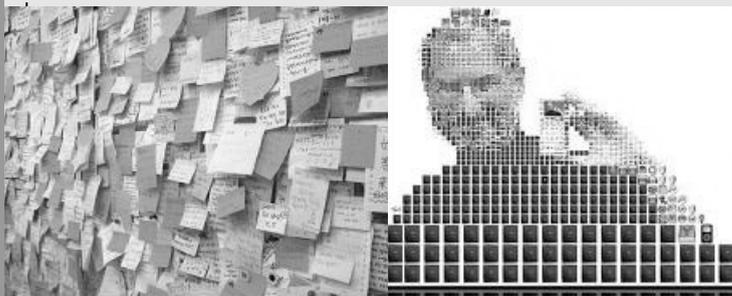
시대는 이미 바뀌었다.
대중도 바뀌고 있다.
그러나 기성세대는
제자리 **변화**

경제를 좀 살려 달라고 했더니 어디서 되지도 않는 힘자랑이나 하고 앉았고.

그래서 많이 짜증내고 있다.

제대로 해라. 이게 2008년 네티즌들의 목소리다. 제대로 하면 아웃 안 해도 상관 없고, 뭐해도 상관 없고. 그저 해산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홍수환과 타이슨을 보면 알 수 있다. 홍수환은 챔피언 먹고 고향집으로



벽을 장식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큰 벽화를 그릴 수도 있지만, 소원을 적은 포스트잇 여러장으로 하는 게 더 이쁘다.

이게 잘 되면 하나의 커다란 그림이 될 수 있다. 잘 안 될 수 있지만,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 하루 아침에 잘 될 수도 없고, 무조건 많이 모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거꾸로 가는 현실 속에서 네티즌들이 어디로 갈까.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려면
결코 **대화**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근간**을 흔드는 불순세력이
아니라, **한국 네티즌** 특징인
동시에 **시대의 요청**이다.

간다. 그렇지만 타이슨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뭘 먹고, 뭘 먹고, 트레이너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었다. 우리가 바뀐 것은 박세리 때부터였다. 박세리의 스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샷트랙에서 어떻게 발을 넣어 승리했는지. 기술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잘 되면 로키처럼 되고, 잘못되면 스트레스 해소한 것으로 될 수 있는데. 갈림길이 2008년이라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다.

챔피언으로 동상을 세워도 시원치 않을 쪽에 10년을 잘못 챙기고 있어서, 국민들은 기다려서 운명에 운을 맡기지 않고, 나아가기로 한 것이다. 살다보면 뻔히 알면서도 걸어내려가야 하는 느낌도 있고, 엄청나게 큰 충격도 받을 수 있지만. 네티즌들은 기뻐서 웃는 미소도, 종류가 다른 각자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인터넷에, 대화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 네티즌은 시대의 요청이다.

디지털 도구에는 통제는 카약 조정과 비슷하다. 기술적 환경에 크게 좌우되는 물길을 따라 빠르게 떠밀려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약간의 통제력은 갖고 있지만, 방향을 되돌리거나, 멈추거나, 핵 돌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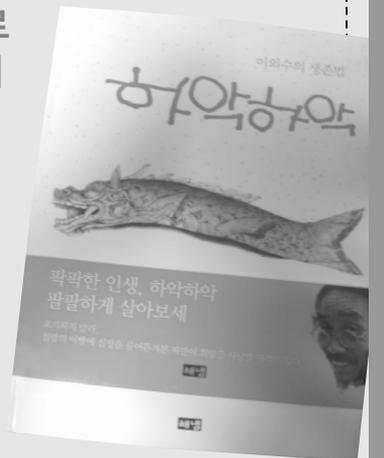
**네티즌의 힘은
거대한 흐름이다**

Amnesty 기사가 뜬지 한 시간도 안 되어, 어느 기러기 아빠가 힘들게 벌어 보내준 돈으로 유학하는 한 아이가 공부하는 안 하고 그걸 번역해서 올린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글까지 번역해서 올리고 있다. 조기교육의 부작용으로 요즈음 미국 드라마 자막도 2시간이면 나온다.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다.

약간의 통제력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정부가 알게 될 지 의문이다. 이런 힘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대화는 더 잘 될텐데.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하다.

“세상을 살다보면 이따금 견해와 주장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고, ‘틀린 사람’으로 단정해 버리는 정신적 미숙아들이 있다. 그들은 대개 자신이 ‘틀린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 자기는 언제나 ‘옳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한다”... 좋아하는 이외수씨의 ‘하악 하악’의 한 구절이다. 저게 퍼져나가면서, 스스로 열심히 글을 써갔던 네티즌들이 문을 닫고 있다. 팀을 꾸려 공동의견을 갖고 의견을 모아 왔던 ‘팀블로그’들도, 정치색을 접고, 의사를 접고 생활로 돌아간다. 커뮤니티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여름 휴가를 지내고 나면 인터넷도 모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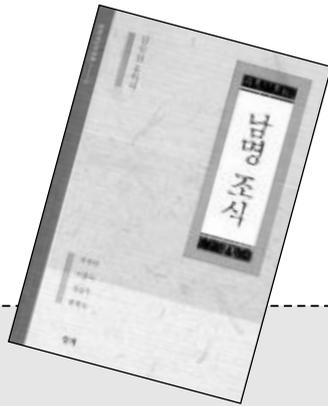
어떻게 될 지 잘 모르지만, 확실한 건, 이게 하루 아침에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흐름이 쉽게 끊어지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



정리 좌세준

제가 하고싶은 말은 아직도 많은데 주어진 시간이 달랑 한 시간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만족해야만 하는데요, 다행인 점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얼마든지 계속 만남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일 겁니다. 휴대폰도 있지만, 전 인터넷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역할을 하는 도구라고 생각 합니다. 라디오를 매일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다보니 그것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일인데요, 들어주신다...

칼을 찬 유학자 남명 조식



「남명 조식-칼을 찬 유학자」 (박병련외 3인), 청계

일시 : 2008. 9. 9.(화) 19:00

참석자(가나다순) : 김선수, 김인숙, 김진욱, 백승현, 유남영, 이오영, 좌세준, 한택근, 황희석

좌세준 몇 분 더 오시기로 하셨습니다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이후 공부모임 주제로는 인물평전을 선택해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책으로 「남명조식-칼을 찬 유학자」를 선정해보았습니다. 발제는 이미 발제문을 보내주신 유남영 변호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유남영 회원들이 읽은 책이 다 다양하네요. 이 책이 없는 분들은 다른 책을 읽기도 하고. 제가 광주에서 변호사를 할 때 홍남순 변호사님이 한 80이 다 되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 분을 처음 본 게 89년도니까, 제가 그 분 보면서 느낀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어요. 평생 요만한 사무실에서 사무장하고 돌이 하시고, 집에도 가보면 살림살이도 별로 없고. 그러면서도 예에 충실하세요. 항상 맞절을 하시고, 법정에서도 보면 늘 아무리 격한 사건이라도 말씀을 격하게 하지 않아요. 하얀 머리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되셨습니까?” 그 분 답변이 “상무대 영창 가서 하루 만에 머리가 하얘지더라”는 거예요. 그 분이 80년에 잡혀갈 때 67~8세였는데 그때 큰 수모를 당한 거예요. 교도관들이 빨가벗겨요. 풍구멍까지 까고..... 그런 수모를 받으면서 머리가 그렇게 썩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지켜보면 늘 온화하세요. 절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늘 미소가 있으신데 집에 가면 굉장히 가난해요.

그 양반 또래 다른 변호사들은 다 집안이 넉넉하고 재벌이라고는 못하지만 재산들이 다 많고 그런데 홍변호

민변공부모임에서는 9월부터 인물평전을 읽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선택한 책은 남명조식입니다. “조선 유학의 전통에 충실한 사람들은 그를 이단적 일탈로 보겠지만, 조선유학의 규모에 답답해하는 사람에게 그는 혁신적 개성이다.”(서문 중에서) 과거의 인물을 통하여 현재를 생각한다. 우리들이 인물평전을 읽는 이유입니다. 신영복 선생은 “미래는 과거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남명 조식에 이어 [이현상 평전]을 읽고 다시 몇 권의 평전을 더 읽을 예정입니다. 과거로부터 배우는 미래-인물평전 함께 읽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사님만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늘 인상에 남았는데 그때 제가 찾아볼 기회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배나 한 두 번씩 가고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모시고 가고 그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왜 그러셨을까? 왜 넉넉하시고 인자하실까? 잘 몰랐었어요.

유학을 공부하게 된 동기-홍남순 변호사에 대한 추억

그런데 제가 광주를 떠나고 어느 날 2002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홍 변호사님이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때 박원순 변호사님과 여러분들이 홍남순 변호사 평전을 만들어요. 그때 제가 한 번 읽어보니까 제가 궁금해 했던 답이 바로 거기서 나와요. 어려서부터 한학 공부를 하셨고, 내 머리 속에 지금도 떠나지 않는 게 하나 있었는데..... 홍변호사님이 80정도 되셨을 때인가 광주에 가면 <금호문화>라는 잡지가 있어요. 금호문화재단에서 만드는 잡지인데 거기 젊은 여기자하고 대답하는 게 나와요. 그게 홍남순 평전 후기에 나오니까. 홍변호사님이 54살 때 강경지원장인가를 그만두고 나와서 광주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몇 년 있다가 바로 3선 개헌 사태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재야운동에 끼어들게 되었어요. 55살인가 먹었을 때인데 그 때 그 양반이 태권도를 배워요. “태권도를 배우니까 경찰들이 때려도 잘 막을 수 있어서 좋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또 67세가 돼서 5.18 사건으로 잡혀가지고 3년인가 복역을 했어요, 그 양반이 복역했던 이야기는 송기숙 선생님 같은 글에 지금도 나와요.

다시 돌아가면 <금호문화> 젊은 여기자가 “변호사님 인생이 아깝지 않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남루하게 살아오셨는데 후회해 본 적이 없으시냐”라고 물어요. 이때 홍변호사님이 논어를 인용해요. 자공이 공자님한테

뭐라고 묻는고 하니 “백이숙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요. 공자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인을 구해서 인을 얻었으면 그뿐이지 무엇을 뉘우치겠는가(求仁而得仁 又何怨)”라고 해요. 요새말로 “지 좋아서 한 일인데 후회가 뭐가 있겠는가” 이거예요. 그게 홍 변호사님 답변이에요. 홍변호사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을 보고 그 양반의 온화한 태도, 겸손한 말씨, 예의있는 몸가짐 모든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논어를 읽기 시작했어요. 홍변호사님을 저렇게 가이드 해 줄 정도의 책이면 내가 읽어볼 가치가 있다. 내가 45살 정도 되었을 때일 거예요. 40대 중반에 내 인생에 뭔가를 알 나이에 논어를 보았어요. 많이 배웠어요. 논어를 보니까 별세계가 있는 거예요. 논어도 읽고 맹자도 읽고, 대학도 읽고 중용은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사변적인거라, 근데 논어같이 재미있는 게 없었어요. 그놈을 딱 덮고 보면 논어의 요점부분은 세 구절이잖아요.

학이시습지 불역열호, 유봉지원방래 불역락호, 인부지이불온 불역군자호
(學而時習之, 不亦悅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而不溫, 不亦君子乎)

이 세 마디에 공자의 일생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이후에 맹자도 좀 읽어보고 대학도 읽어보고 유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유학을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기본적으로 유학이라는 것은 지식인의 책임에 관해서 생각하는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식인이 어떤 태도와 어떤 몸가짐을 가지고 공부해서 사회에 나와서 실천하는가에 관한 학문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서양철학에서와 같은 이원론적 사고도 없어요. 서양과는 달리 지식의 근거를 자연에서 찾는 거니까, 도(道)라고 하는 게 도가에서는 도(道)라고 하고 맹자는 천(天)이라고 하고, 논어에도 천(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유학이 나름대로 시대가 바뀌어 가면서도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귀감이 되고 계속적으로 리바이벌되고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교육과 수양과 책임 있는 실천 그게 인생 전부잖아요.

기독교가 가질 수 없는 것, 불교가 가질 수 없는 것, 도가가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점이 유학에는 있었고 조선 시대 500년 동안 많은 지식인들이나 선비들이 그래서 논어를 배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조선시대 인물 중에 관심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하나는 이순신이고 하나는 조광조예요. 조광조는 지난 번에 한번 했었잖아요. 그리고 남명조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책을 한 번 보자고 해서 보았더니 제가 알지 못하던 별세계가 또 있었어요.

칼을 찬 유학자, 남명 조식

이 책은 네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부분 제목이 ‘남명, 칼을 찬 유학자’ 인데 남명의 제자가 여러 사람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에게 칼을 물려줬다고 그래요. 불가에서 보면 의발을 전수한다고 하는데 이 양반은 제자에게 칼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명이 죽고 그 제자들은 출세를 못해요. 후학이 잘 되어야 학파가 계승

되고 하는 건데, 곽재우 같은 경우는 아예 출사를 거부했고, 의병활동을 하는 도중에도 관군이 곽재우 장군을 토벌을 하려고까지 했었지요. 남명의 제자들은 다른 유학자들에 비해서 남다른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명에게서 칼의 의미가 무언가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 글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처사론(處士論)이에요. 재야에 있는 처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인가, 남명의 공부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조선 유학의 전반적인 흐름 중에서 남명의 위치와 개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한시에 조예가 없는 관계로 별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 자세히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좀 아쉬웠던 것은 유학의 전문연구가가 아닌 사람은 남명 조식이 과연 어떠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중국의 원시 선진 유학이라든지 주자하고 관계에서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었다면 책 읽기가 좀 쉬울 텐데. 유학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책을 읽으면 잘 감흥이 오지 않을 수도 있을 듯해요. 그런 점은 좀 아쉽습니다.

유학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는 자아를 어떻게 형성하고 그걸 잘 확립을 해서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을 갖고 사회에 나가서 실천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쟁이 없는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할까라는 걸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수기치인(修己治人)이죠.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것 말입니다.

내적으로는 성인이 되고 밖으로 나가서는 근왕을 하는 거죠. 임금을 섬겨서 덕화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표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 자아를 형성하는 기준, 어떤 점이 도덕적인지에 대해서는 서양처럼 이원론에 입각하여 규범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도(道)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하고 동양 사람들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 사이언스가 발전하는데 동양에서는 왜 사이언스가 발전하지 않았나’라는 논의도 있지요. 동양에 있어서 도(道)라는 게 규범이잖아요 자연법칙이고, 그 게 뭔가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성인이 되면 알 수 있다는 자기 충족적이에요 순환논리예요. 성인만 도를 알 수 있다, 성인이 되면 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인데, 서양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연과학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진리를 찾아내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했다라는 해석을 하기도 하지요.

사실 공자도 그렇고 도가 무엇이나 이야기를 하면 제대로 답변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노자를 읽어봐도 그렇고 공자를 읽어봐도 그렇고 중용이라든지 다른 어떠한 책에 있어서도 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책은 하나도 없어요. 도에 관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노자를 봐도 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다만 도가도 비상도(道可道 非常道)라고 하고 있죠. 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추상적으로만 설명해요. 그 내용에 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고, 다만 우리 인간의 도덕적인 규범 및 원천을 도라고 하고, 그 근원을 하늘 천자 '天'에서 찾고, 자연(自然)에서 찾는 거죠. 도법자연(道法自然)이라고 했잖습니까. 공자도 성과 도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고 있어요.

유학의 인물형-공자, 맹자, 순자, 주자

여기 제가 인용한 『유학, 우리 삶의 철학』¹⁾이라는 책을 쓴 필립 아이반호라는 사람이 분류해 놓은 것을 보면, 습득형, 계발형, 재조형, 회복형이라는 말이 있지요. 서양의 철학자가 동양 철학을 공부하고 분리해 놓은 기준이에요. 근데 이거처럼 잘 설명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공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학이시습지(學而時習之)이죠. 끊임없이 습득을 해서 공부를 해서 몸에 익혀서 그 몸에서 스스로 우리나라에서 예를 익히고, 그 예에 따라서 사회를 조화롭게 하는 것, 그걸 극기복례(克己復禮)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도덕적 자아를 완성하는 방법이죠. 공자에 대해서는 '습득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난 번 '상군서'를 읽을 때도 함께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무위의 치(無爲之治)'에 대해서 이야기 했었잖아요. 군자가 예에 맞추어 행동을 하고 사회가 그 가르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면 임금은 그냥 남쪽을 향해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된다(南面의 治)는 거예요. 어떤 책을 보면 무위의 치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해 봤던데, 내가보기엔 적절치 않은 거 같아요. '무위의 치'라는 게 뭐고 하니 국민들의 도덕적 감응을 통해서 통치가 스스로 이루어지게 하는 방식이죠. 정치는 정이기 때문에 바른 정치를 펼치면 군은 군다워지고 신은 신다워지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워진다(君君臣臣父父子子)라는 것. 다시 말하면 사회가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 따라서 조화롭게 자기역할을 하고 도덕적 감화에 기초해서 통치하는 것 그게 정명사상인 것이지요. 바로 그런 도덕적인 감화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그윽한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조광조 선생은 지치주의(至治主義)라고 했지요.

조광조가 과거를 치를 당시의 시문이, 공자가 논어에서 자기한테 나라를 맡겨주고 10년이 지나면 길가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줍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중종이 즉위한 후에도 나라가 바로 잡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 번 써보라는 것이 문제였잖아요. 조광조가 그 당시에 지치주의를 주장하죠, 재상정치를 중요시 하고 임금이 직접 다스리지 마라. 현명한 재상한테 나라를 맡기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맹자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은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지요. 그 선한 본성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사단칠정(四端七情)이지요. 그 사단을 잘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립 아이반호의 표현에 의하면 "김매기를 하듯이 농사를 짓듯이 곡식을 빠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잡아 빼도 안 되고 그렇다고 방치해도 안 되고 자연스럽게 농사꾼이 농사를 짓듯이 우리 인간의 선한 부분인 사단을 잘 키우면 호연지기가 생긴다"는 말이지요.

1) 『유학, 우리 삶의 철학(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7가지 길)』, 필립 아이반호, 신정근 역(동아시아)

호연지기가 생겨서 의를 실천하게 된다 이게 맹자의 생각이죠. 이와 같은 군자가 돼서 이들이 정치를 할 때에는 왕도정치가 이루어진다는 거고, 그래서 맹자는 농사꾼이 농사를 짓듯이 자연의 기를 받아서 호연지기를 키워서 잘 나가게 하는 것이고, 아이반호는 '계발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맹자의 호연지기에 관한 부분을 읽어보면 마음에 쏙 드는 부분이 있어요. 맹자는 문장이 굉장히 현란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한문을 배우려면 맹자를 배우라고한 이유가 있어요. 문장자체가 현란하게 되어있고 논리적으로 되어있고 맹자는 금방 읽어보면 맘속에 톡 들어와요. 그에 비해서 논어는 좀 어렵지요.

순자는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재조형(再造型)'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인간의 선한 본성, 사단 이외에도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충동과 욕구와 욕망 같은 것이 있다 이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제2의 본성을 습득해야한다. 말하자면 순자는 사회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자는 덕치가 아닌 예치(禮治)를 주장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순자는 유가에서 법가로 넘어가는 중간에 있다고 평가됩니다.

다음은 주자인데, 선진시대 유학이 한나라, 당나라를 거치면서 도교하고 불교가 성해서 쪽 밀려나지요. 그런데 남송시대 때 주자라는 사람이 도교와 유교에 영향을 받아서 유학의 존재론적인 기초를 닦게 되는 것이지요. 유학이 철학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닦은 것이지요. 공자나 순자나 맹자는 사변적이거나 존재론적인 것에 관해서 이야기 한 바가 없어요.

하지만 주자에 오면 도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 예를 들면 도(道)에 관한 사상, 불교의 공(空)에 관한 사상, 이런 걸 받아들여가지고 인간의 본성을 두 가지로 나눠서 원래의 본성과 물질적인 본성 두 개로 나눠서 본연지성 같은 개념을 이야기하지요.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 맹자나 공자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잘 닦으면 완전한 형태의 도덕적인 자아를 완성할 수 있다. 그래서 주자에 대해서는 '회복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자가 말하는 유학적 세계관과 수행방법에 대해서는 '대학' (大學)에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남명도 '대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마다 수행방법이 많이 틀린데 그중에 격물(格物)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한다'는 것인데,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해야하고, 성인의 말씀을 기록한 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학(經學)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경을 많이 공부해야한다는 견해가 있고, 경보다는 불립문자 깨달음을 추구해야한다는 흐름도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책을 읽어보면 깨달음을 중시하는 사람이 남명인 것 같고, 보통의 선비들이라든가 퇴계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경전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중시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성리학과 남명조식

조선에서는 성리학이 국가이념으로 등장했는데 초창기에는 실행이 잘 안됩니다. 세조때 범당도 세우고 소격서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성리학 이념이 제대로 실행이 안됐고, 그런 상태에서 세조의

왕위 찬탈이 생기고, 연산군에 의한 사회와 중종에 의한 조광조의 사사 등으로 유교가 국가이념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많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조선 성리학의 도통은 목은 이색에서 찾습니다.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로 이어지고, 김숙자, 김종직, 김굉필, 조광조로 이어지는데, 조광조가 출사한 이후 정치적으로 파장이 있을 때마다 김종직과 김굉필을 문묘에 배향할 하느냐가 쟁점이 되요. 한국 현대사에서 김구나 박헌영, 여운형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승만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뭐 이런 문제와 비슷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요.

사림파는 훈구파와 투쟁을 통해 정계에 진출을 하게 되고 퇴계, 율곡에 이르러 분수령을 이루는데, 율곡은 치인의 측면(經世性)을, 퇴계는 수기의 측면(倫理性)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퇴계는 존재론적으로 분석적으로 공부를 하고 들어 갔죠. 고봉 기대승과의 논쟁도 그러하구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명 선생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퇴계에 의해서 성리학이 교조화 되는 것에 대해서 칼로 무 자르듯이 비판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요즘 공부하는 자들을 보건대, 손으로 물 뿌리고 비질하는 절도도 모르면서 입으로는 천리를 담론하여, 헛된 이름이나 흠쳐서 남들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欺世盜名) 그러다 도리어 남에게서 상처를 입게 되고 그 피해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아마도 선생 같은 어른이 꾸짖어 그만두게 하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남명의 공부방법 - 실천적 지식인을 위한 지향

남명이 퇴계에게 보낸 위 글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남명이 오건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당시의 학문풍토를 가리켜 <당나귀 가죽에 기린의 형상을 뒤집어 씌운> 것 같더라는 비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새 이런 정도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정도라 하겠습니. 이외에도 남명은 오직 상달만을 주로 하고 하학을 궁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물건은 사지않고 맨날 흥정만 한다>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성리학의 사변화에 대한 맹렬한 비판입니다. 남명은 많은 저서를 남기지도 않았는데 <주자 정자의 말에 털끝만큼도 더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남명의 학문에 대한 태도입니다.

남명이 세상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다만 실천해 나가는 일만 남아있다.>고

한 것만 보더라도 남명의 공부법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문제는 다만 실천에 나가는 길만 남았다.”라는 것이지요. 남명이 인용해 놓은걸 보면 “모름지기 마룻바닥 아래에서 수레바퀴를 깎는 사람도 세상사는 법을 다 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실천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명이 추구하는 지식인의 전형적인 모습은 실천적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법, 진법, 농학을 다 공부하고 정상우도와 정상좌도 중에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일으킨 사람은 거의 남명의 제자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명의 출처론(出處論)에 관한 것인데, 언제 나가고(出) 언제 머물 것인지(處)에 대한 논의입니다. 퇴계나 율곡을 위주로 하는 유학자와 남명을 중심으로 하는 유학자들의 출처론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요. 결과적으로 광해군 이후 복인 자체가 몰락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여정부 당시 정계에 일정 부분 몸을 담았던 민변 인사들을 보면서 복인을 보는듯한 느낌을 가지기도 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남명의 출처론은 한 번 생각해 볼만도 하지요.

남명의 현대적 해석

정리하면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느꼈던 것은 크게 네 가지 정도예요. 첫째, 조선의 지식인 사회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 사림의 유학적 세계관이 퇴계, 율곡에 이르러 교조화되는 것에 대해 남명과 같이 강력한 비판적 흐름이 존재했다는 사실이지요. 둘째는, 앞서 참여정부 당시 우리 민변 변호사들의 참여에 대해 이야기 한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의 지식인들의 출처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 오면 출사를 할 수도 있을 텐데 남명 정도의 생각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셋째, 교육전반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미숙의 『호모쿠파스』에도 나오지만, 천자문 첫 구절은 ‘천지현황’ 이지요. 우주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주라고 하는 것이 시간과 공간을 의미하지요. 세상에 대한 철학적 해석을 교육의 시작으로 삼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정보의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반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남명이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예전에 보았던 사서를 다시 한 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세준 예. 감사합니다. 중국유학의 전통과 조선 유학의 흐름까지를 포함해서,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까지 폭 넓은 내용에 대해 정리해주셨습니다. 이 책을 읽지 않더라도 유변호사님 발제만으로도 충분히 토론이 될 듯합니다. 이 책을 읽고 느끼는 점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시지요.

유남영 참고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덧붙인다면, 유학에 대해서 “봉건시대 신분체제 유지를 위한 학문이다”라고 한마디로 말하는 것은 지나친 듯합니다. 사회에 있어서 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유자들이 실현하고

자 했던 왕도정치 체계가 유지하려는 것이 신분제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핵심테마, 즉 “도덕적 자아를 완성하고, 도덕적 자아에 기초해서 사회적 실천으로 나아가고 조화로운 세계를 구상한다.”는 유학자들의 학문하는 태도나 경세론은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유자들이 느끼는 삶의 의미 그걸 위해 노력하고 정진하는 태도, 그런 면에서 본다면 현재 우리들은 너무 경박하다고 할 수도 있지요.

좌세준 저도 유변호사님이 이 책을 읽고 느끼셨다는 첫 번째 생각에 공감을 했습니다. 조선 유학자들의 학문하는 태도가 요즘 시각으로 봐도 대단했다는 것이지요. 퇴계와 고봉의 이기 논쟁도 그렇습니다만, 치열한 면이 발견되지요. 이 책에도 남명이 퇴계에게 보낸 글을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퇴계가 조정이 부르는데도 출사하지 않는 남명을 탓하면서 군신의 의리를 묻습니다. 남명은 답하기를 “공은 서각(犀角)을 태우는 명철한 안목이 있지만, 나는 물동이를 인 듯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듯 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학자로서의 비판의 강도가 대단히 명쾌합니다. 퇴계와 남명 두 사람은 살아 생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만, 요즘도 흔히 보기 힘든 치열한 논쟁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희석 친구들과 지리산에 함께 놀러갔다가 오는데 남명조식 사당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남명의 영향력이 남아 있는 진주나 경남 지방에서는 어렸을 적부터 남명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진주성의 김시민, 곽재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남명은 참 ‘큰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문제를 좀 발전시켜본다면, 중국에서는 청이 들어서면서 유학 중심의 시대가 종언을 구하게 되는데, 오히려 조선 후기에 오면 조선은 스스로 ‘소중화’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현대에서는 유학이 수기차원의 학문은 될 수 있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서 어떤 새로운 이념 체계로서 존속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남영 당연하지요. 유학이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 어떤 새로운 이념체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거나 유학의 이념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요. 내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것은 그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겸손하고 사특하지 않고, 여기에도 무사(無邪)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정신이 없으면 남한테 폐만 끼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유학 체계를 다시 건립할 수는 없는 거죠.

백승헌 유학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유학체계가 서양학문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유학은 인식론을 포함한 철학이라는 측면과 아울러 경세학이라는 측면, 그리고 자기를 수신하는 수신학의 측면이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제 생각으로 현재에도 우리 사회에 있어서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있는 것은 수신의 학문이라는 면이 아닌가 합니다. 그 밖에도 유학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학문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 ‘내재화’ 되어 있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양반의 학문이라서 양반에게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유학이 갖는 의미는 바로 이런 점에서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명 조식에 대해서 본다면 이황, 송시열로 이어지는 확립된 이념체계와 대비되는 측면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에는 조선 유학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면이 아닌가 합니다. 만약 남명계열의 이런 측면이 살아남았다면 조선시대 유학의 경세학으로서의 측면이 퇴영적으로 흐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남명을 개인적으로 평가해보는다면, 그 이념이나 내용이 격렬한 것이라기보다는 방법론이 격렬하다 보니 내용이 래디컬해보인 측면이 있다고나 할까요. 결국 방법론은 래디컬한 면이 있지만 내용을 보면 여전히 ‘유학자’ 임은 틀림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에서 남명학의 전통을 실학으로 연결하는 것은 약간 억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남명의 생각이 과연 실용적이었느냐라는 의문이 남는 것이지요. 이외에도 경세는 대단히 유연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 남명에게는 그런 면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이가 남명을 평가하면서 경세의 방법으로는 적당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황희석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히려 유성룡이 남명보다 경세의 측면에서는 현대적 시각에서 새로운 평가를 받는 듯하기도 합니다.

유남영 경상좌도에서 퇴계 이후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유성룡과 학봉 김성일이잖아요. 김성일이라고 하면 잘 아다시피 임란 직전에 일본에 갔다와서 일본이 침략할 것 같지 않다라는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김성일을 따라갔던 일개 무관인 종사관은 일본도를 사가지고 옵니다. 왜가 반드시 조선을 침략할 것인데 그때 왜놈을 बे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었지요. 결국 유학의 정통이었다는 학자가 자신을 따라갔던 일개 무관만도 못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지요. 그리고 이후 일본에 갔던 많은 유학자들도 일본의 발전하는 모습에 대하여는 별다른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유학이 조선의 유학과는 달리 버릴 것은 버리고 실용적인 면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주목하지 못합니다.

백승헌 일본은 양명학을 유학의 한 분파는 물론 정통이라 할 정도로 취급하지만, 우리는 양명학을 사문



난적으로 처벌하기까지 했던 점도 차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오영 저는 남명이 쓴 글들을 읽으면서 다른 책 읽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인데, 글이 무겁지 않으면서도 아주 강렬하고 뜨겁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율곡 이이는 남명약전이라는 글을 통해서 남명을 평가하면서 “경세제민의 방책은 되지 못하였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문정왕후를 일개 과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상소문을 올릴 수 있을 정도라면, 군신관계를 떠나 남명은 처사인데 조선시대에 그래도 언로가 트여있었던 면이 있다는 생각도 들었구요.

김진욱 예전에 IMF 사태가 왔을 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쓴 사람은 성리학을 아주 비판적으로 본 것이죠. 아직까지도 유교적 사상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결과보다는 동기의 순수성을 이야기한다든지,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부정적인 면 중에서 유학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되는 것을 지적했던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예컨대 국부론을 쓴 아담스미스는 그런 말을 하잖습니까. “어느 빵집 주인도 이웃사람을 위해서 빵을 만들지 않고, 어느 방앗간 주인도 옆집 사람을 위해서 방아를 찧지 않는다, 어느 구두장이라도 옆 사람을 위해 구두를 만들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의 도덕적 선의와는 관계없이 경제나 사회현상이 결정될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반면 유학에서는 도덕적 선의 자체를 중시하면서도 일의 결과를 덜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사고방식은 점점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있습니다.

유남영 지금 유학이 우리 몸 속에 있지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울 때 군자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홍익인간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군자교육을 받고 자라요 어렸을 때부터, 특히 남자들이 더욱 그렇지요. 우리 때만해도 남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늘 교육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유학에서 나오는 군자교육을 받거든요. 그런 교육의 영향이 아직도 나타나지요. 예를 들어 대통령에 대해서 쓴 사설이나 칼럼을 보세요. 다 왕도정치의 논리 아닙니까. 서양 사람들이 쓰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 몸 속에 이미 유학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논어의 논리가 훨씬 더 생생한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맘이 확확 와 닿아요? 나는 별로던데.

웃음

좌세준 마치고 우리들 몸 속에 유학적인 발상이나 습관이 유전자처럼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김선수 변호사님께서도 책을 읽은 느낌을 얘기해 주시지요.

김선수 예.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유학에서 말하는 수기나 출처론은 여전히 배울 만한 것이 있고 유용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실천을 중시하는 남명의 사상은 직접적으로 참고할만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또 하나의 사실은 조선시대 당시 지식인이라 할 수 있는 선비들이 편지를 쓰고 시를 주고받을 때 차운하여 답하는 모습이라든가, 그 시대 지식인들의 교류를 보면서 요즘 지식인들의 교류는 어떠한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남명은 지리산을 여러 번 갔었다고 하는데 유람을 하면서도 간인간세(看人看世)하는 모습을 보

면서 요즘 저도 산행을 많이 하는데 산행하는 태도를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간목(看木), 간토(看土)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라서.

웃음

이오영 나무만 너무 보시지 마시고 세상을 보자, 이거지요.

김선수 그리고 남명이 올린 상소를 보면 현실인식이 매우 구체적인 면이 엿보입니다. 예를 들어 임란 20년 전 조선의 상황인데, 하급관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한 면은 뜻보이는 면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그와 같은 현실인식을 개혁으로 성공시키지는 못한 면이 있습니다만.

유남영 지식인들과의 교류 이야기를 해서 말인데, 홍남순 변호사 평전에 보면 홍남순과 장준하의 사귀, 만남이 나오는데요. 한 번 읽어보세요, 가슴이 훈훈해져요. 대인들끼리 사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훈훈해 집니다. 이런 면을 보면 요즘도 유학자들간의 교류와 같은 모습이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백승헌 사실 사회전체로 보면 우리 민변 변호사들끼리의 사귀 정도라면 꽤나 품격이 있는 것이예요.

웃음

좌세준 오늘 공부모임에 오랜만에 나오신 김인숙 변호사님께서도 한 말씀해주시지요.

김인숙 예. 저는 이번 기회에 남명 소식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우리 선조들이 정말 치열하게 살았는데 다시 한 번 그런 자세를 배워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구요. 제가 요즘 『관자』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사실 읽어볼수록 그 책을 청와대에 보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명처럼 한 번 나가면 세상을 흔들만한 그런 기상과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좌세준 마무리하자면 남명 소식을 통해서 수기나 출처론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출(出)도 중요하지만 처(處)도 중요하다. 남명은 죽으면서도 처사임을 자처했다는 데 현대 지식인들에게도 진정한 처(處)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석해준 회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9월 첫 주 공부모임을 마치고도록 하겠습니다. ✎

글 좌세준 회원

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아시아지역 워크숍 참관기



ICC 지역회의/2008. 06. 26~27 베트남 하노이

필자는 지난 6월 말 촛불집회로 전국이 뜨겁게 달구어지고 이정희 국회의원과 민변의 이재정, 강영구 변호사가 연행되어 정신없이 바쁠 때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ICC Regional Workshop in Vietnam(이하 ICC 회의)에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김병주 변호사와 함께 한국 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번 ICC 회의는 지난 2006년 헤이그에서 열렸던 ICC State Parties Congress(당사국 총회)에서 CICC(Coalition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재판소를 위한 NGO 연합) 참석자들이 베트남에서의 ICC 지역 워크숍을 제안하였다.

이를 베트남의 법률가 단체인 The Vietnam Lawyers Association(베트남 법률가 연합)에서 수용하고 CICC와 베트남 주재 네덜란드, 영국, 스위스 대사관의 후원을 받아 성사되었다. 아시아 각국에서의 ICC 이행입법 관련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ICC 설립근거인 로마규정(Rome Statute)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베트남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의 로마규정 비준과 이행입법을 촉구하는 것이 이번 워크숍의 목적이었다.

ICC 회의

6월 26일~27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ICC 회의는 크게 4가지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제1 세션은 ICC에 관한 소개, 아시아 지역의 ICC 비준과 이행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ICC 특별검사실의 Ms. Olivia Ouittner Swaak-Goldman와 CICC 아시아 태평양 코디네이터 Ms. Evelyn Balais-Serrano가 발제를 하였다.

제2세션은 ICC 로마규정 가입과 이행에 대한 아시아지역 경험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의 Xiumei Wang 교



CICC 아시아태평양 코디네이터 Evelyn

수와 일본의 Takahiro Katsumi JNICC 사무총장, 라오스 법무부 소속 Ms. Sommany Sihathep, 한국의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김병주 변호사의 발표가 있었다.

제3, 4세션은 베트남의 로마규정 가입에 관한 전망으로 베트남 법무부와 외무부 각 담당자들의 발표가 있었고, ICC 이행입법을 한 한국의 선례와 베트남 현행법과 ICC 이행입법간의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로 진행되었다. 회의가 조직되었을 때부터 주최 측이 한국 대표인 민변에 요청했던 것은, 다른 참가국(중국, 일본, 필리핀, 라오스)보다 한 단계 높은 ICC 로마규정의 서명과 비준에 이어, 2007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제형사재

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과 NGO로서의 활동경험에 대한 공유였다.

그래서 민변에서는 제1발제로 “로마규정의 비준과 이행입법”을, 제2발제로 “ICC 이행입법의 문제점”을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였다.

아시아 국가의 사례 및 현황 요약

세부적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발제를 담당한 CICC 아시아 태평양 코디네이터 Evelyn은 1998년 7월 17일 채택된 ICC 로마규정이 10년이 지난 2008년 6월현재 비준 국가가 총 108개국인데, 아시아 지역에서는 캄보디아, 동티모르, 한국, 몽골,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일본 7개국만이 서명, 비준하였고, 필리핀, 타이,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5개국은 서명을 하였으나 비준하지 않았으며 일본과 한국만이 비준 이후 ICC 이행입법을 한 상황임을 밝혔다. 또한 미국과의 BIAs(Bilateral Immunity Agreements, 불처벌 쌍무협정)를 동남아시아 7개국이 체결하였으며, APIC(the Agreement on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Court, ICC 면책특권협정)에 서명한 나라는 몽골과 한국 2개국이고, 비준한 나라는 한국 밖에 없는 아시아 지역의 우울한 현실을 제시했다.

한국과 더불어 이행입법을 한 일본의 사례를 발표한 Takahiro Katsumi는 2007년 4월 27일 비준과 더불어 이행법안(implemetation bills)이 일본 의회를 통과하기까지의 사례를 발표하면서 일본에서의 성공(?)의 비결을 관료주의(Bureaucracy) 측면에서 진단하고, 간명하면서도 인상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위의 흥미를 끌었다.

라오스(Lao PDR) 외교부 국제조약국의 Sommany Sihathep는 발표문을 통해서 ICC 가입, 비준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워킹그룹(Working Group) 활동을 소개하였는데,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ICC 기본지식과 이해를 위한 연구와 조사가 2000년부터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ICC 로마규정에 대한 라오스 정부 관리와 관련자(법률가, 경찰, 군인 등)들의 낮은 이해수준과 자국 내 형법과의 충돌 등 어려움이 있음을 발표하였다.

민변의 김병주 변호사는 첫 번째 발제 “로마규정 비준부터 이행입법까지-한국의 경험”을 통해, 로마규정의 내용을 초안할 당시 적극적으로 기여했던 한국 정부가 2002년 11월 비준 이후 무려 5년이 경과한 2007년 12월 21일야 비로소 이행입법 한 사례를 설명하면서 그 기간 동안 민변을 포함한 각 인권단체의 강력한 입법 촉구 활동과 ICC 재판관 선거 참여, 아시아 지역 ICC 관련 단체들과의 연대활동, ICC 이행입법에 호의적인 정부관료의 역할 등 비준에서 이행입법까지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앞서 아시아 지역의 ICC 현황을 발표한 Evelyn은 다시 필리핀 상황을 발표하면서 1998년 ICC 로마규정 채택 시부터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고 2001년 4월 ICC에 서명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국회비준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연대기적으로 설명하였고, 더불어 ICC 비준 및 이행입법을 위한 PCICC(Philippine Coalition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필리핀 국제형사재판소 연합)의 지속적인 활동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김병주 변호사는 두 번째 발제인 “한국 이행입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통해서, 이행입법이 제정

되었다는 사실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보편적 관할권의 원칙(the principle of universal jurisdiction), 고위 관료에 대한 면책 및 사면권의 미규정, 사형제(death penalty), 배상규정, ICC 판결의 강제규정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한국 NGO들에게 부과된 과제를 발표하였다.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발표중인 한국측 대표 김병주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개인적으로 유엔인권조약기구 심의회의를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참석해본 국제회의였다. 각국 참석자들의 발표와 플로어의 질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각 국가별로 처한 역사적 배경이나 진행과정이 서로 비슷하지만 또한 서로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예컨대 아시아 지역에 가장 먼저 비준과 이행입법을 한 한국과 일본은 서명과 비준, 그리고 이행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기간 공백기가 있었는데, 이 기간 중 시민사회(관련 NGO와 학계 포함)의 지속적인 활동이 있었음은 물론 비준과 이행입법의 키를 쥐고 있는 정부 측에서도 일정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 서명은 하였지만 비준이 되지 않은 필리핀의 경우, 시민사회 내에서 비준과 이행입법 관철을 위한 의지는 있었으나 그 영향력이 미미하였고, 정부나 국회 차원의 의지가 부족한 관계로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라오스 정부 측 인사와의 대화를 통해 라오스에서는 시민사회의 활동이 거의 없는 관계로 라오스 정부가 ICC 로마규정에 서명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동력조차 없음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베트남 또한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여러 국가들이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ICC 비준을 꺼려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플로어 질문 등을 통해 한국의 경우(ICC 비준+이행입법+BIAs불체결+APIC체결)가 모범이 될 만한 사례로 소개되었으나 필자로서는 현재의 한미 관계를 비추어 볼 때 씁쓸하기도 하였다. 아마도 아시아 지역의 ICC 현황은 각국의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활동과 영향력, 더불어 정부당국의 의지들의 조합에 따라 비준과 이행입법의 좌표 어디쯤에 배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모두에게 여전히 갈 길은 남아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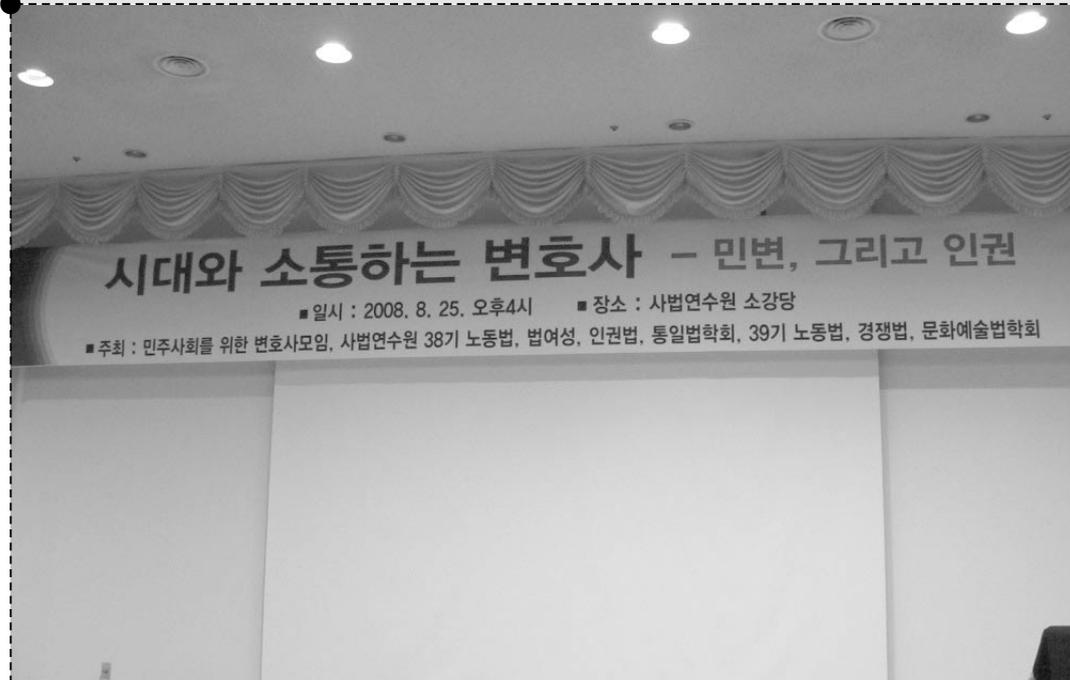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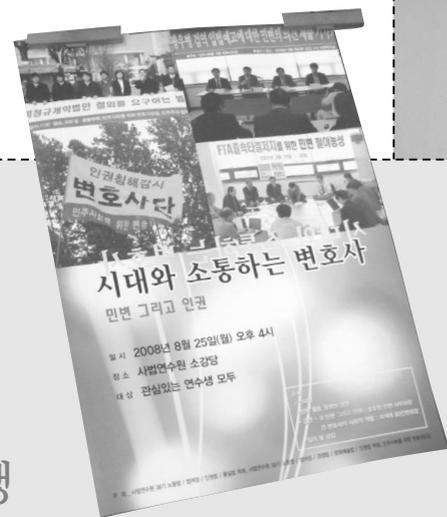
집단 살해,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 그리고 침략범죄 등의 극악 범죄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국제공동체의 결연한 의지의 표명인 ICC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양산하고 있는 미국은 여전히 자신의 동맹국들에게 BIAs를 강요하고 있다. 최근 ICC는 다르푸르(Darfur) 학살 전범으로 수단 대통령 오마르 알 바시르를 기소하였으나 그는 여전히 각국을 돌아다니며 ICC와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

ICC의 영향력과 위상을 읽을 수 있는 사례이다. ICC 로마규정 채택 이후 10년의 역사는 아시아 각국에게 아직도 많은 이들의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 지역 다른 나라들에게는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겠지만 스스로를 성찰해보면 여전히 ICC 로마규정 이행법률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작업과 함께 많은 국민들의 공감과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러한 활동의 상당 부분은 바로 한국 시민사회의 몫이라 할 수 있다. ✎

글 이동화 간사(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연수원 설명회를 다녀온 후



연수원에 가보고 싶었던 법대생

나는 법대생이다.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지만, 현실에서 법(혹은 정의)을 실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의 일이다. 그 벽은 높고, 좋은 지능과, 꽤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법조인의 꿈을 꾸는 사람이라면 연수원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을 것이다.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에 대한 기대보다는, 넘기 힘든 벽을 넘은 사람에 대한 부러움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연수원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 하여 개인적으로 견학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공간이라 한 번도 가보지 못했었는데, 민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계기로 연수원에 가 볼 기회가 생겼다. 연수원은 어떤 곳인지, 어떤 분위기일지 설레어 밤잠을 설쳤다. 어떤 옷을 입고가야 할까, 연수원 생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연수원에 도착했다.

연수원생들은 민변에 관심이 있나?

연수원생들에게 민변을 소개하는 설명회는 연수원 내 소강당에서 이뤄졌다. 간혹, 법률봉사를 통해 친해진 연수원생들도 보였지만, 대부분 낯선 연수원생들이었다. 내심 소강당이 꽉 차있길 기대했지만 아쉽게도 군데 군데 빈 자리를 찾아볼 수 있었다. 법조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해야 할 공부양도 엄청나고, 같은 시간 수업이 잡혀있어 참석을 못했었지만 내심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게 민변은 정의의 입장에서 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더 많이 알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홍보하고 싶은 마음이 앞선 탓이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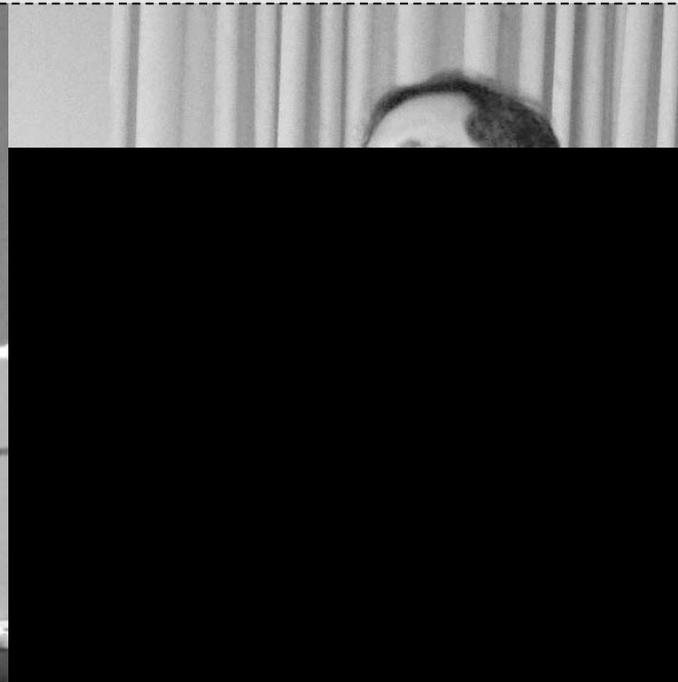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참여한 대다수의 학생들은 민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연수원의 경직된 분위기와는 달리, 민변의 자유스러운 분위기 탓일 수도, 정의로운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변호

사님들의 민변의 활동과 걸어온 길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자기 업무와 병행하는 민변 활동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들의 뜨거운 시선에서, 민변 변호사들의 설명에 귀 기울여 듣는 모습에서 나는 미래 법조인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설명회가 그네들의 관심에 못 미친 것은 아닐지 하는 걱정마저 들었다. 희망을 쓰고자 하는 연수원생들에게 너무 막연한 설명만 나열하고 와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 것은 아닐까?

또 다른 설명회를 기대하며.



편집자

2008년 8월 25일(목요일) 오후 4시에 사법연수원에서 '시대와 소통하는 변호사-민변, 그리고 인권'이라는 제목으로 민변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민변과 더불어 1년차 연수생 인권법, 노동법, 법여성, 경쟁법, 문화예술통법 학회와 2년차 연수생 인권법, 노동법, 통일법, 법여성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 설명회에서 송호창 사무차장과 이석태 변호사가 민변에 대한 설명과 변호사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연수원



법조인이 되는 길은 예전처럼 사법고시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로스쿨 등 다양한 통로가 생겨나고 있는데 이를 대비하여 민변의 홍보를 늘려야 할 것이다. 민변을 알리는 길을 다소 확충하여 각 대학을 찾아가 정의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에게 민변을 홍보하고, 더 나아가 청소년계층에게 까지 민변의 역할을 알리는 것은 어떻게 하고 조심스레 건의해본다.

하나 더 꿈을 가지자면, (단순히 신분 상승으로써의 법조인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써 민변에 가입하기 위해서 법조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본다. ✎

글 김나은 민변 자원활동가

노동법학회 지도교수인 노정희 교수의 인사말도 있었습니다.

이 설명회에는 75명 정도의 연수원생들이 참가했는데, 사법연수원에서 민변에 대한 공식적인 첫 설명회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설명회에 이어 가진 1, 2차 뒤풀이에서 자리를 같이 한 많은 연수생분들로부터 민변의 현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질문과 이변을 계기로 민변과 함께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들으면서 새로운 희망이 샘솟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김응조변호사를 추모하며

9. 4. 목요일 어스름녘. 김응조 변호사의 부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제 입원을 했는데, 친한 사람들 몇이 와서 보고 가라는 거였다. 우선 한결의 두 노털, 유중원, 차병직과 함께 삼성병원으로 달려갔다. 잠시 함께 놀아주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김변호사는 인공호흡기를 끼고서 뼈죽 말라버린 앙상한 두 다리를 좌우로 버둥대며 호흡의 고통을 참고 있었다. 이렇게 허약해져 버렸단 말인가. 우리는 그런 모습에 놀라 망연히 바라보지만 했다. 간신히 손을 뻗어 그의 손과 다리를 만져보니, 이전에 악수하며 느꼈던 그의 따뜻한 체온은 전해오지 않고 차갑기만 했다. 막동이 딸 정민이는 차마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 발등 쪽에 시선을 꽂아두고 있었다. 이런 아버지를 상상이나 해 보았을 것인가.

울적한 분위기를 어찌 해 보려고 유중원이, 옛날 유중현 등과 김변호사의 고향집을 방문하고 수박 3개를 얻어가지고 백운산 정상까지 배낭에 넣어 가지고 갔다가 먹지도 않고 다시 가지고 하산한 이야기를 꺼내었는데, 순간 김변호사가 활짝 웃는 것이었다. 그러자 그의 부인도 너무 좋아하며 계속 말을 거는데 그는 몇 번인가 웃음을 보였다. 기운이 쇠진하여 눈을 뜨지도 못한 채. 우리가 병원을 떠나고 40분 만에, 입원한지 단 하루 만에 그는 숨을 거두었다.

경남 하동군 적량면에서 막동으로 태어난 김변호사는 진주고등학교를 거쳐 1977년 서울대 법학과로 진학했다. 바야흐로 박정희 정권이 간첩조치라는 최후의 칼을 뽑아 들고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변혁의 시대였던 만큼 그도 저항에 동참하였다. 이런 활동을 지속하려면 뜻이 맞는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 끝에 당시 여학생회를 이끌던 부인 이재인 여사를 사귀게 되었고, 결혼하여 한준, 정은, 정민 등 세 남매를 두었다. 막동이는 고1 재학생이다.

법무관을 마치고 한동안 변호사 업무를 한 뒤 민변에 들어와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회원간사를 맡고 여러 시국 사건의 변론에 동참하였다. 나와 함께 영월지원에서 파업 관련 광부들을 변론하기도 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

론'에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글을 기고했을 때엔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비록 그 후 그 체제 속에서 한결을 이끌지 않으면 안되었지만. 그의 장례식장은 그를 잃은 사람들의 슬픔으로 차 있었다. 그 자리에서, 그로부터 잊을 수 없는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것을 알고 무척 놀랐다고 이상희는 후에 실토했다.

나는 그의 투병생활을 잊지 못할 것 같다. 그는 투병 중에 한결 사람들에게, 심지어 그의 가족들에게도 한 번도 힘들어 하는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 달 전까지도 거의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곤 했다. 불과 몇 달 전에 나는 암은 10년, 20년간 발병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가 진지하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항암제의 여러 가지 속성을 그를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의 의연함은 어떻게 그의 내면에 자리하게 되었을까. 궁금하다. 그의 부인은 2년도 안 되는 그의 투병생활을 보고 그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잘' 죽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이가 들면서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이라고 나름대로 정리한 내게 그는 큰 감동을 주었다. 내가 이를 밤을 장례식장에서 엄청나게 퍼 마셨는데도 별다른 후유증이 없었던 것은, 그런 느낌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글 박성민 회원



배슬배슬 웃곤 하던 그, 술 시원히 잘 마시던 그가 저쪽 세상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저 평히 쉬게나. 김응조.

「민변 세대공감」에서는 신입 또는 초년생 회원들과 원로 회원들의 진솔한 자기 이야기들을 실습니다. 이번 호에는 지난 촛불집회에서 큰 부상을 입어 많은 동료, 선배들의 걱정을 샀던 신입회원 이준형 변호사의 인사를 들어봅니다.

민변 세대공감

촛불 집회가 뭐지?

2008년 6월 26일 새벽 2시 반경 저는 누가 저를 깨우는 소리를 듣고 겨우 눈을 떴습니다. 간호사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저를 구급차에서 다른 침대로 옮겨 눕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여기가 어딘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라고 말한 후 급히 침대를 밀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가 흔들리자 저는 목과 머리에서 극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눈이 감기면서 정신을 잃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긴장하면서 무슨 일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손에 피가 묻어 있었고, 온몸에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교통사고가 났나?' 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교통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기억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들이 큰 주사기 몇 개를 가져와서, 저에게 "조금 아픕니다."라고 말한 후 팔과 엉덩이에 큰 주사기를 찔러 넣었습니다. 그러나 내 의식은 주사바늘의 통증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내 영혼이 내 몸을 떠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크지 않았고, 오히려 오래전 저 세상에 가신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약간 흥분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전에 제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눈을 감고 나와 내 주변에 관하여 생각을 집중해 보

았습니다. 내 이름이 '이준형'이라는 사실은 금방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에 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관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고, 그 충격으로 미친 듯이 당황했으며, 오한을 느끼면서 온 몸을 부르르 떨었고, 절망적인 심정으로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신림동 고시촌에서 사법시험을 공부하던 시기까지는 기억이 났으나, 그 이후에 관해서는 머릿속에 안개가 잔뜩 낀 것처럼 희미해졌고, 아직 합격을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상처 부위를 소독하기 위해 얼굴에 연방 따가운 액체를 뿌려대고 있었고, 저는 도대체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각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누군가 저에게 다가와 "변호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심각한 고민에서 벗어나 합격의 기쁨을 다시 느꼈습니다(그 분은 민변의 '서선영 변호사님'이었고, 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크지 않았고, 오히려 오래전 저 세상에 가신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약간 흥분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금 생각해 보니 무척 고마운 분이네요). 저는 그 여자분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요?”라고 물었고, 그 분은 침울한 표정으로 “광화문 근처에서 사고로 다친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무슨 불일이 있어서 광화문 근처까지 차를 운전하고 갔는지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고, 혹시 내가 과속을 해서 교통사고를 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절망감에 빠졌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 분은 저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변호사님은 광화문사거리에서 촛불 집회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촛불집회??? 내가 참가했다는 ‘촛불집회’는 처음 듣는 단어처럼 낯설었고, ‘촛불’이라는 단어와 ‘집회’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아니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면 촛불집회는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을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굴 소독이 끝난 후 두개골에 대한 CT 촬영을 하면서 그 분이 내가 참가했다고 주장하는 촛불집회에 관하여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그런데 ‘촛불집회’는 제가 5월 중순부터 내 가족과 직장을 내팽개치다시피 하면서 치열하게 싸운 전쟁터였고,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만큼 감동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사람의 기억이란 참으로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과거

저는 음력 1967년 12월 19일 부산 해운대에서 장남으로 태어나 이른바 모범생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특별한 사고 없이 성장하였고, 과학과 수학에 소질이 있어서 부산 중앙고등학교에서는 이과를 선택하여 물리학자가 되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 부친의 거듭된 사업 실패로 집안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졌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일반 대학의 진학을 포기하고 무료로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국립경찰대학이나 사관학교 등에 진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당시 국립경찰대학은 일반대학보다 먼저 입학생을 선발했고, 부산 중앙고등학교에서는 20여명이 국립경찰대학에 응시했으나 최종 합격자 발표 결과 저 혼자 합격하였으며, 학교에서는 입구에 현수막까지 붙이면서 합격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학자의 꿈을 접고 훌륭한 경찰관이 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대학에 입학한 후 저는 사회문제에 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다른 대학에 다니는 선배와 친구들의 도움으로 이른바 ‘불온서적’들을 구해서 경찰대학 도서관에서 열심히 탐독하였습니다. 2학년이 된 1987년 초 저는 주말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광주민주화운동 등에 관하여 학습하였고, 경찰대학 내에서도 동기들과 정치적인 문제에 관하여 토론하면서 경찰대학생도 민주화운동에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그 당시 경찰대학의 분위기는 교내에서 민중가요를 합창하고, 이른바 ‘금서’로 분류된 책들에 관해서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1987년 5월경 우연히 경찰대학 출신이 아닌 경찰과 대화를 하면서 경찰의 의식 수준에 실망하게 되었고, 그 후 가두시위에 참가했다가 최루탄과 백골단의 무자비한 폭행을 경험하면서 경찰이라는 직업에 관하여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으며, 결정적으로는 그 당시 신뢰했던 경찰대학 선배의 이중적인 처신에 배신감을 느끼게 되면서 경찰대학을 자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집으로 갔다가 부모님과 의 갈등으로 바로 가출하였고, 1987년 6월 한 달간 부산에 있는 대학 근처 친구 집 등에서 숙식하면서 가두시위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6.29 선언으로 저는 할 일을 잃어 집으로 들어갔고, 그 후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의 도움으로 이른바 ‘지하조직’에 가입하여 맑스레닌주의 등에 관하여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해인 1988년 5월경 저는 군에 육군현역으로 입대하였고, 같은 부대의 동기가 자살을 시도할 만큼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나름대로 인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양심적인 정훈장교의 도움으로 무사히 제대하게 되었습니다.

제대 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 91학번으로 입학하였고, 어려운 집안사정으로 인하여 부업으로 학비를 버느라 전공 공부는 등한시하였으나, 사회과학 동아리 활동은 열심히 하였습니다. 특히 학내에 안암 사회과학연구소를 만들어 알튀세르 등의 철학을 공부하였고, 정운영, 윤소영 교수 등을 초청하여 특강을 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故 정운영 교수님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가르침을 주셨고, 2005년 9월 정운영 교수님의 부고 기사를 접한 후 스승을 잃은 슬픔과 아쉬움으로 며칠 동안 멍하게 보낸 기억이 납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주)POSCO에 입사하여 3년간 재무본부, 기획조정실 등에서 근무하였고, 1997년 친구의 권에

넘어가 직장을 그만 두고 신림동에서 사법시험 준비를 하게 되었으며, 2003년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2002년경부터는 ‘노사모’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였으나, 시험 준비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는 13반 B조 조장을 하였고, 200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으며, 법무법인 아람에서 두 달간 근무하다가 건강악화로 그만두었고, 그 후 경찰대학 후배인 소정임 변호사의 도움으로 경기도 부천시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변과 촛불집회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민변에 가입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으나, 사무실과 집이 모두 경기도 부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가입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이 당선되는 국가적 불행이 시작되었고, 2008년 5월경 촛불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의 이기적인 삶의 행로를 걸어왔다는 죄책감이 들었고, 그래서 다음 아고라를 열독하다가 5월 24일 처음 촛불집회에 참가했으며, 그 후 이틀에 한번 꼴로 촛불집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시청 근처에서 거리시위 도중 연수원 동기인 이재정 변호사 등 민변 사람들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민변 가입을 권유받음과 동시에 ‘인권침해감시단’ 조기도 받게 되었습니다.

촛불집회는 휴일도 없이 연일 계속되었고, 저는 의무감으로 ‘인권침해감시단’ 조기를 입고 세종로 사거리에서 시민들과 밤을 새워 시위를 하였으며, 그런 날에는 다음 날 아침 첫 지하철을 타고 부천 집으로 돌아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점심 무렵 출근하곤 했습니다.

6월 1일에는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촛불연행자 접견을 갔다가 배 모군으로부터 전경들의 무자비한 폭행과 구타에 관한 진술을 듣고 눈물을 흘렸고, 앞으로 시위 현장에서 전경들의 폭행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으며, 며칠 후 민변에 가입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동안 직장에서의 업무는 완전히 뒷전이 되었고, 심지어 항소기일을 지나쳐버리는 사건까지 발생하였으며, 집사람은 아기를 데리고 처갓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열정에 감동하여 점점 더 열정적으로 시위에 참가하였고, 마침내 6월 26일 새벽 1

시 반경 세종로사거리에서 물대포를 맞으면서 시위대 앞줄에 섰다가 전경의 방패에 이마를 맞고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립의료원에서의 에피소드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서선영 변호사를 만난 후, 잃어버린 기억들 중 사고 직후부터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때까지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기억은 회복하였습니다. 저는 응급실에 누워 체온저하 현상으로 이불을 뒤집어쓰고 온몸을 떨면서 분노를 삼키던 중, 가슴속에서 투쟁의지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때 김낙준 간사가 민중의 소리 기자가 밖에서 기다린다는 말을 전하였고, 그래서 저는 기자를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응급실 직원은 기자의 출입을 막으면서 서울대병원에서는 기자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규정이라고 하였고, 그래서 저는 그 직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응급실 밖으로 나가 민중의 소리 기자와 인터뷰하였습니다.

그 후 광우병대책회의 임태훈씨는 국립의료원 응급실에서는 기자들의 취재가 허용되므로 국립의료원 응급실로 옮겨서 기자들을 부르자고 하였고, 저도 경찰의 만행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립의료원으로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국립의료원 응급실로 옮긴 직후 ‘PD수첩’에서 취재를 나와 제가 치료받는 모습을 촬영하고 인터뷰도 하였으며, 이는 ‘PD수첩’ 779회 ‘민변 20년-사람이 하늘이다’에 몇 초 동안 방송되었습니다.

응급실 치료가 끝난 후 저와 저의 처는 다음 아고라에 경찰의 폭행을 규탄하는 글을 올렸고,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국립의료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며칠이 지나도 언론에서는 전혀 취재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치료에 대한 걱정으로 서울대병원에서 국립의료원으로 옮긴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러자 저의 처는 각 방송사와 각 신문에 전화하여 호통을 치면서 취재를 요청하였고, 그 후 KBS, MBC, YTN, 오마이뉴스 등에서 취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소식을 알게 된 여러 명의 이름도 모르는 촛불시민들이 병원으로 꽃다발과 편지를 보내 민변의 활동을 격려하고 저의 건강을 걱정해 주었습니다. 역시 민변에 가입한 것은 참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변 파이팅! 

글 이준형 회원

민변 전문기관연수 실무수습을 마치고

민변을 가다

일반적으로 법조인으로서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사회정의와 공익을 위해 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그 방법이나 활동 정도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을 것인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변호사 집단 내의 유일한 진보단체로서 민변만의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다. 민변은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 등에 기여하여 온 단체이지만 민변의 모든 활동이 일반에게 우호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고, 특히 일부 언론의 경우에 부정적으로 비추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전문기관연수 수습기관 중에서 민변은 적어도 가치중립적인 곳이라고는 볼 수 없기에 어떤 연수생이 민변을 수습기관으로 선택하였다면 그 연수생의 가치관을 대략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경우에 민변을 전문기관연수 수습기관으로 선택하게 된 계기는 향후 민변에서 활동할 것을 예상한 것보다는, 언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해오던 민변을 직접 경험함을 통해 추상적인 이미지로만 인식되어 있는 민변을 보다 실제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 것이었다.

처음 민변을 찾아간 날은 촛불시위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한창인 때였다. 사무실을 찾는 것부터 쉽지는 않았다. 처음 민변 사무실 안으로 들어설 당시에는, 환대를 기대할 분위기는 아니었고 모두들 바빠 움직이고 있는 사무실은 매우 분주했다. 기자회견을 참관하였는데 서 있을 자리도 찾기 어려웠다. 민변이 최근 촛불시위와 관련하여 언론 등에 자주 오르내리며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그간에 생각하고 있었던 민변의 위상에 비해 민변의 사무실은 작은 빌딩의 한 층을 사용하고 있는 정도로 작았다. 민변에는 왜 외부에서 찾아오기 쉽도록 간판 같은 것이 없는지 궁금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감당할 수 없어 홈페이지에 약도도 올리지 않는다고 한다. 민변이 법 조부문 유일의 진보단체라는 점에서 그 위상만큼이나 떠

맡은 역할도 무겁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민변 위원회 소개

민변 전문기관 수습일정은 민변 각 위원회 소개와 관련 단체 방문으로 이루어졌다. 각 위원회 소개는 사법위원회, 국제연대위원회, 통일위원회, 미군위원회, 환경위원회, 노동위원회, 교육위원회, 여성위원회, 민생경제위원회, 언론위원회 소개 및 서울대기오염소송 설명회가 있었고, 단체 방문으로는 공감 방문, 국가보안법 위반 이시우 작가 재판 방청, 기륭전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농성현장 방문, 다시함께센터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다.

연수기간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각 위원회 소개를 통해 우리사회가 현재 당면한 문제들과 그 대안들에 대해서 매우 다양하고 귀중한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었다. 바쁜 와중에도 연수생들을 위하여 시간을 내주시민 변 변호사님들께 감사사를 드린다. 위원회소개 내용 중에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성공가능성도 희박해보이고 아직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현재 일반의 지지를 얻기 어려워 보이는 것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또는 먼 미래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인권 확대, 약자의 권리보호의 방향으로 사회가 변화되고야 말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느낄 수 있었다. 언제나 시작은 미약한 것이고 변화되는 날까지 계속 해나갈 것이라는 변호사님의 말은 매우 인상적이었고, 민변 사무실을 처음 보았을 때 초라하다고까지 느꼈던 생각과 달리 민변의 저력이 느껴지는 듯 했다.

공감 방문, 국가보안법재판 방청

창덕궁 인근에 위치한 공감을 방문한 날은 맑고 조용했다. 캐주얼 복장의 공감 변호사님의 모습과 사무실 분위기 전반에서 일반 법률사무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을 받았다. 공감방문에서는 공감에 대한 설명과 공감의 소수자 인권보장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질문 응답시간에서는 여러 질문이 있었고 변호사분들에 대해 경제적 문제는 없는지 등의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공익이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수익과 거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할 것이다. 약자와 소수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안면이 없었던 연수생들의

다소 노골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변호사분들은 친절하고 성실하게 질문에 응해주셨고,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계속 고민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판을 방청했다. 민변 변호사님들이 변호를 맡은 사건이었다. 방청 전에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나, 공안사건이라는 것을 접해본 적이 없는 필자로서는 재판 내용부터가 생소했다. 법정에서는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는 가운데 재판이 진행되었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많은 희생자를 낸 전력이 있고 그 폐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법률이다. 적정절차를 통해 헌법정신과 국가보안법의 진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기륭전자 방문, 다시함께센터 방문

기륭전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농성장을 방문한 날은 비가 왔다. 솔직히 필자는 기륭전자에서 아직 농성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기륭전자는 서초동에서 지하철을 두 번 갈아타고 마을버스를 타고 깊숙이 들어가는 등, 우리의 관심만큼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으나 그들은 분명 우리 가까이에 있었다.



여성문제는 곧 남성문제가이기도 하다. 사회 일반의 인식이 변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을 느꼈다.

그곳에서 농성중인 분들과 천막에서 그간의 사정에 관하여 간단한 얘기를 나누었다. 그 분들에게서 1,000일이라는 장기간의 투쟁에서도 아직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곳에서는 현재까지도 단식투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일반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듯하다. 기륭전자에서의 분쟁이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다시함께센터는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을 위한 단체이다. 다시함께센터를 방문하기 전까지는 필자는 다시함께센터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를 잘 알지 못하였다. 다시함께센터에서의 소개 및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알게 된 성매매 여성의 문제는 남성인 필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식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었다. 여성문제는 곧 남성문제가이기도 하다. 사회 일반의 인식이 변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을 느꼈다.

민변에서의 연수를 마치며

예전의 전문기관연수는 인권법학회에서 단체로 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번 연수는 연수생 각자가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모인 것이라 서로 안면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던 분위기였지만 민변에서의 수습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가 있었고 서로에 대해 배려하는 마음으로 원만하고 화기애애하게 모든 수습일정을 마칠 수 있었다.

혹자는 민변에 대하여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민변 전문기관 연수를 통해 그 한쪽에 대하여 제대로 체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잘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화한다. 새가 양쪽 날개가 있어야 하늘을 제대로 날 수 있다고 하듯이 사람도 퇴화되고 남은 자신의 한쪽 측면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온전한 전체로서 살 수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일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민변에서의 경험은 필자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깨우쳐 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민변이 활발한 활동을 통해 앞으로도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기를 바라며 다 언급하지 못하였지만 연수생들의 민변에서의 전문기관연수를 위해 수고해주신 민변 변호사님들과 간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글 백주현 (제38기 사법연수생)

민변 회원이 펴낸 새 책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박승옥 저

도서출판 법수레, 859쪽, 2008. 6. 10.

광주·전남지부의 박승옥 회원(목포, 사법연수원 14기)이, 2007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중 인권보장 원칙들이 정리된 판례들을 번역하고 해설한 「미란다 원칙을 펴낸 데 이어, 2008년 그 후속작업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펴냈다. 변호인의 조력과 관련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주요 판례 26개를 완벽하고 판례마다 개요,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의견으로 나누어 요약해설을 붙인 거의 유일한 책으로, 다시 기본적인 인권의 의미와 변호인의 역할을 되새기는 일이 중요해진 오늘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판매가격 40,000원
구입문의 변호사 박승옥 법률사무소
www.mirandapark.com
061) 277 - 7117



인권법

박찬운 저

한울아카데미, 886쪽, 2008. 8. 10.

국가인권위원회 정책본부장을 지낸 박찬운 회원(한양대학교, 사법연수원 제16기)이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모아 인권법 개론서를 발간하였다. 아직 그 영역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내용도 표준적인 것이 없는 인권법 분야에도 통상의 법률영역처럼 표준적 내용이 제시되어야 대학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되는 인권법 교육의 내일을 보장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동안의 경험과 고민을 모아낸 이 책은, 인권법의 기초부터 차별금지, 이후의 과제까지, 풍부한 사례와 참고 문헌들을 제공하여, 로스쿨이나 법과 대학의 교재로서는 물론 실무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판매가격 45,000원



사법개혁리포트

김선수 저

도서출판 박영사, 592쪽, 2008. 8. 20.

사법개혁비서관 및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지낸 김선수 회원(법무법인 시민, 사법연수원 17기)이, 개혁 법안의 의의와 내용 및 마련과정 그리고 각 지역의 갈등과 뒷이야기 등을 정리하였던 청와대 브리핑 블로그 내용을 기초로, 수많은 사람들의 사법개혁을 위한 고민과 노력을 알리기 위해 책을 펴냈다. 사법개혁의 성공에 조그마한 기여라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법개혁 작업에 참여하면서 겪은 경험들과 성과들을 정리한 내용으로, 법률가라면 누구나 고민해야 할 사법이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될 것이다.

판매가격 32,000원

아래 내용 전문은
민중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
<http://minbyun.jinbo.ne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논평]
검찰의 쫓불시위자 기소 방침에 대한 논평
2008. 7. 31.

[성명]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는 만행이다
2008. 8. 8.

[논평]
사면권 남용 중단되어야 한다
2008. 8. 12.

[의견서]
전자정부법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의견서 제출
2008. 8. 21.

[논평]
광고중단 운동 네티즌 영장 발부는 잘못이다
2008. 8. 22.

[논평]
사노련 관련자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논평
2008. 8. 29.

[성명]
김항식 감사원장 후보 국회동의 절차에 대한 민변 성명
2008. 9. 3

성명 및 논평

